

韓國古代史學會  
제197회 정기발표회

- 일시 : 2025년 10월 18일(토) 13:20~18:00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강의실
- 주최 : 한국고대사학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한국고대사학회 제197회 정기발표회 일정표

13:30 ~ 13:40	개회사: 여호규(한국고대사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축사: 한 수(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사회: 이병호 (동국대학교)
13:40 ~ 14:40	■ 제1주제 신라 중고기 奴人의 성격과 수취방식 발표: 윤준혁(고려대학교) / 토론: 이재환(중앙대학교)	사회: 이병호 (동국대학교)
14:40 ~ 15:40	■ 제2주제 新羅 中古期 전반 大等의 성립과 운영 방식 발표: 박종원(한국외국어대학교) / 토론: 정덕기(충부대학교)	
15:40 ~ 16:00	휴식	
16:00 ~ 17:00	■ 제3주제 신라 통일기 물류 관부와 지방의 船家 운영 발표: 민채림(서울대학교) / 토론: 김창석(강원대학교)	
17:00 ~ 18:00	■ 제4주제 평양 지역 적석총 조영 집단에 대한 검토 발표: 이승호(동국대학교) / 토론: 정호섭(고려대학교)	



## 목차

### [제1주제] 신라 중고기 奴人의 성격과 수취방식

발표: 윤준혁(고려대) .....	7
토론: 이재환(중앙대) .....	23

### [제2주제] 新羅 中古期 전반 大等의 성립과 운영 방식

발표: 박종원(한국외대) .....	26
토론: 정덕기(중부대) .....	52

### [제3주제] 신라 통일기 물류 관부와 지방의 船家 운영

발표: 민채림(서울대) .....	58
토론: 김창석(강원대) .....	76

### [제4주제] 평양 지역 적석총 조영 집단에 대한 검토

발표: 이승호(동국대) .....	79
토론: 정호섭(고려대) .....	94



# 신라 중고기 奴人의 성격과 수취방식

윤준혁 | 고려대학교

- I. 머리말
- II.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성격에 대한 여러 논의
- III. 奴人의 성격과 중고기 稅制의 특징
-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대 사회의 稅制는 소위 租庸調로 불리는 국가의 물적 수입원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장치이다. 세제에는 그 사회의 생산력 및 국가와 주민 간의 상호 관계 등이 반영되므로 세제의 연구는 해당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sup>1)</sup>

1953년 신라촌락문서(이하 촌락문서)가 학계에 소개된 이후 통일기의 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를 기반으로 통일신라 시기를 토지 기준의 田租 수취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한국사의 중세로 보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고기의 세제에 대해서는 1992년 함안 성산산성에서 처음 신라목간이 발굴되면서 비로소 그 이해가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통일기에 비해 중고기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측면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성산산성 목간을 주요 사료로 하여 중고기 세제의 실태를 밝히고, 나아가 중고기의 사회적 성격을 논해보려 한다.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 대해서는 기왕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연구사를 정리한 논문도 여럿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글의 주된 관심인 중고기 세제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한다.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핵심적인 사료로 이용한 중고기의 세제 연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위 하찰목간의 성격이다. 이에 대해 세물에 부착된 꼬리표로 이해하는 통설<sup>2)</sup>과 개인 식

1) 김기흥, 1991,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5쪽.

2) 尹善泰, 1999,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木簡의 用途」, 『震檀學報』 88 ; 平川南, 2000, 「日本古代木簡 研究의 現狀과 新視點」, 『한국고대사연구』 19 ; 李成市 著·李鎔賢 譯, 2000, 「韓國木簡연구의 現狀과 咸安城 山山城출토의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19 ; 李鎔賢, 2003, 「咸安 城山山城出土木簡과 6세기 新羅의 지방 經營」, 『東垣學術論文集』 5 ; 李京燮, 2004,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研究現況과 課題」, 『新羅文化』 23 ; 전덕재,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 김창석, 2016, 「함안 성산산성 木簡을 통해 본 新羅의 지방

량에 부착된 것으로 보는 설<sup>3)</sup>이 있다. 전자의 견해는 목간에 보이는 米, 麥, 稗 등의 곡물을 세물로 이해한 것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호주)별로 대부분 稗 1石을 납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가호 단위로 균액의 곡물을 납부하였다는 견해,<sup>4)</sup> 곡물의 折價를 상정하며 米, 麥, 稗와 같은 곡물의 차이와 1인의 하찰과 세액이 동일한 복수 인명의 하찰이 존재하는 점에 주목하여 연령등급별, 호등별 차등수조가 실시되었다고 본 견해,<sup>5)</sup> 후술할 노인의 부세 부담에 주목하여 정남 단위로 균액의 곡물을 납부하였다는 견해<sup>6)</sup>가 제기되었다. 후자의 견해는 稗 1石을 세물이 아닌 산성 축조를 담당한 役夫들의 개인 식량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稗 1石이 정해진 역역 기간인 30일치 식량에 해당한다는 견해,<sup>7)</sup> 산성 축조와 더불어 3년간의 균역을 상정하며 負는 식량뿐만이 아니라 균역 수행자의 출신지에서 추가적으로 보내온 물품을 포괄한다는 견해<sup>8)</sup>가 있다.

둘째, 奴人의 성격과 부세 부담의 문제이다. 노인 목간은 인명 A와 인명 B 사이에 奴人 혹은 奴가 기재되어 있어 그것이 A와 B 중 누구의 신분인지를 두고 견해가 나뉜다. A를 노인으로 보는 경우<sup>9)</sup> 대체로 집단적 예속민으로 여겨지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524년 건립 ; 이하 봉평리비)의 노인과 성산산성 목간의 노인을 연속적으로 바라보았다. 노인 A와 일반민 B가 동일한 부세를 납부하였다는 관점에 성산산성 목간의 奴人은 봉평리비 단계의 집단적 예속민에서 개별적 인신지배에 기반한 公民으로 전화해 가는 과정에 있던 존재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10)</sup>

B를 노인으로 보는 견해<sup>11)</sup>는 다시 노인을 사노비로 보는 견해와 중국사의 사적 예속민인 노객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복위·북제의 노비의 부세 부담 및 촌락문서의 노비 기재를 근거로 성산산성 목간 단계에 신라의 노비가 부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본 견해<sup>12)</sup>와 노비의 부세 납부는 토지분급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走馬樓吳簡의 ‘僮客限米’를 통해 노객이 부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정남 단위로 세제로 본 견해가 있다.<sup>13)</sup> 노인의 부세 납부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唐代의 부곡과 연결하여 주인의 역을 대신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14)</sup>

이상 성산산성 하찰목간을 통한 중고기 세제 연구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전술하였듯이 하찰목간

사회 구조와 수취, 『백제문화』 54 ; 강나리, 2023, 「新羅 中古期 稅役制度 研究」,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3) 박남수, 2017,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신라사학보』 40 ; 이재환, 2018,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사연구』 182 ; 홍승우, 2021, 「신라목간과 부역제도」,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송기호 교수 정년기념논총), 진인진.
- 4) 전덕재, 2006, 앞의 책, 214쪽.
- 5) 윤선태, 2012,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史林』 41, 172쪽.
- 6) 강나리, 2023, 앞의 논문, 40쪽.
- 7) 박남수, 2017, 앞의 논문, 57~58쪽.
- 8) 이재환, 2018, 앞의 논문, 41~48쪽.
- 9) 李成市 著·李鎔賢 譯, 2000, 앞의 논문 ;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 李京燮, 2012, 「新羅의 奴人-城山山城 木簡과 <蔚珍鳳坪碑>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8.
- 10) 李京燮, 2012, 앞의 논문, 228~229쪽.
- 11) 尹善泰, 1999, 앞의 논문 ; 이수훈, 2004,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稗石과 負」, 『지역과 역사』 15 ; 전덕재, 200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중고기 신라의 수취체계」, 『역사와 현실』 65 ; 홍승우, 2019, 「함안 성산산성 출토 부찰목간의 지명 및 인명 기재방식과 서식」, 『목간과 문자』 22 ; 강나리, 2023, 앞의 논문.
- 12) 윤선태, 2012, 앞의 논문, 168~170쪽.
- 13) 강나리, 2023, 앞의 논문, 35쪽.
- 14) 이재환, 2018, 앞의 논문, 50쪽.

을 세물의 꼬리표로 보지 않을 경우 부세 납부 양상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선 하찰목간이 세물의 꼬리표라는 입장에서 관련 논의를 살펴보려 한다. 하찰목간을 개인의 식량에 부착된 것으로 보는 견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당·일본의 율령 조항이나 도량형 등을 적용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의 성격과 부세 부담에 대해서 검토한다. 노인의 성격을 해명하는 것은 당시 세제의 실태나 公民으로의 전환 문제 등 사회상 전반과 연결되고 있어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주요 자료는 성산산성 노인목간과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이미 제시하였던 주마루오간의 ‘僮客限米’ 관련 목간이 될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으나 기존에 검토되지 않은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고기 세제를 규명하고 봉평리비의 노인과 비교를 통해 중고기의 사회상에 대해 기존의 이해와 차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기존에 중고기의 세제를 전론으로 다룬 연구에서 통일 이후에는 기존의 3등호제에서 더 세분화된 9등호제가 시행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인정 중심의 세제를 시행하였다는 점은 동일하였고 나말여초 시기에 이르러 토지 중심의 세제로 이행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sup>15)</sup> 이러한 결론에 큰 이의는 없지만, 중고기 3등호제의 실태에 대해서는 관련 사례의 부족으로 고구려의 사례를 준용하는데 그쳤다. 이 글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성산산성 목간의 분석을 통해 중고기 3등호제의 구체적인 운영 양상의 한 단면을 제시해 보려 한다.

## II.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성격에 대한 여러 논의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은 총 245점으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韓國의 古代木簡 (II)』에서는 이를 하찰목간 242점, 문서목간 3점으로 분류하였다.<sup>16)</sup> 하찰목간은 곡물 꾸러미와 같은 물품에 매달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물품의 표식을 위한 꼬리표로 부착된 목간을 말한다.<sup>17)</sup> 문서목간은 일상 사무처리를 위해 작성된 문서들로, 食料·衣料 등의 지급·납입 사실을 기록한 문서 혹은 仕丁이나 役夫의 就役簿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sup>18)</sup>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내용은 대체로 ‘지역명+인명+곡물명+수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곡물명이 기재된 목간은 총 111점이며 稗 94점, 麥 12점, 米 4점, 稗·麥 1점이다. 수량이 기재된 목간은 총 116점이며 石 74점, 負 31점, 發 6점, 斗 2점, 斗·石 2점, 負·石 1점이다. 즉 물품과 수량은 稗 1石이 가장 일반적으로, 물품이나 수량이 생략되었을 경우 稗 1石으로 보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sup>19)</sup>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稅物에 부착되어 있었던 꼬리표로 보고 있다. ‘지역명+인명+곡물명+수량’이라는 기재 양식이 고대 일본의 지방관들이 수취한 물품에 매달았던 목간의 기재 양식인 ‘지역명+인명+세목+세액’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명을 세물의 발신자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인명을 곡물 혹은 물품의 수신자로 이해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성산산성 축조에 동원된

15) 전덕재, 2006, 앞의 책, 433~442쪽.

16)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 (II)』,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6쪽.

17)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위의 책, 18쪽.

18) 岸俊男, 1978, 「木簡」, 『日本古文書學講座 (2)』 古代編 I, 雄山閣.

19) 강나리, 2023, 앞의 논문, 24~25쪽.

사람들의 私糧을 이들의 출신지에서 수합해 성산산성으로 보낸 것으로 보는 견해,<sup>20)</sup> 산성 축조와 더불어 균역을 지는 사람들의 식량 및 물품을 출신지에서 보낸 것으로 보는 견해,<sup>21)</sup> 세물 납입 과정이 아닌 역부들에게 반출되는 과정과 관련지어 보는 견해<sup>22)</sup>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성산산성 하찰목간을 세물의 꼬리표가 아닌 개인의 식량 혹은 물품에 부착되었던 목간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성산산성 하찰목간을 통해 논할 수 있는 중고기의 稅制는 주로 役に 국한된다.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중고기의 세제는 역보다는 부세와 관련된 것이므로, 본격적으로 노인 목간의 수취 방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인명을 수신자로 이해하는 기존 연구에 대한 이 글의 견해를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성산산성 축조에 동원된 사람들의 사량을 이들의 출신지에서 수합하여 성산산성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한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사면목간인 가야5598<sup>23)</sup>의 ‘卅日食’이라는 표현을 30일치의 식량으로서 稗 혹은 麥 1石(15斗)에 해당하며, 이는 곧 150升이므로 당시 역부들에게 1일에 稗 혹은 麥 5升이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三國遺事』에는 성덕왕대에 1일 1口에게 租 3升을 지급했다는 기사가 있는데,<sup>24)</sup> 이는 최소치 식량이며 역부들은 그보다 많은 식량을 소비하였던 것이라 본 것이다. 아울러 당의 부역령에서 복역자가 개인 식량으로 입역한다는 규정을 방증 사례로 들고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혔듯이 성산산성 하찰목간 중에는 곡물의 折價를 상정할 수 있는 목서가 있다.

- A-1. 甘文城下□米十一斗石喙大村ト只次持去□(가야2026)
- A-2. 小南兮城麥十五斗石大(村)…(가야5596)
- A-3. …(稗)十五斗(가야4692)

가야2026·가야5596 목간의 내용을 ‘米 11斗를 1石, ‘麥 15斗를 1石으로 한다’라고 해석한 견해가 제기되었는데,<sup>25)</sup> 개인 식량의 하찰로 보는 관점에서 米와 麥의 斗石 환산치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면 그것을 굳이 세금에 붙는 꼬리표에 기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있었다. 이 견해에서는 양 목간에 대해 ‘15斗를 채워서 보내는 石’과 ‘11斗만 채워서 보내는 石’의 구분으로 보았다.<sup>26)</sup> 이미 정해져 있는 환산치를 굳이 세물의 꼬리표에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은 타당하지만, 개인 식량의 하찰인 경우에도 그 양의 많고 적음까지 기재할 필요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환산의 기준이 되는 곡물을 무엇으로 볼지가 문제인데, 11斗를 1石으로 삼는 量制를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근거로 가야2026·가야5596 목간을 ‘□米 11斗는 米 1石(10斗)에 상당한다’, ‘麥 15斗는 米 1石에 상당한다’고 해석한 견해가 제기되었다.<sup>27)</sup> 이렇게 米를 환산의 기준

20) 박남수, 2017, 앞의 논문, 48~62쪽.

21) 이재환, 2018, 앞의 논문, 41~48쪽.

22) 홍승우, 2021, 앞의 논문, 404쪽.

23) 이하 목간의 번호 및 판독문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앞의 책을 따랐다.

24) 『三國遺事』 卷2, 紀異2 聖德王, “第三十三聖德王神龍二年丙午 歲禾不登人民飢甚 丁未正月初一日至七月三十日 救民給租 一口一日三升爲式”.

25) 윤선태,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성과와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 (II)』,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6쪽.

26) 이재환, 2018, 앞의 논문, 41~48쪽.

27) 전덕재, 2020a, 「三國의 量制와 百濟 田積制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 24, 207~208쪽.

이 되는 곡물로 본다면 성산산성 목간 단계에서 □米 11두, 麥 15斗·稗 15斗는 米 1石에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서로 다른 종류의 곡물을 개인 식량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것을 굳이 米로 환산할 때의 비율을 적었던 이유는 알기 어렵다.<sup>29)</sup> 이러한 환산 비율의 기재는 하찰목간의 성격을 세물의 꼬리표로 볼 때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稗 1石을 당시 신라 역부들의 30일치 식량으로 볼 수 있을지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둘째, 산성 축조와 더불어 군역을 지는 사람들의 식량 및 물품을 출신지에서 보낸 것으로 본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기본적으로 첫째 견해의 관점을 수용하는 한편 일본 고대에 전국 각지의 鄉에서 도읍에 징발되었던 仕丁의 식량인 養米를 그들의 출신지에서 보내온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 성산산성이 일시적으로 사용된 후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 활동에 종사하는 군역자, 戍卒의 존재를 고려하였다. 중고기 당시 ‘防秋의 役’은 『三國史記』 설씨녀전을 통해 3년을 기본으로 볼 수 있는데,<sup>30)</sup> 3년치의 물건을 처음부터 휴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군역 대상자의 고향으로부터 추가로 물품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구리벌목간 등에서 보이는 짐이라는 의미의 ‘負’는 곡물에 한정하지 않고 식량과 의복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아울러 고대 일본의 사례와 달리 성산산성 목간에서는 調·庸·贖와 같은 세목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찰목간에 보이는 負가 짐꾸러미의 의미라는 점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이를 곡물보다 더 포괄적인 물품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일본의 軍防令에서는 防人에게 진지를 지키는 것 이외에 空閑地를 지급하여 작물을 기르게 하고, 식량에 보충한다는 조항이 있다.<sup>31)</sup> 방인의 임기는 3년으로, 3년을 기본으로 하는 신라의 ‘防秋의 役’과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인은 공한지의 所出을 식량에 충당했을 것이며, 지방에서 京으로 입역한 衛士·仕丁 등의 출신지에서 생활비인 養物을 보내는 양상을 방인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물론 식량을 제외한 의류 등의 개인적인 물품을 출신지에서 보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이 글의 관점처럼 성산산성의 군역 대상자에게 그 출신지에서 식량을 보낸 것이 아니라면, 하찰목간의 負는 식량을 제외한 개인적인 물품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負 뒤에 ‘稗’나 ‘□□二石’이 함께 기재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곡물과 구분해 보기는 어렵다.<sup>32)</sup> 한편 세목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목간 작성 당시 신라에서 租庸調와 같은 세목이 성립하였는지 검토가 더 필요할 듯하다.

셋째, 출신지에서 역부에게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성산산성의 창고에서의 반출 과정과 관련지는 견해이다. 성산산성 소재 창고에서의 반출이라는 관점은 첫째, 둘째 견해와 차이가 있지만 稗 1石을 30일치 식량으로 본 것은 첫째 견해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稗 1石을 30일치 식량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28) 전덕재, 2020b, 「中古期 新羅의 租稅收取와 力役動員」, 『한국고대사연구』 98, 284~285쪽.

29) 이러한 이유로 하찰목간을 사량에 부착된 것이 아닌 공적인 기록으로 본 견해가 기존에 제기된 바 있다(윤선태, 2017, 앞의 글, 16쪽). 동일명 목간이나 2石이 기재된 목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견해도 있다(강나리, 2023, 앞의 논문, 23쪽).

30) 『三國史記』 卷48, 列傳8 薛氏女, “眞平王時 其父年老 番當防秋於正谷 (중략) 會國有故 不使人交代 淹六年未還 父謂女曰 始以三年爲期 今既踰矣 可歸于他族矣”.

31) 仁井田陞, 1933, 『唐令拾遺』, 東京大学出版会, 388쪽. “諸防人在防守固之外 各量防人多少 於當處側近 給空閑地 遂水陸所宜 斟酌營種 並雜蔬菜 以充糧貯 及充防人等食”; 『令義解』 卷5, 軍防令17, “凡防人 在防守固之外 各量防人多少 於當處側近 給空閑地 遂水陸所宜 斟酌營種 并雜菜 以供防人食 所須牛力官給 所收苗子 每年錄數 附朝集使 申太政官”. 일본령에서는 “방인이 변방으로 향할 때 각각 私糧을 가져오고, 중간 집결지인 진에서 출발하는 날부터는 公糧을 지급한다(凡防人向防 各 私糧 自津發日 隨給公糧)”라고 하였다.

32) 강나리, 2023, 앞의 논문, 27쪽.

당에서는 公糧을 지급할 때 丁男에게 1일에 米 2升을 지급하였다고 하며<sup>33)</sup>, 이는 고대 일본에서도 동일하여 石神遺迹 출토 목간에는 앞서 언급한 仕丁에게 5일치 식량인 米 1斗를 지급한 내용이 보인다.<sup>34)</sup> 당시 당·일본의 升이 약 600ml였다는 연구 성과<sup>35)</sup>를 참고하면 양국에서는 역부들에게 하루에 약 1,200ml의 米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升은 중대까지는 200ml, 하대에 350ml로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sup>36)</sup> 이 견해에 따르면 성산산성 목간 단계에서의 升은 200ml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역부들에게 하루에 稗 5升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하루에 稗 1,000ml가 되는데, 稗 15斗가 米 10斗에 상당하였다고 본 선행 연구에 따라 이를 米로 환산하면 약 667ml를 지급한 셈이 된다. 이는 당·일본의 1,200ml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sup>37)</sup>

물론 신라의 부역령 혹은 倉庫令의 유관 조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문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役夫에게 30일치의 식량을 한꺼번에 지급한 사례, 물품이 쌀·보리·피 등 여러 가지가 혼재된 사례, 패 1석을 30일치 식량으로 가정할 때 당·일본과 비교하여 수량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 성산산성 하찰목간을 세물의 꼬리표가 아닌 개인 식량에 부착된 것 내지 성산산성 소재 창고에서의 반출과 연결해 보는 설을 검토하고, 이 글 나름의 견해를 밝혔다. 물론 이를 통해 성산산성 하찰목간과 관련된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세물의 납입보다는 출신지에서 역 수행을 위해 보낸 물품으로 보는 견해 혹은 성산산성의 창고에서 반출된 물품에 부착된 것으로 보는 견해 역시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하찰목간을 세물 납입과 관련지어 보는 견해는 여전히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성산산성 목간이 세물을 납입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본격적으로 노인 목간에 보이는 수취 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Ⅲ. 奴人の 성격과 중고기 稅制의 특징

이 글의 주요 검토 대상인 奴人 목간은 하찰목간의 일종으로, 총 14점이 확인된다. 노인목간은 일반적으로 지명+인명 A+奴(人)+인명 B+負의 서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가장 정돈된 서식으로, 일부 지명이 생략되거나 負 대신에 (稗)石이 기입되기도 하였다.<sup>38)</sup>

아래 <표 1>과 같이 인명은 奴人 뒤의 글자를 알기 어려운 진주1288을 제외하고는 2개씩 확인할 수 있고, 노인이 인명 A와 인명 B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 A와 B 중 누가 노인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A를 노인으로 보는 경우 대체로 봉평리비에 보이는 거벌모라 등의 노인을 신라에 새롭게 편입된 복속민으로 보는 관점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진주1288의 ‘仇利伐 □德知一伐奴人 □’라는 기록에서 구리벌은 노인촌, □德知一伐은 그 수장으로 본 견해가 있다.<sup>39)</sup> 一伐과 노인 사이

33) 『唐六典』 卷19, 司農寺, “給公糧者 皆承尙書省符 丁男日給米二升”.

34) 이치 히로키 저·이병호 역, 2014, 『아스카의 목간』, 주류성, 116쪽.

35) 이종봉, 2016, 「韓·中·日 古代時期 度量衡制 比較 研究」, 『지역과 역사』 38, 255쪽.

36) 윤선태, 2000, 「신라 하대 量制에 관한 일시론-雁鴨池 출토 量器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17-18.

37) 고대 일본의 경우 피 1석이 쌀 5두로 환산되었다고 한다(平川南,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일본 와세다대학 조선문화연구소 공동연구 자료집』, 206쪽). 이 환산치를 적용해 보면 당·일본에서는 30일에 미 6두(36,000ml) 신라에서는 미 5두(10,000ml)를 지급한 셈이 되어 격차는 더 커진다.

38) 강나리, 2023, 앞의 논문, 32쪽.

에는 간격이 없는 반면 노인과 □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점이 그 근거가 되기도 했다.<sup>40)</sup>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가야2008 목간의 ‘仇利伐 郝豆智奴人 □支負’라는 기록에 대해 ‘구리벌에 사는 郝豆智(奴人)와 □지가 납부한 것(짐)’으로 해석하며, 나머지 노인 목간들도 이러한 해석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郝豆智(奴人)까지 기재하고 행을 바꾸어 □支를 적었기 때문에 郝豆智가 노인, □지가 일반민이며 노인목간은 노인 A와 일반민 B가 공동으로 부세를 납부한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산산성 목간의 奴人은 봉평리비 단계의 집단적 예속민에서 개별적 인신지배에 기반한 公民으로 전화해 가는 과정에 있던 존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41)</sup> 역시 봉평리비의 노인과 성산산성 목간의 노인을 연속적으로 바라본 견해라 할 수 있다.

목간번호	지명	인명A	奴(人)	인명B	負/(稗)石
가야35	仇利伐	只即智	奴	於□支	負
가야1613	仇利伐	比夕智	奴	先能支	負
가야2008	仇利伐	郝豆智	奴人	□支	負
가야2012	仇利伐	仇陲知 一伐	奴人	毛利支	負
가야1989	仇利伐	仇陲知 一伐	奴人	毛利支	負
가야5592	丘利伐	卜今智 上干支	奴	□□巳支	負
가야5593	仇利伐	夫及知 一伐	奴人	宍巳礼	負
가야1987	仇伐 未那	沙刀礼	奴	弥次分	稗
가야5587	丘伐 未那	早尸智 居伐尺	奴	能利智	稗
진주1288	仇利伐	□德知 一伐	奴人		
가야36		內只次	奴	須礼支	負
가야37		比須	奴	尒先利支	負
가야34		內恩知	奴人	居助支	負
가야1994		眞尒密	奴	那智	石

<표 1> 함안 성산산성 출토 奴人 목간의 서식<sup>42)</sup>

39) 李成市 저·李鎔賢 역, 2000, 앞의 논문, 99~100쪽.

40) 이용현, 2006, 앞의 책, 338~339쪽.

41) 李京燮, 2012, 「新羅의 奴人-城山山城 木簡과 <蔚珍鳳坪碑>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8, 228~229쪽.

42) 강나리, 2023, 위의 논문, 33쪽.



중고기의 토지분급제를 증명해야 하며, 또 액수에 있어서 일반민과 차이가 없는 점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촌락문서는 통일 이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중고기의 실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일단 노인을 노객으로 보는 설이 더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僮客限米’와 관련하여서는 僮客이 限米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일반민과 동일한 부세 납부 양상으로 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노비설을 비판한 근거가 노비의 부세 부담 자체가 아니라 일반민과 동일한 부세 납부 양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으므로, 이는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僮客限米’에 대해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보려 한다.

僮客이 노객의 일종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문제는 限米의 성격인데,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부세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여겨지는 세목인 稅米·租米와 같은 성격의 세목이며 稅米·租米가 일반 吏民의 田에 부과된 것인데 반해, 限米는 郵卒限米·衛士限米·私學限米·子弟限米 등의 표현에서 보이듯이 특정 신분·직종을 가진 사람의 田에 부과된 것이며 稅米·租米보다 1畝당 징수액이 높은 점이 그 특징으로 제시된 바 있다. 限米는 주마루오간에만 보이는 세목은 아니며 『三國志』 吳書에서도 諸吏의 家에 부과되는 세목<sup>49)</sup>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up>50)</sup> 따라서 일반민이든 노인이든 동일한 액수를 납부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산산성 목간의 사례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르며, 동객이 직접 한미를 납부했다고 보기에 문헌 기록이나 한미를 납부하는 다른 신분·직종과 비교할 때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

僮客을 일반적인 한미의 납부 계층과 유사하게 볼 수 없다면 僮客限米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세납입증명서의 일종인 주마루오간 倉米入受芻에는 “入廣成鄉嘉禾二年州卒蔡通僮客限米一斛八斗胄米畢 (同文符號) 嘉禾三年四月十九日空漉丘民烝友關邸閣董基付三州倉吏鄭黑受”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의 ‘州卒蔡通僮客限米’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참고하면, 동객은 주인과 별개로 자신에게 부과된 부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주인인 州卒 蔡通에게 부과된 田租인 限米를 대신 납부하였으며, 그 결과 州卒은 전조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sup>51)</sup> 즉 동객이 납부한 한미라는 표현으로서의 僮客限米는 실상 僮客에게 직접 限米라는 부세가 부과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인 州卒의 토지에 부과된 부세인 限米를 僮客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사적 예속민이 다수 존재하고, 또 그러한 의부·종속 관계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로 누가 토지를 경작하여 부세를 납부하였는지는 문제 삼을 이유가 없으므로 동객이 한미를 납부한 기록이 남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다시 성산산성 목간의 부세 납부 양상을 보면, 대부분이 稗 1石을 납부하고 있어 정남 단위로 동일한 세액을 납부한 것인지,<sup>52)</sup> 가호 단위로 호주가 동일한 세액을 납부한 것인지<sup>53)</sup> 견해가 나뉘고 있다. 만약 당시 신라에서 정남 단위 세제가 시행되었고 노인은 국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노객이라 정남으로서 부세 납부 대상이 되었다면, 그의 주인 역시 정남 단위 세제의 납부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견된 노인목간의 수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49) 『三國志』 卷48, 吳書3 三嗣主傳3 孫休 永安 元年, “詔曰 諸吏家有五人三人兼重爲役 父兄在都 子弟給郡縣吏 既出限米 軍出又從 至於家事無經護者 朕甚愍之”.

50) 谷口建速, 2016, 「「限米」と限田」, 『長沙走馬樓吳簡の研究-倉庫関連簿よりみる孫吳政權の地方財政-』, 早稲田大学出版.

51) 凌文超, 2022, 「走馬樓吳簡中所見的諸卒」, 『簡帛』 24, 210쪽.

52) 강나리, 2023, 앞의 논문, 40쪽.

53) 전덕재, 2006, 앞의 책, 205~218쪽.

노인과 그의 주인이 모두 부세를 납부한 경우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김해1287 목간의 기록인 ‘仇利伐 仇陲余一伐 尔利□[負]’에서 仇陲 뒤의 글자를 余가 아닌 智로 판독하고 이를 가야2012 목간의 기록인 ‘仇利伐 仇陲知一伐奴人 毛利支負’의 仇陲知一伐과 동일 인물로 판단하여 仇陲知一伐이 부세를 납부하였다고 본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sup>54)</sup> 이 경우 仇陲知一伐과 그 노인인 毛利支가 모두 부세를 납부한 사례가 되는 데, 사진상 김해1287 목간의 仇陲 뒤의 글자를 智로 판독하는 것은 따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성산산성 목간을 통해서도 신라의 노인이 부세의 납부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인목간의 負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세금으로서의 짐으로 이해되며,<sup>55)</sup> 기존에 이를 바탕으로 노인에게도 일반민과 동일한 부세가 부과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주마루오간의 ‘동객한미’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는 노인에게 직접 부세가 부과되었던 것이 아니라 A에게 부과된 부세를 그 노인인 B가 대신 납부한 기록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노인은 주인의 부세, 신라의 경우에는 호주인 주인에게 부과된 戶稅를 납부한 것이며 그 결과 주인은 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성산산성 목간에 양자가 모두 부세를 납부하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

54) 윤선태, 2012, 앞의 논문, 167쪽.

55) 李京燮, 2012, 앞의 논문, 213쪽.



<그림 2> 함안 성산산성 출토 김해1287 목간<sup>56)</sup>    <그림 3> 함안 성산산성 출토 가야2012 목간<sup>57)</sup>

그러면 성산산성 목간의 노인은 노비의 성격에 가까울까, 노객의 성격에 가까울까.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이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호주에게 부과된 호세에 대해 노비가 호주의 토지를 경작한 다음 부세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연구는 주마루오간에서 노비가 주인의 역을 대신 수행한 사례와 僮客限米를 연결하여 당시 노비와 노객의 성격이 거의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았다.<sup>58)</sup>

이와 관련하여 인명 B를 노객과 유사한 사적 예속민인 唐代의 部曲으로 이해하며, B에게 부세가 부과된 것이 아니라 A의 역을 대신한 것이라는 견해가 이미 제시된 바 있다.<sup>59)</sup> 하지만 해당 견해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주인의 역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부곡과 노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代役을 인정하더라도 성산산성 목간의 노인에서 노비를 제외해 볼 근거는 없다. 이렇듯 노비와 노객의 엄밀한 구분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주마루오간에서 동객이 주인의 부세를 대신 납부하는 반면 노비는 주인의 역을 대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보려 한다.

56)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앞의 책, 458쪽.

57)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앞의 책, 238쪽.

58) 凌文超, 2022, 앞의 논문, 209~210쪽.

59) 이재환, 2018, 앞의 논문, 50쪽.

관련하여 중국사의 노객을 살펴보면, 그것은 사서에서 노객, 동객, 부곡 등 다양한 용례가 나타나지만 크게 의식객과 전객의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B. 官品 1품부터 9품까지 (중략) 각각 그 품계의 고하에 따라 그 親屬을 비호(蔭)하는데 많은 者は 九族에 미치며, 적은 자는 3세까지 비호할 수 있다. 宗室·國賓·先賢의 후손 및 士人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한다. 또 蔭人을 받아 依食客 혹은 佃客으로 삼는데 관품 6품 이상은 衣食客 3인을 둘 수 있고, 7품과 8품은 2인, 9품 및 舉輦·跡禽·前驅 (중략) 命中武賁武騎 등은 1인을 둘 수 있다. 또 佃客을 거느려야 할 사람들은 관품 1품과 2품인 자는 15戶를 초과할 수 없으며, 3품은 10戶, 4품은 7戶, 5품은 5戶, 6품은 3戶, 7품은 2戶, 8품과 9품은 1戶를 둘 수 있다.<sup>60)</sup>

사료 B는 서진의 給客制에 대한 설명이다. 蔭人은 課役 면제자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관품 소지자 및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차등적으로 과역이 면제되는 의식객과 전객을 비호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의식객의 성격은 사료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字意를 통해 볼 때 주인으로부터 의식을 공급받아 종자에게 할당되거나, 잡역 등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식객은 전객과 달리 主家에게 의식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자유가 상당히 구속되어 있고 오히려 노비에 가까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61)</sup> 전객에 대해 『隋書』 식화지에서는 곡식을 ‘大家와 量分’<sup>62)</sup>하는 소작인으로 설명하고 있다.<sup>63)</sup> 그런데 동진 시기에 이르면 서진 시기에 비해 허용되는 의식객의 수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전객의 수는 크게 증가하게 된다.<sup>64)</sup> 이를 통해 노객 중에서도 의식객보다는 전객이 보편적인 의부·종속 관계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객은 그 자의에서도 드러나지만 소작농적 성격이 다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전객의 성격에 대해 농업 노동자로서 자기의 경영을 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며,<sup>65)</sup> 호를 이루고 있는 점은 특히 노비와 구분되는 특징이다.<sup>66)</sup> 결국 전객은 소작농적 존재로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한 후 그 소출을 일정 부분 나누었을 것이기에, 주인에게 부과된 부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노비가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을 테지만, 그 소출을 주인과 나누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역이라는 관점에서는 노객과 노비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노객의 소작농적 성격에 주목해 보면, 노비와는 구분되는 계층으로서 자기의 경영을 행하며 주인에게 부과된 부세를 대납하는 신라의 노인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인의 부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산산성 목간의 노인 역시 노비라기보

60) 『晉書』 卷26, 志16 食貨, “其官品第一至于第九 (중략) 而又各以品之高卑蔭其親屬 多者及九族 少者三世 宗室 國賓 先賢之後及士人子孫亦如之 而又得蔭人以為衣食客及佃客 品第六已上得衣食客三人 第七第八品二人 第九品及舉輦 跡禽 前驅 由基 強弩 司馬 羽林郎 殿中穴從武賁 殿中武賁 持椎斧武騎武賁 持鉞穴從武賁 命中武賁武騎一人 其應有佃客者 官品第一第二者佃客無過五十戶 第三品十戶 第四品七戶 第五品五戶 第六品三戶 第七品二戶 第八品第九品一戶”.

61) 이공범, 2003, 『위진남북조사』, 지식산업사, 235쪽.

62) 『隋書』 卷24, 志19 食貨, “都下人多為諸王公貴人左右 佃客 典計 衣食客之類 皆無課役 官品第一第二 佃客無過四十戶 第三品三十五戶 第四品三十戶 第五品二十五戶 第六品二十戶 第七品十五戶 第八品十戶 第九品五戶 其佃穀 皆與大家量分”.

63) 唐長孺 저·川勝義雄 역, 1981, 「魏晉南北朝の客と部曲」, 『東洋史研究』 40, 260쪽.

64) 예를 들어 서진에서 3·4품의 관인은 각각 10호, 7호의 전객을 둘 수 있었으나 동진에서는 각각 35호, 30호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의식객의 수는 모두 3인으로 동일하다.

65) 堀敏一, 1975, 『均田制の研究』, 岩波書店, 82쪽.

66) 宮崎市定, 1954, 「中国史上の莊園」, 『歴史教育』 2-6, 44쪽.

다는 노객, 특히 전객과 유사한 존재로 생각된다. 관련 사료가 없어 신라 정부가 사적 예속민인 노인을 공적으로 인정하였던 시기나 배경을 자세히 고찰하기는 어렵다. 삼국 간의 항쟁, 대토지 소유 등의 확대로 사적 예속민인 노인이 다수 발생하자 신라 정부에서는 관위 소지자 등에게 차등적으로 그러한 예속민을 점유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또한 노인의 부세 대납을 인정하는 방식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성산산성 목간의 노인이 노객과 유사한 존재라고 할 때, 신라에서는 노인이라는 표현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개토왕비에서 백제·신라의 왕을 노객으로 표현하였고 모두루 묘지명에서는 모두루를 고구려왕의 노객이라 표현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봉평리비와 성산산성 목간에서는 노객이 아닌 노인으로 표현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가 입장에서 더 이상 외부인(客)이 아니므로 객은 탈락하고 노인으로 부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67)</sup>

그러나 노객에서 노인으로의 轉化를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주고구려비에는 ‘諸夷古奴客人’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를 노객과 노인을 합친 표현으로, 노객이 고구려에 신속한 주변국 군왕을 지칭한다면 노인은 그보다 세력이 약한 족속의 수장이나 신료 등을 뜻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68)</sup> 이러한 견해를 참고한다면 충주고구려비의 노인 역시 노객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입장에서의 외부인에 속한다. 그러나 양자를 구분하여 썼더라도 상하 예속 관계를 나타낸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즉 노객이든 노인이든 그것은 예속 관계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노객과 노인을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 이러한 노인의 개념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사에서는 노객이 개인 간의 예속 관계를 나타낸 것에 비해 한국사에서는 노객·노인이라는 표현이 국가와 국가 사이, 국왕과 신하 사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예속 관계 역시 의미하는 등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소 억측이지만, 신라에서 노객이 아닌 노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외부인으로서의 객의 의미를 제거한 것보다는 조금 더 지방에 대한 배타적인 의미로서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제 봉평리비의 노인과 성산산성 목간의 노인의 연속성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려 한다. 기존에 봉평리비의 노인은 법흥왕대 율령 반포를 전후하여 공민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었으며, 봉평리비는 그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산산성 목간 단계에서 노인에게 공민과 동일한 부세가 부과된 것이 아니라 공민에게 부과된 부세를 일종의 농업 노동자로서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국가에서도 그러한 대납을 허용하고 있었다는 이 글의 관점에서는 봉평리비와 성산산성 목간을 통해 노인이 소멸해 가는 양상을 읽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중국사의 양상을 참고하면, 유력 인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노객의 점유가 추진되었던 서진·동진과 달리 이후 북조에서 행해진 균전제에는 급객제도가 계승되지 않았다. 균전제는 유력 인사들에게 예속되었던 객들도 일반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균전농민으로 파악하려 하였고, 兩晉의 제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노비들에 대해서도 노비의 수전을 통해 토지 소유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였다. 따라서 균전제는 양진의 제도에 비해 개별인신적 지배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69)</sup> 이를 통해 유력 인사의 비호를 받는 노객들을 공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給田이 요구되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 없이 외위 소

67) 강나리, 2023, 앞의 논문, 40쪽.

68) 여호규, 2020,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한국고대사연구』 98, 118쪽.

69) 堀敏一, 1975, 앞의 책, 93쪽.

지자의 예속 노동력으로서의 노인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이 자연스럽게 공민으로 전화되었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봉평리비의 노인은 중앙과 지방의 예속 관계, 성산산성 목간의 노인은 개인과 개인의 예속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전자가 후자로 전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전자의 지역적 개념의 노인은 일부 군현으로 전환되었을 것이지만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통일신라의 부곡으로 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집단적 예속민이라는 측면에서 양자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노인을 노객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한 이 글의 관점이 타당하다면, 노객은 漢代에 출현한 부곡의 후신<sup>70)</sup>으로서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다.

봉평리비의 '前時王大教法'에 의해 居伐牟羅男弥只가 노인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기존에 대체로 법흥왕대 이후 노인이 공민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었을 것으로 본 이유는 '비록 노인이지만(雖是奴人)', '前時王大教法'이 있었고 이것을 법흥왕 율령과 연결하여 居伐牟羅男弥只가 노인의 처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래 노인이던 居伐牟羅男弥只를 노인의 처지에서 벗어났다면 奴이 雖是奴人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적 예속민인 노인을 공민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균전제와 같은 국가적 토지 제도의 시행과 연결해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체적인 계기를 신라사에서 찾아보자면, 법흥왕대의 율령 반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덕왕대의 丁田制 시행을 전후로 하여 관위 소지자들의 사적인 예속민을 국가에서 직접 장악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개인의 예속민을 공민으로 파악하고, 개별인신적 지배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흥왕대 율령을 소위 공민의 창출의 획기로 파악하는 것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 노인 목간의 분석을 통해 노인은 직접 부세 납부의 대상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부세를 대납한 것이며, 이를 통해 가호 단위의 세제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이미 제시된 바 있으므로 중고기 세제의 실태를 충분히 밝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왕에 하찰 목간을 세물의 꼬리표로 보는 입장에서 제기한 여러 논의를 살펴보면서 중고기 호등제의 기능에 접근해 보려 한다.

먼저 하찰마다 米, 麥, 稗 등 곡물의 종류가 다르고 1인의 하찰과 세액이 동일한 복수 인명의 하찰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신라에서 연령등급별, 호등별 차등수조가 실시되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sup>71)</sup> 하지만 성산산성 목간을 통해 연령등급별 차등수조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경우 稗 1石을 납부했다는 점은 분명한 상황에서 연령등급별 차등수조를 상정하려면 부세 부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등급인 丁의 부담을 稗 1石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환산 비율을 고려할 때 稗 1石은 분명 米 1石보다는 작은 액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丁이 가장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점과 맞지 않는다.

한편 복수인명 하찰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대체로 노인 목간을 제외하고는 2명의 인물이 기재된 경우, 2인이 공동으로 부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인 목간의 양상을 다른 복수인명 하찰에도 적용하여 앞 사람의 인명은 단순한 정보로서 기재된 것이고 부세와 직접 연관된 인명은 하나라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72)</sup> 이 글에서는 부세가 직접 부과된 대상은 앞의 인명인

70) 宮崎市定, 1954, 앞의 논문, 40~44쪽.

71) 윤선태, 2012, 앞의 논문, 172쪽.

호주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정보로서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복수인명 하찰에서 2명이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공감의 간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 상정한 복수인명 하찰에서의 1인 稗 0.5石의 납부는 대체로 1인 稗 1石의 납부로 수정해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야1598 목간의 ‘買若村古克斯玆于 稗石’ 가야2051 목간의 ‘買若村物禮利 斯玆于稗石’이다. 斯玆于라는 인명이 양 목간에 모두 보이는 점에 대해 동명이인 혹은 斯玆于를 인명어미로 보는 견해<sup>73)</sup>, 斯玆于가 부세를 두 번 납부했다는 견해<sup>74)</sup> 斯玆于가 古克와 物禮利 두 사람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였다는 견해<sup>75)</sup> 斯玆于의 세액이 稗 1石에 미치지 못해 古克, 物禮利와 합쳐 1석을 구성하였다는 견해<sup>76)</sup>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첫번째 견해를 제외하고는 買若村이라는 지명이 동일하므로 斯玆于를 동일 인물로 이해하는 것인데, 노인과 같이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는 점이 문제가 되지만, 각각 古克와 物禮利를 호주로 하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한편 가야2641 목간 등에 米 1石이라는 표현이 보이며,<sup>77)</sup> 가야2004와 가야 2005를 통해 文尸 伊가 총 稗 2石을 납부한 점이 확인된다. 결국 현재 성산산성 목간에서 보이는 납부액은 稗 1石, 米 1石(=稗 1.5石), 稗 2石<sup>78)</sup>의 3가지가 되는데, 당시 가호 단위의 세제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는 3等戶制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제도의 연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는 어려우나 아래의 사료를 참고해 볼 수 있다.

- C. 天安皇興기에 이르러 (중략) 마침내 민의 빈부로 인해 租를 3등9품으로 나누어 수납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1,000리 내는 粟을 납부하고, 1,000리 외는 米를 납부한다. 상3품의 호는 京師에 들이고, 중3품은 다른 주의 要倉에 들이고, 하3품은 본주에 들인다.<sup>79)</sup>

사료 C는 북위 헌문제 시기(466~471)의 사실을 보여주는데, 조세 운송의 부담에 대해서는 3등의 구분을, 조세의 부담에 대해서는 9품의 구분을 각기 적용하고 있다.<sup>80)</sup> 특히 주목되는 점은 거리에 따라 납부하는 곡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중3품은 다른 주의 要倉에 들인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성산산성이 위치한 함안 지역은 下州에 속하는 반면, 목간에 보이는 지명인 감문성(경북 김천시 개령면), 구리벌(경북 의성군), 고타(경북 안동시) 등은 모두 上州에 속한다. 위 사료에서 1,000리라는 거리나 중3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같은 上州 소속이라도 왕경 내지는 성산산성과의 거리에 따라 납부하는 곡물이 약간씩 달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부 지역에 비정기적인 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일부 지역의 부세만 모인 것이 아니라, 3등호제 하에서 등급이 같은 호의 세물이 모였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세액에

72) 홍승우, 2019, 앞의 논문, 90~92쪽.

73) 윤선태, 2012, 앞의 논문, 163쪽.

74) 김창석, 2016, 앞의 논문, 57쪽.

75) 이재환, 2018, 앞의 논문, 51~52쪽.

76) 강나리, 2023, 앞의 논문, 44~45쪽.

77) 가야2026·가야5596 등 米를 기준으로 한 환산치를 적은 목간 역시 米 1石에 해당할 것이다.

78) 가야2025에는 麥 2石도 보이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麥과 稗의 환산비는 같았을 것이다.

79) 『魏書』 卷110, 食貨志6 第15, “至天安 皇興間遂因民貧富 爲租輸三等九品之制 千里內納粟 千里外納米 上三品戶入京師 中三品入他州要倉 下三品入本州”.

80) 김성한, 1998, 『중국토지제도사연구』, 신서원, 252쪽.

대해서는 9품의 구분을 혼용하였다고 본다면 등급이 같은 호의 액수가 다시 3품으로 나뉘는, 다시 말해 성산산성 목간에서 세액이 3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고기 당시 호등제가 조세 운송의 측면에서는 3등, 조세액의 측면에서는 9품으로 기능하다 촌락문서 단계에 이르러 9등호제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 IV. 맺음말

기존에 성산산성 하찰목간을 세물의 꼬리표가 아닌 개인 식량의 부찰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절가의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문이 제기되며, 또한 30일치 식량으로서의 피 1석은 당·일본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성산산성 하찰목간을 세물의 꼬리표로 보는 설은 여전히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노인에 대해서는 사노비가 아니라 중국사의 노객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僮客限米는 실상 僮客에게 직접 限米라는 부세가 부과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인 州卒의 토지에 부과된 부세인 限米를 僮客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례를 통해 동객이 일반민과 동일한 부세 납부의 주체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하여 성산산성 목간에서 노인과 그 주인 모두가 부세를 납부한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정남 단위의 세제가 아닌 가호 단위의 세제가 시행되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봉평리비의 노인과 성산산성 목간의 노인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가 사적 예속민인 노인의 존재와 부세 대납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이 공민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인을 공민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균전제와 같은 국가적 토지제도의 시행과 연결해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법흥왕대의 율령 반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덕왕대의 丁田制 시행을 전후로 하여 관위 소지자들의 사적인 예속민을 국가에서 직접 장악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개인의 예속민을 공민으로 파악하고, 개별인신적 지배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흥왕대 율령을 소위 공민의 창출의 획기로 파악하는 것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중고기 호등제와 관련하여 당시 가호 단위 세제가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현재 성산산성 목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액이 稗 1石, 米 1石(=稗 1.5石), 稗 2石의 3가지라는 점을 근거로 3등호제가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복위의 사례를 참고할 때 3등호제는 조세 운송의 부담에 대한 것이며 조세의 부담에 대해서는 9품의 구분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상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중국·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고기 세제를 재구성하고 그 사회적 성격을 논해보려 하였다. 하지만 신라 자체 사료가 부족하여 추정에 의존한 바가 많다. 앞으로 노인 목간 혹은 성산산성 하찰목간과 비슷한 시기의 하찰목간이 경주 혹은 경상북도 일원 등에서 발견된다면 중고기 세제의 실태에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목간 연구는 정확한 판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독자적인 판독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추후 이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신라 중고기 奴人の 성격과 수취방식」에 대한 토론문

이재환 | 중앙대학교

본 발표는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성격을 세금 납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중고기 奴人の 성격과 稅制의 특징을 살핀 것입니다. 한반도 목간 중 단일 유적 출토 목간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함안 성산산성 목간임에도 해당 목간을 다루는 연구자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있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발표된 점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지속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Ⅲ장에서 ‘奴人’의 세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고 3등의 戶等에 따른 수취를 주장한 것은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짐꼬리표 목간들의 성격이 납부된 세물에 묶여 있던 것이며 적혀 있는 인물은 그 납부자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Ⅱ장에서 함안 성산산성 짐꼬리표 목간의 성격을 검토한 부분이 성립하지 않으면, Ⅲ장의 논지는 출발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Ⅱ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함안 성산산성 짐꼬리표 목간들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의 荷札로 파악하고 적힌 인명들을 납부자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인명들이 해당 집의 소유자나 수신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성격 파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소유자로 본 견해로는 박남수, 2017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新羅史學報』 40가 있으며, 수신자로 본 견해로 이재환, 2018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韓國史研究』 182 ; 畑中彩子, 2018 「목간群으로서의 성산산성 목간 -일본 고대 꼬리표(付札) 목간 및 공방운영의 검토를 통해서-」 『木簡과 文字』 21 ; 홍승우, 2023 「문자자료로 본 신라 역역 동원 행정」 『歷史教育論集』 84 등이 있습니다. 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22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王私’와 ‘城下麥」 『新羅史學報』 54에서도 ‘城下木簡’의 인명이 수신자로서 역역동원된 사람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어느 한 쪽의 가능성이 부정될 만큼 확고한 증거가 나타난 상태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단순히 그 중 어느 쪽 입장을 따르는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크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장들의 논거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입장 선택의 당위를 주장해야 논의가 진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 해당 목간들이 납부된 세물에 붙었던 꼬리표라고 본 근거는 ‘곡물의 折價’를 상정할 수 있는 목서가 있다는 것과 稗 1石이 役夫 1인의 30일 치 식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稗 1石이 30일치 식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발표문에서 “부역령 혹은 창고령 유관 조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였을 정도로 밝히기 어려운 상태이며, 해당 목간들에 적힌 인명을 수신자로 보는 근거와는 무관하므로 관련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은 곡물의 ‘折價’를 상정할 수 있는 목서가 있다는 것인데, 애초에 수신자로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麥十五斗石’·‘稗十五斗石’·‘□米十一斗石’을 稅物의 折價 규정을 적은 것으로 보

지 않습니다. ‘15斗 짜리 石’이나 ‘11斗 짜리 石’으로 해석할 수 있음이 주장되었습니다(이재환, 2018 앞의 논문, 39쪽 ; 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22 앞의 논문, 214~215쪽). 곡물마다 다른 계량 기준을 적시한 것이라고 본 경우(홍승우, 2018 「함안 성산산성목간의 물품 기재방식과 성하 목간의 서식」 『木簡과 文字』 21)는 그러한 계량 기준이 세금 납부 시에도 적용 가능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역역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적힌 인물이 수신자라고 파악하였습니다(홍승우, 2023 앞의 논문, 160~161쪽). ‘折價’로 판단하는지 여부가 세금說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문구가 稅物의 折價 규정이라면 기준이 되는 곡물과 양이 적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는 米 1石(1石=10斗)이 기준일 것이라는 견해(전덕재, 2020 「三國의 量制와 百濟 田積制에 대한 고찰」 『木簡과 文字』 24)를 따르고 있는데, 해당 논고에서 근거로 활용한 자료 중 <雲夢睡虎地秦簡>의 倉律과 <張家山漢簡> 『算數書』의 내용은 도정에 따른 부피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세금 수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天聖令 조문 중 賦役令 조항은 수취와 관련된 것이지만, 역시 도정 여부에 따른 차이로 해석됩니다(김택민·하원수 주편, 2013 『전성령 역주』, 해안, 105쪽). 倉庫令은 창고에 들어가는 곡물이 아니라 나가는 곡물에 대한 환산이며, ‘粟 1斗’가 기준으로 명기되었음이 주목됩니다.

이 문구를 세금 납부 시의 환산 기준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기준이 되는 곡물의 종류의 양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城下’목간 중에는 그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米 1石(1石=10斗)’이라는 기준이 너무 당연해서 생략된 것이라면, 함안 성산산성 목간 중 곡물 종류나 수량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곧 그 당연한 米 1石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발표자 또한 “물품이나 수량이 생략되었을 경우 稗 1石으로 보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3쪽) 함안 성산산성의 꼬리표 목간에서 확인되는 물품 중 절대 다수는 稗입니다. ‘米 1石(1石=10斗)’이 기준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아직 확실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산 기준을 굳이 표기하면서 기준이 되는 곡물의 종류와 양은 생략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의문입니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을 환산치를 굳이 세물의 꼬리표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는 이미 있었습니다(이재환, 2018, 앞의 논문, 39쪽 각주 29). 발표자는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 식량의 하찰인 경우에도 그 양의 많고 적음까지 기재할 필요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세금說을 따르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石’에 다양한 용량이 들어가고, 그것이 세금이 아닌 私的 荷物의 꼬리표에 표기된 사례들은 많습니다.

고려시대 목간인 태안 마도1호선 12호 목간에는 “丁卯十二月二十八日竹山縣在京檢校大將軍尹起華宅上田出粟參石各入貳拾斗□□□ □□ □□”라 하여 중앙의 유력자에게 보낸 물품으로 ‘粟’이 ‘石’에 각각 20斗가 들어갔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곡물들이 ‘石’에 15斗, 16斗, 18斗, 20斗, 23斗 등 다양한 양으로 들어갔음이 태안 마도1호선 및 마도2호선·마도3호선 목간들에서 확인됩니다(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22 앞의 논문, 214쪽).

아울러 발표자가 인용하였듯이(6쪽 각주 37), 일본 『尾張國正稅帳』에 따르면 피(稗) 1斗가 벼(稻) 1束 = 쌀 5斗로 환산되었다고 합니다(平川南,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일본 와세다대학 조선문화연구소 공동연구 자료집』, 206쪽). 피와 쌀의 환산 비율을 1.5:1로 추정하는 것은 이와도 차이를 보입니다. ‘麥十五斗石’·‘稗十五斗石’·‘□米十一斗石’ 등의 문구가 稅物의 折價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직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해당 문구를 환산치로 간주한다고 해서 내용이 稅物의 납부자로 결론지을 수 없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나아가 해당 목간들에 적힌 인명들이 물품의 수신자일 수 있다는 견해들에서 제시한 논거는 그 밖에도 많습니다. 먼저 세금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야 2640목간에는 ‘刀寧’의 짐(負)에 도난이 있었음을 적었습니다. 도난된 물품의 품목이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짐인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금의 납부였다면, ‘刀寧’의 납부 책임은 이미 끝난 상태이며, 와야 할 품목과 양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함안 성산산성의 꼬리표 목간들은 서식과 서체상 상위 행정구역 단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꼬리표로서의 기능은 상위 행정구역 단위와 사용처 사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납부자의 정보를 기록해서 보내야 할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겠습니까. 목간에 적힌 날짜 정보가 일관적이지 않으면, 통상적인 조의 납부 시점과도 맞지 않음 또한 지적되어 있습니다(홍승우, 2023, 앞의 논문, 160쪽). 이 목간들을 세물 꼬리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Ⅲ장에서는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奴人’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奴人이 주인의 戶稅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은 새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함안 성산산성의 꼬리표 목간들이 세금의 납부자를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戶主에게 부과된 戶稅라고 한다면, 奴人이나 다른 가족(?)의 이름을 목간에 적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아울러 “伊大兮村 稗石”(가야2015), “丘伐稗石”(가야2029), “沙喙部負”(가야5598) 등 인명이 없이 지명에 바로 물품이 나오는 목간들에 대한 해석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적 예측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묻고 싶은 부분이 더 있습니다. 함안 성산산성 꼬리표 목간 중에는 ‘奴人’과 ‘奴’가 모두 확인됩니다. 이들의 서사 방식은 유사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奴人’이나 ‘奴’ 없이 두 인명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奴人’과 ‘奴’는 동일한 실체로 보는 것이 좋을지, 구분해야 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대구 팔거산성 목간에서 ‘王私’가 판독되고, 그에 따라 함안 성산산성 목간 중에도 ‘王私’로 판독이 수정되는 목간이 나오면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경효, 2022, 「대구 팔거산성 출토 목간 소개」 『木簡과 文字』 28 ; 하시모토 시게루, 2022 앞의 논문 ; 홍승우, 2022, 「대구 팔거산성 출토 신라 목간 검토」 『大丘史學』 149). 특히 대구 팔거산성 목간16의 “安居利干支私 男谷村支之” 및 함안 성산산성 가야56 목간의 “石密日智私…勿利乃(亢)花支稗”와 가야2028 목간의 “珍得智□(仇)以稗石”처럼 두 인명 사이에 ‘私’가 들어가는 사례가 확인되어, 뒤의 인물이 앞에 나온 인물의 사적 예측인일 가능성이 지적되었음이 주목됩니다(홍승우, 2022 앞의 논문, 32~32쪽). ‘私’와 ‘奴人’을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다른 표기로 보아야 할지, 다른 성격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납부액이 稗 1石, 米 1石, 稗 2石의 세 가지로서, 3等 戶制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애초에 납부액을 그와 같은 3등급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이를 인정할 경우 외위 소지자 중에도 稗 1石과 稗 2石이 갈리고, 외위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米 1石과 稗 2石의 사례가 있는 데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할 듯합니다. 외위 소지자는 분명 지역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戶等과는 무관했던 것일까요?



# 新羅 中古期 전반 大等の 성립과 운영 방식

박종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 I. 머리말
- II. 대등 집단의 성립과 그 성격
  - 1. 부체제의 해체와 대등 집단의 성립 과정
  - 2. 중고기 전반 대등의 성격과 의의
- III. 진흥왕대 대등의 역할과 운영 방식
  - 1. 대등 집단의 구성원과 중앙·지방관직 임명
  - 2. 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대등의 역할
- IV. 맺음말

## I. 머리말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 율령이 반포되면서 17관등제(이하 경위제)와 신분제(또는 골품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520년대까지 국정은 왕과 6부의 유력자들로 구성된 의결 집단이 공론하고 지방에 실무집단을 파견하여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530년대가 되자 상대등이 설치되고 왕의 위상은 매금왕에서 대왕(또는 태왕)으로 격상되었다. 따라서 520~530년대는 마립간기의 부체제에서 벗어나 중앙집권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흥왕대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진전되었다. 『적성비』에서 국왕은 ‘教’의 단독 주체로 등장하며 경위로 편제된 모든 신료 위에 위치하였다. 이와 동시에 초기 단계의 중앙 관서와 관직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병부, 사정부, 품주, 동시전 이외 다른 중앙 관서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중앙 관서의 관직은 兵部令, 司正府卿, 典大等과 말단 관리인 史 정도만 설치된 상황이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시기 국정을 운영한 핵심 주체로 진흥왕대 금석문에 나타난 대등에 주목하였다.

大等は 일제강점기에 今西龍이 언급한 이래<sup>1)</sup> 해방 이후 간략히 논의되는 정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2)</sup> 이후 대등을 단일 주제로 다룬 연구는 이기백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그는 대등이 진골

\*본 글은 필자의 석사논문(박종원, 2025, 「新羅 中古期 大等の 성립과 典大等の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II 장을 수정·보완한 발표문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1) 今西龍, 橋本繁 譯, 2005, 「新羅眞興王巡狩管境碑考(3)」, 『新羅史學報』5, 신라사학회

귀족이며 상대등이 주관하는 귀족회의(화백회의)의 구성원으로 보았다.<sup>3)</sup>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견해를 수용하면서 대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화백회의로 보고 대등의 귀족적 측면을 강조하였다.<sup>4)</sup>

한편, 이와 시각을 달리하여 신료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는데, 대등을 중앙상급신료의 범칭<sup>5)</sup>, 국왕을 보좌하는 다수의 신하 집단<sup>6)</sup>, 나마 이상의 관료<sup>7)</sup>, 국가적 차원의 상급 공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관명<sup>8)</sup>, 군신회의의 구성원<sup>9)</sup> 등으로 보았다. 이 중에서 일부 견해는 더 나아가 대등을 남당회의, 대등회의 군신회의 등 특정 회의체에 참여하는 존재로 보기도 하였는데,<sup>10)</sup> 대등이 의결 집단의 구성원이면서 고위지배층이라는 것에 큰 이견은 없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대등이 참여하는 회의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귀족 집단 혹은 신료 집단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 성과에서는 대등의 인원수, 관등, 역할 등이 비문마다 다르다는 점, 대등의 직임이 분화하여 某大等 관직이 설치되었다는 점, 사료에서 상대등이 회의를 주관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고,<sup>11)</sup> 대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sup>12)</sup> 대등을 귀족회의의 구성원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13)</sup> 이렇듯 대등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등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었는지, 비문마다 대등의 인원수와 관등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진흥왕대 비문이 묘사한 내용 이외 대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위의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신라 중고기 전반 대등을 새롭게 검토하고자 한다.

- 
- 2) 末松保和, 1954, 「上大等について」, 『新羅史の諸問題』東洋文庫 ; 강만길, 1955, 「眞興王碑의 隨駕臣名研究-黃草嶺碑와 昌寧碑-」, 『史叢』1, 高麗大學校史學會
  - 3) 이기백, 1974(a), 「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pp.78~86 ; 이기백, 1974(b), 「上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pp.91~95
  - 4) 김철준, 1975, 『韓國古代國家發達史』, 韓國日報社 ; 이종욱,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일조각 ; 신형식, 1985, 『新羅史』,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주보돈, 1992(a),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韓國社會發展史論』, 일조각 ; 전덕재, 1996, 『新羅六部體制研究』, 일조각 ; 김영하,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등
  - 5) 이문기, 1982, 「新羅 眞興王代 臣僚組織에 대한 一考察」, 『대구사학』20, 대구사학회, p.167
  - 6) 박대재, 2014, 「新羅의 四靈地會議와 和白」, 『신라문화』44,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p.271
  - 7) 이종서, 2008, 「新羅 中古期 大等の 語義와 性格」, 『신라문화』31,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p.53
  - 8) 김광수, 1996, 「新羅 官名 ‘大等’의 屬性과 그 史的 發展」, 『역사교육』59, 역사교육연구회, p.68
  - 9) 이인철,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p.26
  - 10) 남당회의 (이문기, 1982, 앞의 논문, pp.161~162) ; 대등회의 (이종서, 2008, 앞의 논문, pp.54~55) ; 군신회의 (이인철, 1993, 앞의 책 ; 이인철, 2003, 앞의 논문)
  - 11) 이인철, 2003, 「신라의 왕권과 정치구조-군신회의의 구성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라문화』2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이재환, 2018, 「신라의 회의제와 상대등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대구사학』131, 대구사학회 ; 양자량, 2019(a), 「6세기 신라 대등 성격에 대한 검토-진흥왕대 비문 분석을 중심으로-」, 『신라문화』5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등
  - 12) 노용필, 1990, 「新羅 眞興王代 大等の 分化와 그 政治的 背景 -昌寧 眞興王巡狩碑 會集人名의 大等관계 부분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학보』127, 역사학회 ; 노용필, 1996,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일조각 ; 강재광, 2008, 「新羅 眞興王代 使大等 편제의 역사적 성격-眞興王昌寧碑를 중심으로-」, 『신라사학보』12, 신라사학회 ; 신형식, 2001, 「新羅 中古期 大等の 身分」, 『신라학연구』5,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등
  - 13) 양자량, 2019(b), 「5~7세기 신라 국정운영과 대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환, 2014, 「新羅 眞骨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 II. 대등 집단의 성립과 그 성격

### 1. 부체제의 해체와 대등 집단의 성립 과정

대등(大衆等)<sup>14)</sup>은 550년을 전후로 건립된 「적성비」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561년 『창녕비』, 568년 「북한산비」·「마운령비」·「황초령비」에 그 인명이 기재되어 있다. “대등(대중등)”으로 기재된 인원수는 「적성비」 5명, 「창녕비」 21명, 「마운령비」 7명, 「황초령비」 7명이 확인된다. 「북한산비」에서 3명으로 확인된다는 견해가 있지만<sup>15)</sup> 마멸로 인해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문마다 대등이 보유한 관등의 상한 및 하한이 뚜렷하지 않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처럼 대등은 비문마다 인원수와 관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삼국사기』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특징 및 성립 시기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먼저 대등의 등장 시점부터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상대등의 등장과 관련된 아래의 사료를 보고자 한다.

A. (법흥왕 18년[531]) 여름 4월, 이찬 철부를 상대등으로 삼고, 國事를 총괄하게 하였다. 상대등이라는 관직이 이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지금의 재상과 같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18년)

사료 A에서 법흥왕 18년(531) 4월 이찬 철부를 상대등에 임명하고 나라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 이에 대등은 531년 이전에 등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부체제 해체 이전 대등 집단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等 → 大等 → 上大等’이라는 발전 단계를 상정하여 대등의 전신을 等으로 보고 지난날 족장층이 부체제에 편성됨에 따라 대등에 임명되는 것으로 보았다.<sup>16)</sup> 그러나 최근 연구 성과에서는 오히려 법흥왕대 부체제가 해체되면서 대등 집단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sup>17)</sup> 필자의 생각도 6세기 초중반은 부체제가 해체되고 집권적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등 집단의 성립을 부체제의 성립과 연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것처럼 부체제가 해체되면서 대등 집단이 성립되었다면 그들은 6부의 유력자들 이외 다른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등 집단의 성립이 곧 기존 6부의 유력자들과 다른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6부의 유력자들인 「냉수리비」(503)와 「봉평비」(524) 교집단은 대등과 연결되는 존재라고 생각된다.<sup>18)</sup> 하지만 「냉수리비」에서는 아직 경위가 17등으로 완비되지 않았고 율령 반포 이전 시점이므로<sup>19)</sup> 필자는 524년 「봉평비」 교집단에

14) 대중등에 대해서 대등과 같은 용어로 보는 견해 (이기백, 1996, 「丹陽 赤城碑 ‘王敎事’ 부분의 檢討」,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pp.235~236 ; 武田幸男, 2020,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新羅中古期の史的研究』, 勉成出版, p.260 ; 박대재, 2014, 앞의 논문, p.271)와 다른 용어로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 (주보돈, 2002,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pp.172~178 ; 이종서, 2008, 앞의 논문, pp.54~55 ; 이종서, 1998, 「‘節’·‘等’의 의미분석과 赤城碑 ‘敎事’ 부분의 재검토」, 『한국사론』39, 서울대학교사학과, pp.15~16) ; 그러나 후자의 견해에서도 대중등과 대등이 다른 용어임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대중등을 통해서 대등회의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대중등과 대등이 완전히 같거나 혹은 다른 용어지만 대등과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에 이견이 거의 없다. 이에 대중등과 대등의 성격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5) 이기백, 1974(a), 앞의 논문, p.77

16) 이기백, 1974(a), 앞의 논문, p.68, p.83

17) 양자량, 2019(a), 앞의 논문, pp.49~50 ; 신형석, 2001, 앞의 논문, pp.134~135 ; 이종서, 2008, 앞의 논문, p.47 등

18) 하일식, 2006, 앞의 책, p.120 ; 「냉수리비」의 교집단은 沙喙 至都盧葛文王, 斯德智 阿干支(沙喙 소속), 子宿智 居伐干支(沙喙 소속), 喙尔夫智 壹干支, 只心智 居伐干支(喙 소속), 本彼 頭腹智 干支, 斯彼 暮斯智 干支 등 7명이다.

주목하고자 한다. (아래 표 1 참고)

표. 2 「봉평비」(524) 교집단<sup>20)</sup> (\*[ ]는 비문에서 생략된 내용)

구분	소속부	이름	관등
敎集團	喙部	牟卽智	寐錦王
	沙喙部	徙夫智	葛文王
	本波部	𠄎夫智	干支
	峇喙部	美 <sup>21)</sup> 昕智	干支
	沙喙部	而粘智	太阿干支(6)
	[沙喙部]	吉先智	阿干支(5)
	[沙喙部]	一毒夫智	一吉干支(7)
	喙	勿力智	一吉干支(7)
	[喙]	慎宍智	居伐干支(9)
	[喙]	一夫智	太奈麻(10)
	[喙]	一小智	太奈麻(10)
	[喙]	牟心智	奈麻(11)
	沙喙部	十斯智	奈麻(11)
	[沙喙部]	悉尔智	奈麻(11)

6부의 유력자인 「냉수리비」·「봉평비」 교집단은 법흥왕 7년(520) 율령이 반포된 후 경위제와 신분제 (또는 골품제)를 통해서 왕 아래로 일원화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된다.<sup>22)</sup> 그러나 경위제는 처음부터 6부 전체에 적용된 제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봉평비」 단계까지는 휘부 ([급]량부)·사휼부(사량부) 유력자들만 관등을 소지한 반면 여타 부의 유력자는 干支를 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3)</sup> 干支는 部の 長을 의미하며<sup>24)</sup>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위호로 생각되므로<sup>25)</sup> 그는 아직 경위제에 편입되지 않고 전통적 기득권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19) 「냉수리비」에서는 干 계열 관등(壹干支, 阿干支, 居伐干支)과 나머지 확인되다가 「봉평비」(524)에서 17등인 邪足智가 확인된다. 물론 「봉평비」에서 잡찬(3), 파진찬(4) 사찬(8), 하위 관등 중 일부가 보이지 않지만 이 관등들이 「울주천전리서석」 원명(525), 「영천청제비」 병진명(536), 진흥왕대의 문헌기록과 「진흥왕순수비」에 확인되므로 법흥왕대 이미 17관등이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520년 율령을 반포했을 때 대사와 그 이하 관등이 설치되어 경위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전덕재, 1996, 앞의 책, pp.128~129)

20) 이명식, 1992, 「蔚珍 鳳坪碑」,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신라 1·가야 편)』, 駕洛國史蹟開發硏究員, p.15의 판독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1) 이명식, 1992, 앞의 논문, pp.16~18에 있는 판독대비표를 참고하여 美로 기재하였다.

22) 이기백, 이기동, 1982, 『韓國史講座(I) 古代編』, 일조각, p.153 ; 골품제는 율령의 법제적 보장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520년 율령 반포 때 관등제 및 공복제와 함께 법제화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일식, 1995, 「신분제와 관등제」, 『한국역사입문1』, 풀빛, p.226) ; 반면, 520년대 당시 골품제가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법제화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당시 대사까지 승진할 수 있는 신분층, (대)나마까지만 승진할 수 있는 신분층, 그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신분층 등 관등의 승진에 제한을 받은 신분층이 형성된 것은 틀림없다고 보았다. (전덕재, 1996, 앞의 책, p.142~143 ; 전덕재, 2000, 「7세기 중반 관직에 대한 관등 규정의 정비와 골품제의 확립」, 『한국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pp.306~307) 그리고 후자의 견해를 수용하여 중고기 당시 骨과 非骨 정도의 구분만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이재환, 2010, 「新羅 中·下代 官等制의 성격 변화-人名·官等의 표기 방식을 중심으로-」, 『韓國史論』5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p.86) 따라서 양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골품은 “신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23) 「봉평비」에서는 本波部(본피부), 峇喙部(점량부=모량부) 干支가 등장하고 「냉수리비」에서 斯彼部(습비부)의 干支가 등장한다. 이에 「봉평비」·「냉수리비」에서 여타 4부 중 3부의 干支는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두 비문에서 漢只伐部(한기부)의 干支는 확인할 수 없지만 「창녕비」에서 漢只𠄎𠄎[漢只伐部]가 확인되므로 漢只伐部 干支도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24) 전덕재, 1996, 앞의 책, pp.129-140

그런데 530년대에 이르면 국왕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강력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봉평비」에서 법흥왕은 喙部 牟即智 寐錦王이었지만 「울주천전리서석」 을묘명(535)에서 聖法興大 王이었고, 법흥왕의 왕비는 추명(539)에서 另卽知太王妃로 등장한다. 따라서 「봉평비」 건립(524.1.15)부터 535년 사이 왕은 더 이상 소속부를 칭하지 않고 부를 초월하는 지위로 격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26)</sup>

이에 干支가 경위제에 편입된 시점을 530년대로 파악하고, 520년대 경위제와 신분제가 韃部·사 韃부에 먼저 시행되었다가 530년대 여타 부에 확대 적용되었다는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27)</sup> 이러한 점에서 520년대 韃部·사 韃부가 먼저 해체되고 530년대 여타 부까지 해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8)</sup> 전술하였듯이 「봉평비」 교집단은 대등과 연결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들이 대등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으므로 대등이 성립된 시기의 하한은 「봉평비」 건립 이후라고 생각된다.<sup>29)</sup>

그렇다면 6부가 해체되어 가는 가운데 「봉평비」 건립 이후 6부의 유력자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대등 집단에 편제되었을까? 전술하였듯이 「봉평비」에서는 여타 부의 유력자들이 干支로 기재되었지만, 진흥왕대 비문에서는 여타 부 소속 대등이 모두 관등을 보유하고 있다. (표 2~4 참조) 따라서 대등 집단이 성립하려면 韃部·사 韃부의 유력자뿐만 아니라 여타 부의 유력자들까지 경위제와 신분제에 편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髀制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韃部·사 韃부 유력자를 중심으로 나머지 4부의 유력자 일부와 신라에게 병합된 소국의 지배층 일부를 흡수하여 형성된 신라 최상위 지배층이 그 이하의 계층인 非髀과 격절되는 집단적 정체성을 표방한 것이 ‘髀’이었다.<sup>30)</sup>

진흥왕대 사다함이 진골이었다는 기록과 선덕여왕이 성골 남자가 다하여 즉위했다는 기록 등을 볼 때 진흥왕 이전 중고기 어느 시점에는 이미 髀로 분류되는 집단이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sup>31)</sup> 그리고 내물왕 계통 이외 법흥왕 19년(532) 신라에게 항복한 금관가야의 왕 김구해의 아들 김무력이 진골만 받을 수 있는 각간에 임명되었다. 이에 신라에 의해 정복된 국가의 최고위층은 髀 신분으로 편입되어 기존 신라의 최고 지배층과 함께 髀 집단을 구성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진흥왕의 왕비인 息途夫人(息途夫人)의 아버지는 박씨로, 牟梁部(牟梁里) 英失角干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여타 부의 유력자 중 일부 또한 韃部·사 韃부의 유력자들과 함께 신라의 최상층인 髀에 편제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sup>32)</sup>

전술하였듯이 520년대 韃部·사 韃부에 먼저 경위제와 신분제가 시행되고 530년대 여타 부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520년 울령 반포 이후 이미 경위제와 신분제에 편입되고 있었던 韃部·사 韃부 중심 유력자들이 「봉평비」 건립 이후 먼저 대등에 임명되고, 530년대 경위제와 신분제가 여타 부로 확

25) 하일식, 2006, 『신라집권관료제연구』, 혜안, pp.114~117

26) 이문기, 1992, 「蔚州 川前里書石」,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신라 1·가야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pp.152~153

27) 전덕재, 1996, 앞의 책, p.143

28) 전덕재, 1996, 앞의 책 pp.139~145

29) 신형석, 2002, 「6세기 新羅 貴族會議와 그 性格」, 『국사관논총』98, 국사편찬위원회, p.79

30) 이재환, 2014, 앞의 논문, pp.32~34

31) 이재환, 2014, 앞의 논문, pp.30~36

32) 이재환, 2014, 앞의 논문, pp.32~33 ; 물론 진흥왕대 비문에서 사파부와 잠 韃부 출신 대등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봉평비」에서 잠 韃부의 干支, 「냉수리비」에서 사파부의 干支가 등장하므로 이들 역시 부가 해체되면서 경위제와 신분제에 편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들도 경위제와 신분제에 편입되면서 대등에 임명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되면서 干支도 그에 흡수되어 대등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등과 연결되는 존재인 「냉수리비」·「봉평비」 교집단이 干支를 제외하면 모두 韃部·사해부 소속인 점과 진흥왕대 비문의 대등 중 4명을 제외하면<sup>33)</sup> 모두 韃部·사해부 소속인 점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표 2~4 참조) 즉, 대등 집단의 대부분이 韃部·사해부의 유력자들이고 여타 부의 유력자가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대다수인 韃部·사해부의 유력자들이 먼저 대등에 임명된 후 그 일부인 干支를 포함한 여타 부의 유력자들이 대등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대등은 상대등이 임명된 531년 4월 이전에 등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상대등은 그 명칭에서 대등의 우두머리라는 것과 여러 대등 중에서 한 명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고,<sup>34)</sup> 직무인 摠知國事의 본질은 왕의 정치적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sup>35)</sup> 대등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6)</sup> 따라서 대등 집단이 성립되는 과정은 531년에 일단락되었다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면 대등 집단의 성립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봉평비 건립 이후 韃部·사해부 유력자들이 대등에 먼저 임명되었다. 그 이후 대략 530~531년 4월 이전 干支 등 여타 부의 유력자들이 경위제와 신분제에 편입되면서 대등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531년 4월 상대등이 설치되면서 6부의 유력자로 구성된 대등 집단의 성립이 마무리되었다. 다만, 노종·무력 등 가야의 지배층이 대등 집단에 편제된 시점은 신라가 금관가야를 정복한 532년 이후 어느 시기일 것이다. 따라서 가야 지배층은 6부의 유력자들이 모두 대등에 편제되고 상대등이 설치되어 대등 집단의 성립이 일단락된 이후 흡수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 중고기 전반 대등의 성격과 의의

앞 절에서 대등 집단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았다. 대등의 성격과 의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등의 임명 기준이 관등인지 골품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성비」·「창녕비」·「마운령비」를 살펴보려고 한다.

표 2. 「적성비」(550) 인명표 (\* [ ]는 추측한 내용)<sup>37)</sup>

단락	구분	소속부	인명	관등
王敎事	大衆等(大等)	喙部	伊史夫智	伊干(2)
		[沙喙部]	豆弥智	彼玆干支(4)
		喙部	西夫叱智	大阿干(5)

33) 「창녕비」에서 출신 부를 알 수 없는 [沙喙部] 折夫智 一尺干, [沙喙部] [沙喙部] 智 一尺干 2명과 漢只屈 屈玆智 大一伐干, 本彼の 末智 及尺干 등 4명을 제외하면 모두 韃·사해부 출신으로 파악된다. (표 2~4)

34) 노용필, 1996, 앞의 책, p.106 ; 진흥왕대 이후 사례지만 「마운령비」의 대등 居叱夫智(거칠부) 伊干(2)이 진지왕 원년(576) 상대등에 임명되었고 「마운령비」의 대등 內夫智(노부=노리부=노종) 伊干(2)도 진평왕 원년(579) 상대등에 임명되었다.

35) 양자량, 2019(b), 앞의 논문, p.94 ; 하일식, 2006, 앞의 책, p.284 ; 신형식은 중고기 상대등의 직능을 왕과 귀족의 마찰을 극복하는 원만한 국정 집행의 조정자로 보았다. (신형식, 1985, 앞의 책, pp.136~137) ; 이영호는 上大等の 임명 절차가 대개 왕위의 교체와 때를 같이하는 것에 주목하여 上大等を 국왕의 동반자로 보았다. (이영호, 2014,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p.186) ; 중대의 사례지만 신문왕의 즉위와 함께 진복이 상대등에 임명된 것도 진복이 신문왕과 정치적 성격을 같이하는 것이라 본 견해도 있다. (김수태, 1996, 『新羅中代政治史研究』, 일조각, pp.14~15)

36) 이기백, 1974(b), 앞의 논문 p.94 ;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政治體制」,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學生社, p.64

		喙部	𠄎夫智	大阿干支(5)
		喙部	內礼夫智	大阿干支(5)
	高頭林城在軍主	喙部	比次夫智	阿干支(6)
		沙喙部	武力智	阿干支(6)
	鄒文村幢主	沙喙部	善設智	及干支(9)
勿思伐𠄎[城幢主]	喙部	助黑夫智	及干支(9)	
節教事	(생략)			
別教	(생략)			
𠄎部 奈弗耽郝失利大舍, 鄒文𠄎, 勿思伐城幢主使人 那利村𠄎人 勿支次阿尺, 書人 喙部 𠄎人, 石書立人, 非今皆里村𠄎智大烏之.				

표 3. 「창녕비」(561) 회집인명 (\*[ ]는 추독한 내용)<sup>38)</sup>

國王(眞興王)				
구분	소속부	인명	관등(순위)	
大[大等]	[沙喙]	𠄎智	葛文王	
	漢只[伐部]	屈珣智	大一伐干(大角干)	
	喙[沙喙]	𠄎智	一伐干(1)	
	𠄎	折夫智	一尺干(2)	
	𠄎	𠄎智	一尺干(2)	
	喙	𠄎夫智	迺干(3)	
	沙喙	另力智	迺干(3)	
	喙	小里夫智	𠄎干	
	沙喙	都設智	沙尺干(8)	
	沙喙	伐夫智	一吉干(7)	
	沙喙	忽利智	一[𠄎]	
	[喙]	珣利次公	沙尺干(8)	
	喙	余亡智	沙尺(8)	
	喙	所述智	沙尺干(8)	
	喙	𠄎	沙尺干(8)	
	喙	比叶[𠄎]智	沙尺干(8)	
		本彼	末[𠄎]智	及尺干(9)
		喙	𠄎智	𠄎
		沙喙	刀下智	及尺干(9)
		沙喙	𠄎智	及尺干(9)
	喙	鳳安智	𠄎	
[𠄎]等	喙	居七夫智	一尺干(2)	
	喙	𠄎夫智	一尺干(2)	
	沙喙	甘力智	𠄎干	
[𠄎]大等	喙	末得智	[𠄎]尺干	
	沙喙	七聆智	及尺干(9)	
四方軍主	比子伐軍主	登[𠄎]智	沙尺干(8)	
	漢城軍主	竹夫智	沙尺干(8)	
	碑利城軍主	福登智	沙尺干(8)	

37) 주보돈, 1992(b), 「丹陽 赤城碑」,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신라 1·가야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p.35의 판독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추독한 부분은 주보돈, 1992(b), 앞의 논문, p.37을 참조하였다.

	甘文軍主	沙喙	心麥夫智	及尺干(9)
使大等	上州行使大等	沙喙	宿欣智	及尺干(9)
		喙	次叱智	奈末(11)
	下州行使大等	沙喙	春夫智	大奈末(10)
		喙	就舜智	大舍(12)
	于抽悉[?]西阿郡使大等	喙	北尸智	大奈末(10)
		沙喙	須行夫智	奈[末](11)
	[?]爲人	喙	德文兄	奈末(11)
	比子伐停助人	喙	覓薩智	大奈末(10)
	書人	沙喙	導智	大舍
村主			忝聰智	述干
			麻叱智	述干

표 .4 「마운령비」(568) 隨駕 인명 (\*[ ]는 추독한 내용)<sup>39)</sup>

구분	소속부	인명	관등
沙門道人(僧侶)		法藏	
		慧忍	
大等	喙部	居柀夫智	伊干(2)
	喙部	內夫智	伊干(2)
	沙喙部	另力智	迺干(3)
	喙部	服冬智	大阿干(6)
	喙部	比知夫知	及干(9)
	喙部	未知	大奈末(10)
	喙部	及珎夫知	奈末(11)
執駕人	喙部	万今	大舍(12)
	沙喙部	另知	大舍(12)
裏內從人	喙部	沒今次	大舍(12)
	沙喙	非尸知	大舍(12)
駙人	沙喙部	爲忠知	大舍(12)
占人	喙部	与難	大舍(12)
藥師	喙部	篤支次	小舍(13)
奈夫通典	本彼部	加良知	小舍(13)
[?]	本彼部	莫沙知	吉之(14)
及伐斬典	喙部	夫法知	吉之(14)
裏內[?]名			吉之(14)
堂來客 裏內客 五十			
外客 [?][五十]			
[?]智			沙干(8)
助人	沙喙部	舜知	奈末(11)

표 2~4는 「적성비」, 「창녕비」, 「마운령비」에 기재된 인물의 인명과 관등을 정리한 것이다.<sup>40)</sup> 이 표

38) 노중국, 1992(a), 「昌寧 眞興王拓境碑」,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신라 1·가야 편)』, 駕洛國史蹟開發 硏究員, p.55의 판독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추독한 부분은 노중국, 1992(a) 앞의 논문, pp.60~66을 참조하였다.

39) 노중국, 1992(b), 「磨雲嶺 眞興王巡狩碑」,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신라 1·가야 편)』, 駕洛國史蹟開發 硏究員, pp.87~88의 판독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40) 「황초령비」의 대등이 기재된 부분은 일부가 마멸되었으나 「마운령비」를 통해 추독한다. 따라서 「마운령 비」와 「황초령비」의 대등은 동일하다. 이에 「황초령비」는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산비」는

에서 알 수 있듯이 대등의 관등 범위는 대일별간(대각간)에서 나마로 상당히 넓다. 이에 대등의 임명 기준을 관등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나마 이상의 신료로 보았다.<sup>41)</sup> 반면 대등의 임명 기준에 관등보다 신분(골품)이 먼저 작용했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up>42)</sup> 필자는 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마운령비」(표 4)에서 大等 及 玆 夫 知 奈 麻 와 助 人 舜 知 奈 麻 의 관등이 둘 다 나마인데 전자는 대등이고 후자는 助人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똑같은 관등임에도 대등에 임명되는 기준은 신분(골품)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非 骨 중에서도 대등에 임명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대등 집단이 진골로만 구성되었다는 견해와 육두품을 포함했다는 견해로 나뉜다. 전자는 진골 중심의 ‘貴族聯合體制’를 강조하면서 진골만 임명되는 것으로 보았다.<sup>43)</sup> 반면 후자는 아찬 이하 대등에 육두품도 임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진흥왕대 사료에서 육두품이 임명될 수 있는 최고 관등인 아찬과 진골만 임명되는 대아찬의 신분적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진평왕대에는 설계두의 사례처럼 진골과 육두품의 신분적 격차가 명확히 확인되기 때문이다.<sup>44)</sup>

하지만 진흥왕대 비문의 대등은 모두 진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561년에 건립된 「창녕비」(561)에서 대일별간이 대등에 임명되었고, 568년에 건립된 「마운령비」·「황초령비」(568)에서 非 骨 도 임명될 수 있는 대나마·나마 관등 소지자가 대등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즉, 가장 높은 대일별간이 임명된 대등에 대나마·나마도 임명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신분이 진골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Ⅲ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면 대등 집단의 구성 원리는 신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진골이었다고 파악된다. 그렇다면 대등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전술하였듯이 대등에 대해서 귀족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와 신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로 대별되고 두 견해 모두 대등이 특정 회의체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일정 범위의 집단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최근 연구 성과에서는 상대등이 회의를 주관하고 대등이 그 회의에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사료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삼국사기』에서 君 臣, 君 公, 臣 僚, 朝 臣, 國 人 등이 국가의 大 事 를 논의한 사례는 있지만 이들이 대등으로 지칭되었다고 명시한 사료는 없다.<sup>45)</sup>

이에 「적성비」에서 대중등(대등)은 ‘王敎’의 대상으로 묘사될 뿐 그들이 회의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견해<sup>46)</sup>와 「마운령비」의 대등은 진흥왕의 순수를 수행한 隨 駕 人 의 일부이므로 회의체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sup>47)</sup> 등이 제기되었다.

마멸이 심하여 해당 비문에 대등이 기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창녕비」·「마운령비」·「황초령비」에 근거하여 대등이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기백, 1974(a), 앞의 논문, pp.77) 이를 수용하면 「북한산비」 8~9행의 「…尺干, 內夫智一尺干, 沙喙男力智迺干, 南川軍主沙 … 夫智及干, 未智大奈, 沙喙 屈丁次 奈」에서 인명이 정확히 확인되는 內夫智, 男力智, 未智, 屈丁次 등은 대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內夫智는 「적성비」·「마운령비」에서, 男力智는 「적성비」·「창녕비」·「마운령비」에서, 未智는 「마운령비」·「황초령비」에서 중복된다. 따라서 「북한산비」도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41) 이문기, 1982, 앞의 논문, pp.151~152 ; 이종서, 2008, 앞의 논문, p.53

42) 하일식, 2006, 앞의 책, pp.118~.120 참조 ; 양자량, 2019(a), 앞의 논문, p.37 ; 신형석, 2001, 앞의 논문, pp.139~141 ; 후보돈, 1992(a), 앞의 논문, pp.35~37 ; 박대재, 앞의 논문, p.272

43) 이기백, 1974(a), 앞의 논문, p.86 ; 노용필, 1990, 앞의 논문, p.9

44) 후보돈, 1992(a), 앞의 논문, pp.34~36 ; 신형석, 2001, 앞의 논문, pp.140~145

45) 이재환, 2018, 앞의 논문, p.11

46) 이재환, 2018, 앞의 논문, p.11

47) 이인철, 2003, 앞의 논문, p.27

필자도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지만 비문의 내용상 대등 집단이 의결 기능을 수행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문을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비문의 서사 구조와 내용상 의결 집단인 대등과 그 이하 하급 실무 관원들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녕비」에서 “토지가 협소하여”, “이익을 취하고 산림을 제거하여”, “土地·疆·山林은...대등과 군주·당주·도사와 외촌주가 살핀다.”, “海州의 백전답과 산림·하천”<sup>48)</sup> 등의 표현을 통해 대등이 창녕 지역에 대한 통치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sup>49)</sup> 그렇다면 使大等 아래 기재된 爲人, 比子伐停助人, 書人, 村主(지방민) 등은 의결 사안에 대한 실무 집행을 담당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운령비」, 「황초령비」에서 기재된 인물들은 크게 대등 집단과 供奉과 관련된 직명 보유자들로 나누어진다. 이들이 국왕의 순수를 수행한 수가인의 일부일 뿐이라면 단순히 인명과 관등만 나열하면 될 뿐 비문에서 대등과 공봉직을 나누고, 공봉직을 다시 執駕人, 裏內從人 등으로 나누어 기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마운령비」, 「황초령비」의 대등은 그 아래 기재된 공봉직과는 다른 역할이 달랐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진흥왕의 순수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에서 7명의 대등이 순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결 및 총괄을 수행하고 대등 아래 기재된 공봉직이 순수와 관련된 실무 집행을 담당했다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적성비」에서는 王敎事 부분이 과거이며 節敎事 부분이 적성 공략 후 立碑 시점이라고 생각된다.<sup>50)</sup> (표 2) 전술하였듯이 대중등(대등)은 ‘王敎’의 대상으로만 묘사되었지만, 이들이 적성 공략 이후 왕교를 토대로 왕경에서 전공 및 지방민에게 내릴 恩典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현지에 내려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sup>51)</sup> 따라서 대중등(대등)은 현지에 내려가서 교의 전달 및 집행을 전반적으로 총괄하였을 것이고<sup>52)</sup> 幢主 아래에 기재된 勿思伐城幢主使人(지방민), 書人, 石書立人 등은 교와 관련된 실무 집행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면 비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등의 역할은 의결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문을 통해서 상대등이 귀족회의를 주관하면서 귀족 세력을 대표했고 이를 통해 왕권을 제약했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렵다.<sup>53)</sup> 따라서 비문을 통해서 대등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봉평비」 건립 이후~531년 시기에 대등이 성립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사금·마립간기와 중고기 신라 국왕의 위상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48) 地土陝也 ; 取利除林 ; 土地疆山林也. 大等与軍主幢主道使与外村主, 審. ; 海州白田畚, 与山河川 ; 판독안은 노중국, 1992(a), 앞의 논문에 따라 기재하였다.

49) 「창녕비」는 다른 「진흥왕순수비」와 달리 巡狩管境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비문의 성격은 복합적이다. 진흥왕이 창녕 지역을 순행했다는 점에서 순수비의 성격이 있으며 비문 내용상 田畚, 山林, 河川에 대한 권리와 창녕 지방의 강역을 확정하려고 한 점에서 척경비, 왕교집행비의 성격도 있다. 그리고 대등 집단이 국가 중대사를 논의했다고 보고 군신회의비로 보기도 한다. (노중국, 1992(a), 앞의 논문, p.54) ; 한편, 진흥왕이 舊 가야지역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고 낙동강 하류 서쪽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창녕에 중앙 정계의 최고 귀족들과 지방통치의 담당자인 사방군주를 회집시켜, 영토 확장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와 그 경작자 등에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규정·위배 시 처벌 규정을 공시한 교를 선포하였다는 견해 (노용필, 1996, 앞의 책, p.64) ; 국왕의 정치 경제 등 국정 현안과 대가야 정복 문제에 관한 사항을 토의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강재광, 2008, 앞의 논문, p.52)

50) 후보돈, 2002, 앞의 책, p.161

51) 양자량, 2019(b), 앞의 논문, p.76

52) 양자량, 2019(b), 앞의 논문, pp.77~78

53) 이재환, 2014, 앞의 논문, pp.112~114

이사금기에는 이사금이 사로국을 대표하고 있지만 사로국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대세력들(部主)이 전통적 위호를 이사금으로부터 부여받았다.<sup>54)</sup> 이 대세력자들은 그 아래에 중소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세력에 부속하면서 일정한 위호와 함께 그에 걸맞는 지위를 보장받는 존재였다.<sup>55)</sup> 그리고 대세력들은 하급 실무를 담당하는 가신들을 보유하고 있었다.<sup>56)</sup> 그리고 524년까지도 여전히 干支가 독자성을 가지고 전통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이에 520년대까지는 신라 국왕이 각 부의 대세력들이 가진 중소세력과 干支가 거느린 가신들을 통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530년대에는 干支가 경위제와 신분제에 편입되고 국왕이 부를 초월하는 위치로 올라갔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국왕이 干支에게 부속된 중소세력과 가신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上大 등이 上臣, 仕大 등이 仕臣이라고 표현되었으므로<sup>57)</sup> 대등이 臣<sup>58)</sup>으로 의역될 수 있다는 견해가 주목되는데,<sup>59)</sup> 고대 중국에서 군신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춘추좌씨전』에는 “신하가 두 마음(二心)을 품지 않는 것은 하늘이 정한 제도이다.”<sup>60)</sup>라는 구절과 “策에 이름을 올리고 몸을 바쳤다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죄이다. (註: 신하의 策에 이름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임금을 섬겼으면 곧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다.)”<sup>61)</sup>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貳라고 표현하였는데, 貳는 신하가 된 자에겐 있을 수 없는 행위였고 不貳는 君臣 사이를 규율하는 도의적(道義的) 관념이었다.<sup>62)</sup> 물론 춘추시대의 臣은 貳를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sup>63)</sup> 臣이 된 자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不貳)는 기본적인 전제는 실제로 지켜지지 않더라도 도의적 관념으로서 예질서와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춘추전국시대 권력가-사상가에 의해 합리화되었다.<sup>64)</sup> 따라서 臣은 도의적 관념으로서 君 아래에 편제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력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대등은 부체제가 해체되고 국왕의 지위가 격상되는 가운데 국왕과 진골로 편입된 6부의 유력자들 사이의 군신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었음을 나타낸 것이고, 이들을 대등에 임명한 이유는 이들을 국왕 아래 신하로 편제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관등의 사여가 곧 왕과 군신 관계를 맺는 것을 상징한다는 점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다.<sup>65)</sup>

54) 하일식, 2006, 앞의 책, p.53)

55) 하일식, 2006, 앞의 책, pp.45~90.

56) 하일식, 2006, 앞의 책, pp.78~87

57) 仕臣(或云仕大等)五人. 眞興王二十五年始置. (『삼국사기』 권40 잡지9 외관) ; 上大等(或云上臣)., 法興王十八年始置.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상))

58) 臣은 고대 중국에서 노예를 지칭하는 臣妾에서 기원하였다고 생각되는데 臣은 남자 노예를 뜻하고 妾은 여자 노예를 뜻한다. (宮崎市定, 1993, 「古代史」, 『宮崎市定全集』1, 岩波書店, pp.93~94) ; 『설문해자』에 따르면 臣은 “임금을 모시다 또는 섬기다(事君)”이라는 뜻이다. (臣 : 牽也. 事君也. 象屈服之形.) 갑골문에서 臣은 항복했거나 포로로 잡힌 남자 노예 또는 노예를 감독하는 노예의 우두머리를 지칭하였는데 이로부터 臣에 신하의 뜻이 담겼으며 임금에게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호칭으로 쓰였다고 생각한다. (허신, (하영삼 譯), 2022, 『완역 설문해자』1, 도서출판3, p.848)

59) 이기백, 1974(a), 앞의 논문, p.71

60) 臣無二心 天之制也 (『춘추좌씨전』 魯莊公 14년 辛丑)

61) 策名委質 貳乃辟也 (註 : 名書於所臣之策 屈膝而君事之 則不可以貳 辟罪也 附注 : 朱曰質形體也 言委身體而君事之) (『춘추좌씨전』 魯僖公 23년, 甲申)

62) 小倉芳彦, 1970,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青木書店, pp.278~281

63) 小倉芳彦, 1970, 앞의 책, pp.274~276

64) 小倉芳彦, 1970, 앞의 책, pp.280~281

65)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p.154

그런데 군신관계의 설정과 대등의 신분이 진골이었다는 점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진골은 혈통에 의해서 뿐 이외 집단과 격절되는 특권과 의무가 제도적으로 규정된 신분으로 정치적 영역에서 제도화된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sup>66)</sup> 이에 진골들의 정체성은 신하로서 왕의 휘하에서 국정 운영을 돕는데 있었다고 생각된다.<sup>67)</sup> 따라서 대등의 성격은 진골로서 하급 신료들과 구분되는 상층 신료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대등의 의의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6부의 유력자의 역할과 대등의 역할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냉수리비」, 「봉평비」에서 알 수 있듯이 520년대까지는 왕과 6부의 유력자로 구성된 의결 집단이 공론하고 지방에 실무집단(典事人, 處事大人)을 파견하여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sup>68)</sup>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냉수리비」, 「봉평비」에서는 6부의 유력자가 의결 이외 다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는 병부와 동시전을 제외하면 관서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6부의 유력자는 공론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 업무는 하급 실무자 조직을 통해 처리되는 방식이었다. 반면 진흥왕대에는 대등이 敎의 주체인 국왕(眞興太王) 아래 편제된 가운데 의결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후술하듯이 중앙 관서의 관직과 某大等 관직에 임명되거나 관직에 임명되지 않는 것이라도 소지한 관등에 따라 특정 직무 부여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대등의 의의는 신라에서 관료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초기 단계의 중앙 관서 및 관직 체계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Ⅲ. 진흥왕대 대등의 역할과 운영 방식

#### 1. 대등 집단의 구성원과 중앙·지방관직 임명

대등을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대등(대중등)은 「적성비」에서는 왕경에서 왕의 ‘敎’를 받들어 적성 지역에 내려가 교의 전달 및 집행을 총괄하였고 「창녕비」에서는 창녕 지역의 통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마운령비」에서는 진흥왕의 순수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료가 주목된다.

B. 土地, 疆, 山林은 大等과 軍主·幢主·道使와 外村主는 살핀다.<sup>69)</sup> (「창녕비」)

66) 이재환, 2014, 앞의 논문, p.22 ; 4등관제(令-卿-大舍-史)가 정비된 진덕여왕대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관서의 장관인 승에는 진골만 임명될 수 있었다. 진골이 정치적 영역에서 특권과 의무 보장받았다는 점은 진흥왕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정 업무를 수행한 대등도 모두 진골만 임명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등을 다 진골로 볼 수 있다는 점은 Ⅲ장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67) 중대의 상황이긴 하지만 무열왕 이후에도 진골 중에서 왕의 가까운 친속이나 왕과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진골들의 정체성은 신하로서 왕의 휘하에서 국정 운영을 돕는 관인이라는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왕의 至親들도 직접 왕위에 오르거나 태자로 책봉되어 동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관등과 관직을 가지고 관계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진골들과 차이가 없었다고 파악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무왕은 무열왕 원년(654) 태자로 책봉되기 이전에 파진찬으로서 병부령을 수행하였다. (이재환, 2014, 앞의 논문, pp.103~104) ; 신하로서 국왕의 국정 운영을 돕는 진골의 정체성은 진흥왕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창녕비」, 「마운령비」에서 진골만 임명된 대등이 중대사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후술하듯이 중앙 관직에 임명되는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68) 「냉수리비」에서는 沙喙 至都盧葛文王(지증왕)을 비롯한 7王等(6부의 유력자들)이 왕경에서 공론하고 실무 집단인 典事人을 현지에 파견하고, 「봉평비」에서는 喙部 牟卽智寐錦王(법흥왕)을 비롯한 6부의 유력자들이 왕경에서 공론한 후 실무 집단인 處事大人을 현지에 파견한다.

사료 B에서 대등은 군주·당주·도사 등 지방관과 명확히 구분되었다. 이는 대등을 지방관과 다른 중앙관임을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sup>70)</sup> 따라서 진흥왕대 비문은 지방에서 국가 중대사가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필요한 대등과 하급 실무 관원이 중앙에서 차출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71)</sup>

그렇다면 비문마다 대등의 인원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비문의 위치가 주목된다. 창녕은 왕경과 가까운 반면 단양·마운령·황초령은 창녕에 비해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 따라서 단양·마운령·황초령에는 일부 대등만 차출되고 창녕에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등이 차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비문마다 인원수가 다른 대등 집단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창녕비」에서 대등 집단과 동시에 𪚩𪚩等(이하 某大等A), 𪚩大等(이하 某大等B), 軍主, 使大 등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적성비」·「창녕비」 기재 인물의 관등 및 직임 정리표

기준 비문	인명과 관등	관등 변화	대등으로 기재O	확인된 관직	분류 범주
「적성비」	①伊史夫智 伊干𪚩(2)	이찬(2)	대중등	병부령	병부령(541)
「적성비」	②內禮夫智 <sup>72)</sup> 大阿干支(5)	대아찬(5)→파진찬(4)→이찬(2)	대중등(*대아찬), 대등(*이찬)	장군(*파진찬)	장군(551)
「적성비」	③西夫叱智 <sup>73)</sup> 大阿干支(5)	대아찬(5)→파진찬(4)	대중등(*대아찬)	장군(*파진찬)	
「창녕비」	④屈珎智 <sup>74)</sup> 大一伐干	대각간(대일별간)	대등(*대각간)	장군(*대각간)	
「적성비」	⑤武力智 阿干支(6)	아찬(6)→잡찬(3)	대등(*잡찬)	고두림성재군주(*아찬)	고두림성재군주
「적성비」	⑥比次夫智 阿干支(6)	아찬(6)→대아찬(5)		고두림성재군주(*아찬), 장군(*대아찬)	
「창녕비」	⑦福登智 沙尺干(8)	사찬(8)→대아찬(5)	대등(*대아찬)	비리성군주(*사찬)	사방군주
「창녕비」	⑧竹夫智 沙尺干(8)	사찬(8)		한성군주	
「창녕비」	⑨心麥夫智 及尺干(9)	급찬(9)		감문군주	
「창녕비」	⑩登𪚩𪚩智 沙尺干(8)	사찬(8)		비자별군주	
「적성비」	⑪漕設智 及干支(9)	급찬(9)→사찬(8)	대등(*사찬)	추문촌당주(*급찬)	당주
「적성비」	⑫助黑夫智 及干支(9)	급찬(9)		물사별성당주	
「창녕비」	⑬居七夫智 一尺干(2)	대아찬(5)→파진찬(4)→이찬(2)	대등(*이찬)	某大等A(*이찬)	某大等A
「창녕비」	⑭𪚩𪚩夫智 一尺干(2)	이찬(2)		某大等A	
「창녕비」	⑮甘力智	𪚩𪚩干		某大等A	

69) 土地疆𪚩山林𪚩𪚩𪚩𪚩也. 大等与軍主幢主道使与外村主, 審𪚩

70) 전덕재, 2002, 「新羅 소경의 설치와 그 기능」, 『진단학보』93, 진단학회, p.48

71) 대등 집단이 고정적이었던 것을 부정하고 특정 사안을 관리 감독 하기 위해 왕에 의해 차출된 임시적 집단으로 보기도 한다. (양자량, 2019(a), 앞의 논문 ; 양자량, 2019(b), 앞의 논문

	㉞尺干				
「창녕비」	⑯末得智 ㉞尺干	㉞尺干		某大等B	某大等B
「창녕비」	⑰七聰智 及干支(9)	급찬(9)		某大等B	
「창녕비」	⑱宿欣智 及干支(9)	급찬(9)		상주행사대등	使大等
「창녕비」	⑲次叱智 奈麻(11)	나마(11)		하주행사대등	
「창녕비」	㉑春夫智 大奈麻(10)	대나마(10)→아찬(6)		하주행사대등 (*대나마)	
「창녕비」	㉒就舜智 大舍(12)	대사(12)		하주행사대등	
「창녕비」	㉓北尸智 大奈麻(10)	대나마(10)		우추실㉞서아군 사대등	
「창녕비」	㉔須仝夫智 奈麻(11)	나마(11)		우추실㉞서아군 사대등	

표 5는 『삼국사기』를 참고하여 「적성비」, 「창녕비」, 「마운령비」에 기재된 인물들이 보유한 관등과 직임을 진흥왕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하 표 5의 인물 번호 참조)

기존 연구에서는 이 인물들의 관등 승진에 주목하여 군주·당주, 장군, 某大等 등을 거쳐 전공, 실무 경험 등을 쌓고 대등으로 승진한다고 보았다.<sup>75)</sup>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대등이면서 동시에 군주·당주, 장군, 某大等に 임명되었다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sup>76)</sup>

「적성비」의 ⑤高頭林城在軍主 武力智 阿干支(6), ⑩鄒文村幢主 嚮設智 及干支(9)는 「창녕비」에서 각각 迺干(3)과 沙尺干(8)을 가진 대등이다.<sup>77)</sup> 이를 高頭林城在軍主, 鄒文村幢主에서 대등으로 승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창녕비」 단계에서 이미 대등인 동시에 지방에서 군주·당주의 직임을 수행했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창녕비」에서 관등이 가장 낮게 기재된 대등이 及尺干(9)이므로 이들의 관등이 승진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적성비」 단계부터 대등인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78)</sup> 따라서 같은 직임을 가진 ⑥高頭林城在軍主 比次夫智 阿干支(6)<sup>79)</sup>와 ⑫勿思伐城幢主 助黑

72) 「적성비」의 內禮夫智 大阿干支(5)는 551년 고구려를 공격한 八將軍 중 하나인 奴夫 波珍滄, 「마운령비」(568)에서 대등인 內夫智 伊干(2), 진평왕대 상대등인 伊滄 弩里夫와 동일 인물로 생각된다. (이문기, 1982, 앞의 논문, p.166 ; 이기백, 1996, 앞의 논문, p.237 ; 武田幸男, 2020, 앞의 논문, p.259 ; 노용필, 1996, 앞의 책, p.88)

73) 「적성비」의 西夫叱智 大阿干(5)는 551년 고구려를 공격한 八將軍 중 하나인 西力夫 波珍滄으로 생각된다. (정구복 외 4명, 2012, 『여주 삼국사기 4(주석편 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708)

74) 「창녕비」의 屈珥智 大一伐干은 고구려를 공격한 八將軍 중 하나인 仇珍 大角滄과 동일 인물로 생각된다. (노중국, 1992(a), 앞의 논문, p.62)

75) 강재광, 2008, 앞의 논문, p.52 ; 노용필은 승진을 거쳐 대등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이미 대등인 상태에서 某大等일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노용필, 1996, 앞의 책, pp.96~97)

76) 이문기, 1982, 앞의 논문 ; 노용필, 1996, 앞의 책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77) 「적성비」의 嚮設智 及干支(9)와 「창녕비」의 都設智 沙尺干(8)은 동일 인물로 생각된다. (주보돈, 1992(b), 앞의 논문, p.37) ;

78) 武力智 阿干支(6)를 대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양자량, 2019(a), 앞의 논문, p.37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79) 比次夫智 阿干支(6)는 551년 고구려를 공격한 八將軍 중 하나인 比次夫 大阿滄(5)과 동일 인물로 생각된다. (정구복 외 4명, 2012, 앞의 책, pp.707~708) 표에서는 「적성비」를 기준으로 高頭林城在軍主으로 분류하였다.

夫智 及干支(9)도 及干支(9) 이상이므로 중앙에서는 대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창녕비」의 ⑦碑利城軍主 福登智 沙尺干(8)은 「마운령비」에서 大阿干(5)을 가진 대등이다.<sup>80)</sup> 이를 碑利城軍主에서 대등으로 승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창녕비」에서 관등이 가장 낮게 기재된 대등이 及尺干(9)이므로 관등이 승진하지 않았더라도 「창녕비」 단계에서 이미 대등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같은 직임을 가진 다른 사방군주(⑧~⑩) 또한 모두 及尺干(9) 이상이므로 중앙에서는 대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적성비」·「창녕비」에서 이들이 대등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立碑 당시 지방에서 군주·당주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창녕비」에서 대등은 지방에 상주하는 지방관과 다른 중앙관임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방으로 파견되기 이전 중앙에 있을 때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중앙으로 돌아왔을 때 역시 대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⑬居七夫智(거칠부) 역시 某大等A를 거쳐 대등으로 승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대등이면서 某大等A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①伊史夫智(이사부)가 병부령(중앙관직)이면서 동시에 대중등(대등)인 것처럼<sup>81)</sup> 居七夫智(거칠부)도 568년에 여전히 某大等A(중앙관직)를 맡고 있으면서 대등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82)</sup> 이는 전술한 것처럼 상대등도 대등 중에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다.<sup>83)</sup> 따라서 같은 某大等 관직<sup>84)</sup>인 某大等B(⑭,⑮)와 使大等(⑯~㉓)<sup>85)</sup>은 某大等A(⑬~⑰)처럼 대등 중에서 임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비문에서 군주·당주, 某大等A·某大等B·使大等 등에 임명된 인물들을 모두 대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창녕비」의 대등 36명(사방군주·某大等 포함)를 기준으로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여 「적성비」 7명(군주·당주 포함)<sup>86)</sup>, 「마운령비」 3명<sup>87)</sup>을 더하면 진흥왕대 비문에

80) 「창녕비」의 福登智 沙尺干(8)과 「마운령비」의 服冬智 大阿干(5)은 동일 인물로 생각된다. (노중국, 1992(a), 앞의 논문, p.64)

81) 이사부가 562년 대가야를 정벌하였으므로 541년 병부령에 임명되어 적어도 562까지는 병부령에 재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문기, 1997, 『新羅兵制史研究』, 일조각, p.292 ; 이문기, 1982, 앞의 논문, p.163 ; 주보돈, 2002, 앞의 책, pp.176~177) 따라서 이사부는 병부령이면서 동시에 대중등(대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문기, 1982, 앞의 논문, p.163 ; 노용필, 1996, 앞의 책, p.94)

82) 이문기, 1982, 앞의 논문, p.165

83) 다만, 상대등은 법흥왕 21년(534년) 이전 철부가 사망한 이후부터 진지왕 원년(576) 거칠부가 상대등에 임명되기까지 공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23년(529) 4월조에서 이사부가 上臣 伊叱夫禮智干岐로 기록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사부가 진흥왕대 상대등에 임명된 사실이 이 기사에 부회되었다고 보고 이사부가 병부령과 상대등을 겸직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전덕재, 2014, 「異斯夫의 家系와 政治的位相」, 『사학연구』115, 한국사학회, pp.31~32 ; 신형식, 1984,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pp.154~155) 이 견해에 따라 이사부를 상대등으로 보고자 한다.

84) 某大等 관직의 등장은 중고기 신라의 정복 활동 및 영토확장과 무관하지 않다. 신라는 532년 금관가야 정복, 550년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함경남도 방면 북진, 562년 대가야 정복 등 활발히 정복 활동을 수행하였다. 영토 확장과 더불어 553년 신주, 556년 비열홀주(안변) 등을 설치하는 등 지방제도도 한층 더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중대사 및 기타 행정 업무가 증가했을 것이고 중앙에 보고되면 중앙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무가 증대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진흥왕대는 아직 중앙 관서·관직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등에게 특정 직임을 부여하여 설치한 중앙 관직이 某大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85) 使大等을 중앙에서 州에 파견된 감찰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수훈, 1988, 「新羅 中古期 州의 構造와 性格」, 『부대사학』12, 부산대학교 사학회) ; 더 나아가 州·郡의 감찰뿐만 아니라, 민생 안정, 국왕-지방관 사이의 연락, 使者, 지방관 업무 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 (강재광, 2008, 앞의 논문) ; 이는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86) 「적성비」에서 대등은 대중등(대등) 5명, 高頭林城在軍主 2명, 鄒文村幢主 1명, 勿思伐城幢主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창녕비」에서 중복되는 男力智와 都設智를 제외해야 하므로 7명으로 계산

서 총 46명의 대등을 추출할 수 있다. (아래 표 6)

표 6. 진흥왕대 비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등 집단의 구성원 (\*회색 칸은 중복된 인원으로 계산에서 제외)

「적성비」(550)			「창녕비」(561)			「마운령비」(568)	
인명	관등	비고	인명	관등	비고	인명	관등
伊史夫智	伊干(2)		葛文王 智	葛文王		居礼夫智 (居七夫智)	伊干(2)
豆弥智	彼珣干支(4)		屈珣智	大一伐干(大角干)		内夫智 (内礼夫智)	伊干(2)
西夫叱智	大阿干(5)		折夫智	一伐干(1)		另力智 (武力智)	迺干(3)
内礼夫智 (内夫智)	大阿干支(5)		折夫智	一尺干(2)		服冬智 (福登智)	大阿干(5)
比次夫智 (比次夫)	阿干支(6)	高頭林城在軍主	另力智 (武力智)	迺干(3)		比知夫知	及干(9)
武力智 (另力智)	阿干支(6)	高頭林城在軍主	小里夫智	迺干(3)		及珣夫知	奈末(11)
善設智 (都設智)	及干支(9)	鄒文村幢主	都設智	沙尺干(8)			
助黑夫智	及干支(9)	勿思伐城幢主	伐夫智	一吉干(7)			
			忽利智	一			
			珣利 次公	沙尺干(8)			
			余亡智	沙尺(8)			
			所述智	沙尺干(8)			
			比叶 智	沙尺干(8)			
			末 智	及尺干(9)			
			刀下智	及尺干(9)			
			鳳安智	及尺干(9)			
			居七夫智	一尺干(2)	某大等A		
			甘力智	一尺干(2)	某大等A		
			末得智	沙尺干(8)	某大等A		
			七聰智	沙尺干(8)	某大等B		
			登 智	及尺干(9)	某大等B		
				沙尺干(8)	比子伐軍主		

하였다.

87) 「마운령비」의 대등은 7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적성비」, 「창녕비」에서 중복되는 居礼夫智, 另力智, 服冬智(福登智), 内夫智(内礼夫智)를 제외해야 하므로 3명으로 계산하였다.

	竹夫智	沙尺干(8)	漢城軍主	
	福登智	沙尺干(8)	碑利城軍主	
	心麥夫智	及尺干(9)	甘文軍主	
	宿欣智	及尺干(9)	上州行使大等	
	次叱智	奈末(11)	上州行使大等	
	春夫智	大奈末(10)	下州行使大等	
	就舜智	大舍(12)	下州行使大等	
	北尸智	大奈末(10)	于抽悉西 阿郡使大等	
	須仃夫智	奈(11)	于抽悉西 阿郡使大等	
계 7명	계 36명			계 3명

II장에서 필자는 대일별간도 임명된 대등에 대나마·나마도 임명된 이유는 이들이 진골이었기 때문이며, 이에 근거하여 진흥왕대 비문의 대등을 모두 진골로 보았다. 이들의 신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문에서 같은 직임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동일 신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 표 5 인물 번호 참조)

이와 관련하여 「적성비」의 高頭林城在軍主인 ⑤武力智와 ⑥比次夫智가 같은 직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같은 진골 신분임이 확인된다. 그리고 「창녕비」의 某大等A의 경우 ⑮甘力智 西干의 관등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머지 2명(⑬居七夫智·⑭西夫智)이 모두 一尺干(2)이라는 점에서 그 역시 진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두 사례를 보았을 때 「적성비」, 「창녕비」에서는 같은 직임에 임명된 경우 그 인물들은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창녕비」의 ⑳下州行使大等 春夫智 大奈末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561년 춘부는 대나마이지만 565년 아찬으로 승진하고 (국원)소경의 장관인 仕大等に 임명되었다.<sup>88)</sup> 물론 춘부의 관등만 보았을 때 그가 진골임을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춘부 이후 仕大等に 임명된 인물이 모두 진골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북소경의 장관(仕大等) 사찬 진주(639), 북원소경의 장관(仕大等) 대아찬 오기(669), 서원소경의 장관(仕大等) 아찬 원태(685), 중원대운(중원경 仕大等) 김양(828), 남원태수(태수는 仕大等の 오기) 김흔 등은 『삼국사기』에서 모두 진골임이 확인된다.<sup>89)</sup> 따라서 춘부도 역시 진골이었다고 추정된다. 더욱이 춘부가 4년 만에 대나마에서 아찬으로 4단계나 승진했다는 점도 그가 진골이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춘부와 같은 직임을 가진 나머지 使大等 5명(⑱·⑲·㉑·㉒·㉓)도 모두 진골로 추정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마운령비」의 非干 대등 2명도 진골로 볼 수 있으므로 비문에 나타난 非干 대등 8명(使大等 6명과 「마운령비」 대등 2명)을 모두 진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급찬~아찬 대등도 모두 진골로 볼 수 있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급찬~아찬 대등 중

88) 「창녕비」의 春夫智 大奈末(10)과 564년 국원소경의 仕大等に 임명된 阿滄(6) 春賦는 동일 인물로 생각된다. (노중국, 1992(a), 앞의 논문, p.65)

89) 沙滄 眞珠는 무열왕 6년(659) 8월 병부령에 임명되었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6년 8월) ; 阿滄 元泰는 성덕왕 3년(704) 관등이 소판(3)임이 확인된다.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3년 5월) ; 金陽은 무열왕의 9세손이며 증조할아버지는 伊滄 金周元, 할아버지는 蘇判 金宗基, 아버지는 波珍滄 金眞茹인데 모두 세력이 있는 가문(世家)으로 장군·재상(將相)이 되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양전) ; 金昕은 金陽의 사촌 형으로 伊滄(2)에 임명되었음이 확인된다.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양전 부록)

진골임이 확인되는 인물은 ⑤武力智 阿干支(6), ⑥比次夫智 阿干支(6), ⑦福登智 沙尺干(8) 등이다. 이중 ⑦福登智(「마운령비」 服冬智 大阿干[5])는 「창녕비」에서 碑利城軍主이므로 같은 직임을 가진 다른 「창녕비」 사방군주 ⑧竹夫智 沙尺干(8), ⑨心麥夫智 及尺干(9), ⑩登智 沙尺干(8)도 모두 진골로 추정된다.

물론 비문에 기재된 급찬~아찬 대등이 모두 대아찬 이상으로 승진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非干 대등을 모두 진골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보다 관등이 높은 나머지 급찬~아찬 대등도 역시 모두 진골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진흥왕대 비문의 대등은 모두 진골이었다고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확인된 46명의 인원수가 대등 집단의 전체 구성원 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 대등 집단은 진골이면서 경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등 집단의 전체 구성원 수는 당시 경위를 지닌 진골 수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산비」의 대등 인원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대등 집단 전체 구성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신라의 전 시기 동안 경위를 지닌 진골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무왕대 사료지만 경위를 지닌 진골 수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 사료가 있다.

C. 말목장을 나누어주었는데 무릇 174곳이었다. 所內 22곳, 官에 10곳을 속하게 하고 유신 태대각간에게 6곳, 인문 대각간에게 5곳, 각간 7인에게 각각 3곳, 이찬 5인에게 각 2곳, 소판(잡찬) 4인에게 각 2곳, 파진찬 6인·대아찬 12인에게 각각 1곳, 이하 74곳은 마땅함에 따라 사여하였다.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9년)

사료 C에 따르면 문무왕 9년(669) 경위를 지닌 진골은 대아찬 이상이 36명이다. 당시에도 아찬 이하이면서 진골도 있었을 것이므로 경위를 지닌 진골 수를  $36+\alpha$ 명으로 파악하면 진흥왕대 대등 수 46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두 시기는 시간적 격차가 크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진골 여성은 경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외된다. 그리고 진골 남성과 진골 여성이 혼인할 경우 그 자제는 진골 신분이 유지되지만, 진골 남성과 6두품 여성이 혼인할 경우 그 자제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6두품에 편제되었다.<sup>90)</sup> 따라서 진골 남성과 비진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제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므로 제외된다. 그리고 진골 남성과 진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제라고 해도, 태어나자마자 경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진골 자제 중에서 나이가 어려 아직 경위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진흥왕대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진골의 인원수가 증가한다고 전제하더라도 경위를 지닌 진골 수는 어느 정도 한정된 인원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무왕대는 진흥왕대 경위를 지닌 진골(대등)보다 대아찬 이상 소지자가 훨씬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무열왕·문무왕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공을 통해 관등이 승진된 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sup>91)</sup> 따라서 두 시기의 경위를 지닌 진골 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에는 큰

90) 김유신의 자제 중에서 5명의 아들은 무열왕의 딸 지소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서자 군승의 어머니는 성씨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다른 자제와 달리 군승은 아찬(6)까지 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신문왕대 김유신의 장남인 삼광이 집정하여 인사를 전형한 시기에 이복 동생인 군승이 대아찬(5)으로 승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찬(6)까지 밖에 오르지 못했던 것은 그의 신분이 6두품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6부의 성은 설씨를 제외하고 통일기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당시 6두품은 보편적으로 성씨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군승의 어머니의 신분은 6두품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진골 남자와 비진골 여자 사이에 태어난 자제들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전덕재, 2013, 「新羅 下代 得難 신분의 擡頭와 傭品制의 變化」, 『신라문화』4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324~325 ; 이재환, 2014, 앞의 논문, pp.47~48)

91) 대표적인 예로 668년 고구려 정벌 후 이찬과 장군은 모두 각간으로 올려주고 소판(잡찬) 이하는 모두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추출된 46명의 대등은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당시 대등 집단 전체 구성원 수에 근접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략 46+α명으로 구성된 대등 집단은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이와 관련하여 지방 관직 이외 중앙 관직에도 대등이 임명되었다는 견해가 주목된다.<sup>92)</sup> 후술하겠지만 진흥왕대 중앙 관서의 관직은 병부령 2명, 전대등 2명, 사정부경 2명과 史만 설치되었다. (아래 표 참고)

표 8. 眞興王代 중앙관서와 관원 현황(\*[ ]는 추정)<sup>93)</sup>

관서	관원 양상(인원수)	관원수	관직의 相當位	설치 연대
上大等(관직)	上大等(1)	1	[伊滄 異斯夫]	법흥왕 18년(531)
兵部	兵部令(2)-[史(12)]	14	令(大阿滄~太大角干)	법흥왕 4년(518)
			史(先沮知~大舍)	진흥왕 5년(544) 수 1인 증치
稟主	典大等(2)-[史(14)]	16	典大等(奈麻~阿滄)	미상
			史(先沮知~大舍)	
司正府	卿(2)-[史(10)]	12	卿(級滄~阿滄)	진흥왕 5년(544)
			史(先沮知~大舍)	

이사부는 병부령이면서 동시에 대중등(대등)이므로 다른 1명의 병부령도 대등 중에서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칠부가 某大等A임과 동시에 대등인 것처럼 같은 某大等 관직인 전대등도 대등 중에서 임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정부경도 마찬가지로 병부령과 전대등처럼 대등 중에서 임명되었다고 생각된다.<sup>94)</sup> 그러나 모든 대등이 관직에 임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표 5을 기준으로 군주·당주, 某大等A·某大等B·使大等 등 관직에 임명된 대등은 20명이 확인된다.<sup>95)</sup> 따라서 46+α명 중 20명의 인원이 관직에 임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등 집단 내부에서 나름대로 초기 단계의 직임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나머지는 관직에 임명되지 않고 관등만 소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대등의 역할

앞 절에서 대등 집단의 구성원 중 일부는 중앙 및 지방관직 임명되었지만 나머지는 아직 관직에 임명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다. 관직에 임명되지 않고 관등만 소지한 대등은 직임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

등급씩 올려주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

92) 신형석, 2001, 앞의 논문, pp.131~134 ; 신형석, 2002, 앞의 논문, p.87

93) 이 표는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상)을 기준으로 진흥왕대 중앙 관서와 관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병부, 사정부, 품주의 史는 정확한 설치 시기가 나타나지 않지만 문무왕대 史의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 설치되었음은 확실하다. 이 관서들이 설치되었을 때 장관 혼자서 관서의 업무 모든 것을 담당했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병부의 史는 법흥왕 4년(518) 병부가 설치되었을 때 두어지고 품주의 史는 전대등이 설치된 진흥왕 26년(565), 사정부의 史는 卿이 설치된 진흥왕 5년(544)에 두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김희만, 2009, 「新羅 官職體系의 樣相과 그 性格」, 『경주사학』29, 경주사학회 ; 이인철, 1993, 앞의 책 참조) ; 동시전은 지증왕대 설치되었으나 관원의 설치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동시전에 관한 연구는 정덕기, 2021, 『신라 상·중대 중앙행정제도 발달사』, 혜안, pp.62~73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94) 이문기, 1982, 앞의 논문, pp.166~167 참고

95) 6~7세기 전쟁이 발생했을 때 왕경에서 출정한 지휘관은 전쟁 종료 후 귀환해 국왕에게 복명하였는데, 이때 위임되었던 권한을 반환하면서 장군의 직무도 종료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장군은 제외하였다. (최상기, 2015, 「6~7세기 신라 장군(將軍)의 역할과 운용」, 『역사와 현실』97, 한국역사연구회, pp.74~84)

이와 관련하여 후술하겠지만 「마운령비」에서 6세기 신라 지배층들이 관등을 爵으로 표현하였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찬자가 삼국의 관등을 (官)爵, 位, 職 등으로 표현한 점이 주목된다. 이중 位의 용례는 그 자체로 등급·서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sup>96)</sup> 職으로도 표현된 것처럼 삼국의 관등과 관직이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sup>97)</sup> 따라서 관등이 왜 爵과 職으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본 후 관등만 소지한 대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주·춘추시대 작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爵은 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후들이 周의 천자 앞에 모였을 때 술잔(酒盞)을 돌리는 순서가 정해진 것에서 기원하였는데 제후들의 爵은 公·侯·伯·子·男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제후들은 자신의 國 내부에서 인민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친척, 집안을 대대로 섬겨온 신하(譜代), 토지의 유력자 등을 모아 관료진(官僚陳)을 구성하였고 이들에게 봉사의 대가로 영토와 인민의 일부를 사여하거나 곡물을 지급하였다. 이를 祿(祿)이라 하는데 관료의 지위의 상하를 나타내었다. 祿에 따라 관료진은 卿·大夫·士의 3계급으로 구분되었는데<sup>98)</sup> 이를 내작(內爵)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5등작을 가진 제후는 卿·大夫·士라는 내작을 지닌 자를 거느리고 자신의 國을 자치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주·춘추시대의 봉건 질서와 작제가 고구려와 신라의 부체제 및 관등제와 외형상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sup>99)</sup> 3세기 중엽 고구려에서는 계루부 왕권이 각 나부(那部)를 통제하였지만 각 나부의 지배 세력은 독자적 관원 조직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행사하였다. 『삼국지』 고구려전의 패자는 나부의 최고위 지배 세력인 중심 나국(那國) 세력에게 수여된 관등으로 생각되는데, 계루부 왕권의 통제를 받으며 각 나부의 군사력을 통솔하였다고 파악된다.<sup>100)</sup> 한편, 계루부의 대가(大加)들은 독자적으로 사자·조의·선인을 두고 그 명단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계루부의 대가뿐만 아니라 각 나부의 중심 나국 세력(패자)도 나부 내부의 다른 세력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사자·조의·선인을 두었다고 생각된다.<sup>101)</sup>

전술하였듯이 신라도 이사금기에 사로국을 구성한 각 부에는 대세력인 부주(部主)가 있고 부주 아래 지배층에 속하는 자들이 서열화되어 고유한 위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부주는 하급 실무를 담당하는 가신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배체제가 서주·춘추 시대 작제와 외형상으로 유사하였기 때문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찬자가 삼국의 관등을 爵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sup>102)</sup>

한편, 전술하였듯이 6세기 신라의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관등을 爵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D-1. “만약 충성과 신의가 있어 정성을 다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위태로움을 살피고, 용감하게 맞서며 강하게 싸우며,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하여 ②功이 있는 무리에게는 가히 賞으로 爵과 物을 더하여 공로를 표창하고자 한다.”<sup>103)</sup> (「마운령비」)

96) 하일식, 2006, 앞의 책, p.123

97) 노태돈, 1999, 앞의 책, p.149 ; 하일식, 2006, 앞의 책 등

98) 宮崎市定, 1992, 「中國官制の發達-古代より唐に至る-」, 『宮崎市定全集』7, 岩波書店, pp.213~214

99) 하일식, 2006, 앞의 책, pp.123~135

100)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pp.209~211

101) 여호규, 2014, 앞의 책, pp.216~218

102) 하일식, 2006, 앞의 책, pp.123~135

103) 如有忠信精誠, 才超察厲, 勇敵強戰, 爲國盡節, ②有功之徒, 可加賞爵以章勳効 ; ㉠은 「황초령비」에 의 해 物로 복원된다.

D-2. 문무왕 원년(661) 당 황제가 소정방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을 포위했다. 함자도총관 유덕민이 (신라) 국왕에게 황제의 말씀을 전달하여 평양에 군사 물자를 보내게 하였다. 왕이 대각간 김유신에게 명하여, 米 4000석과 租 22250석을 보내게 하였다. 獐塞에 이르렀는데, 눈바람이 불고 매우 추워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중략) 편지를 보내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때 열기가 步騎監으로써 보좌하였는데 (중략) 마침내 軍師 구근 등 15명과 함께 활과 칼을 가지고 말을 달렸다. (중략) 유신이 그 용기를 가상히 여겨 급찬의 位를 주었다. 군사가 돌아옴에 이르러, 유신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열기와 구근은 천하의 용사입니다. 臣이 편 의로써 급찬의 位를 허락하였는데 공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원컨대 사찬의 位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사찬의 秩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유신이 두 번 절하고 말하기를 “①爵과 祿은 공 유물(公器)이라 하는데, 功에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爵祿公器, 所以酬功, 何謂過乎). 어찌 과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허락하였다. (『삼국사기』 권47 열전7 열기전)

사료 D-1에서 功이 있는 무리들에게 상으로 爵과 物을 더하여 공로를 표창한다고 하였다. 『황초령비』에 기재된 爵은 관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황초령비』가 건립될 무렵에는 이미 왕 아래로 일원화된 경위가 성립되고, 6부가 단위정치체에서 행정구역으로 변화한 이후였다. 그럼에도 6세기 신라의 지배층이 자국의 관등을 爵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이사금기 지배체제의 전통과 서주·춘추시대의 爵이 외형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sup>104)</sup>

사료 D-2에서 열기가 소정방에게 편지를 전달한 공으로 김유신이 사찬을 주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爵과 祿을 공유물이라 하는 이유가 공에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표현(①)이다. 이는 D-1의 ②와 대응된다. 실제로 김유신이 열기의 공을 표창하기 위해서 사찬을 주었으므로 ②의 爵으로 공로를 표창한다는 것은 결국 관등을 수여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物은 緣에 대응하는데, D-2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진흥왕대 사다함이 이사부를 도와 가야를 정벌한 공으로 진흥왕이 좋은 땅(良田)과 사로잡은 生口를 포상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物은 토지·生口 등의 물질(物的) 포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료 D 이외 문무왕 8년(668)에는 고구려 정벌 이후 전공을 세운 이들이 관등과 함께 租 또는 粟을 동시에 수여받고 있는데, 이는 공훈을 표창하기 위해서 爵과 物(또는 緣)이 동시에 수여된 사례로 주목된다. 이에 「마운령비」의 爵과 物은 비문의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관등과 물질 포상을 의미하는 당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이상으로 삼국의 관등이 서주·춘추시대 爵에 비유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서주·춘추시대에는 爵이 위계뿐만 아니라 有爵者의 직무의 범위를 결정하고 祿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었다. 이는 『國語』에서 “爵으로써 일을 세우고 祿으로써 유작자를 먹인다.”<sup>105)</sup>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sup>106)</sup> 따라서 서주와 춘추시대의 爵은 職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爵은 秦代 20등 작제로 개편되었고 漢代로 이어져 군공을 포상하는 명예의 칭호로 바뀌게 되었다.<sup>107)</sup>

그런데 통일 이전 戰國 秦에서는 관료제가 새로운 국가 운영 체제로 등장하고 있었음에도 서주·춘추시대 작제의 성격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다. 8급 이하의 爵은 軍吏나 步卒로 지칭되면서 爵의 의미를 상실하고 형해화되었지만 일부 9급과 10급 이상의 유작자들은 여전히 爵에 의해 국정에 참여하였다.<sup>108)</sup>

104) 羅爵有大舍·小舍等, 皆下士之秩 (『삼국유사』 권3 흥법 제3 원종흥법 염촉멸신) ; 하일식, 2006, 앞의 책, pp.123-155

105) “爵以建事 祿以食爵” (『國語』 卷14 晉語8)

106) 민후기, 2000, 「戰國 秦의 爵制 연구 -爵制에서 官僚制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69, 동양사학회, pp.2~3

107) 宮崎市定, 1992, 앞의 논문, pp.214~215

이와 관련하여 10급 이상 유작자들이 모두 국정의 의론과 집행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앞서 爵을 받았다는 점이 주목된다.<sup>109)</sup> 이는 전국 진의 작제가 ‘軍功의 수립 → 爵의 수여 → 爵에 따른 특혜의 집행’ 순서인 軍功賜爵 및 관직을 가진 이들에게 포상으로 내리는 漢代 관작과 성격이 달랐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국 진 시기에는 職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주·춘추시대 爵의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10)</sup>

서주·춘추시대·전국 진의 爵이 職의 기능을 수행한 것처럼 삼국에서도 중앙 관서와 관직이 완비되지 않은 시기에는 관등이 관직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3세기 초 고구려의 관등인 주부(主簿)는 외교 업무 등 행정 실무를 처리하던 관직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며<sup>111)</sup> 사자, 조의, 선인 또한 하급 행정·군사 요원에게 주어진 것이었다.<sup>112)</sup> 신라에서도 나마·대사가 대세력에 부속된 가신들 중에서 실무를 관리하는 자의 명칭에서 기원하였고<sup>113)</sup>, 대나마·대사가 관등 명칭인 동시에 관직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볼 때 신라의 초기 관등 역시 관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파악된다.<sup>114)</sup> 따라서 삼국의 관등이 職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이러한 삼국의 초기 관등의 모습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진흥왕대 사료에서도 관등이 職으로 표현된 사료가 있어 주목된다.

E-1. 마침내 나라로 돌아와서 환속(還俗)하여 벼슬에 나아가(從士) 職이 대아찬에 이르렀다[遂還國, 返本從仕, 職至大阿飡]. 진흥대왕 6년(545) 을축, 왕명(朝旨)을 받들어, 여러 文士들을 모아 國史를 편찬하였고 파진찬으로 승진하였다.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전)

E-2. (진흥왕) 6년(545), 가을 7월 이찬 이사부가 아뢰기를 “國史라는 것은 君臣의 선과 악을 기록하여 萬代에 옮기고 그름을 보이는 것입니다. (國史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심히 그렇다고 하여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널리 文士를 모아 편찬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진흥왕 6년)

사료 E-1과 E-2에서 거칠부는 대아찬이 된 이후 545년 왕명을 받고 文士들을 모아 국사를 편찬하였다. 국사 편찬의 의도는 신라 왕실의 신성성과 국왕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신라의 국왕들이 어진 군주로서 백성들을 덕으로 교화하여 왕도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었다.<sup>115)</sup> 하지만 당시에 書表를 담당하는 詳文師·崇文臺 등 內省 소속 文翰機構는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108) 민후기, 2000, 앞의 논문, pp.6~7 ; 진효공~진시황시대 8급 公乘 이하의 유작자는 진의 국정에 참여한 사례가 없다. 그리고 9급 五大夫는 軍吏(9급~3급)에 속하지만 사실상 吏民들은 받을 수 없었던 양면적 성격을 가진 爵이었고 이들이 중앙 정부에서 활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후기, 2000, 앞의 논문 pp.4~7 및 pp.23~24)

109) 대표적인 예로 상앙과 장의가 있다. 상앙은 左庶長(『漢書』百官公卿表 20등 작제 중 10급)에 임명된 이후 太子의 師, 傅에 대한 형벌 집행, 변법의 可否를 논한 자들에 대한 邊城 이주를 단행하는 등 진의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고 장의 역시 진혜왕이 그를 客卿(『商君書』17등 작제 중 10급)에 임명한 이후에 제후들을 정벌할 것을 모의하고, 齊, 楚의 相과 회합하는 使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민후기, 2000, 앞의 논문, pp.10~13)

110) 민후기, 2000, 앞의 논문, pp.7~11

111) 여호규, 2014, 앞의 책, pp.214~216

112) 노태돈, 1999, 앞의 책, p.153

113) 하일식, 2006, 앞의 책, pp.78~87

114) 이재환, 2010, 앞의 논문, p.92

115) 전덕재, 2022, 「삼국시대 역사서의 내용과 성격-서기와 국사를 중심으로-」, 『진단학보』138, 진단학회, pp.31~33

국사 편찬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등을 지닌 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E-1에서 거칠부가 대아찬이라는 職에 이르고 난 뒤 545년 국사를 편찬하였고 E-2에서 이사부의 건의 이후 왕이 왕명으로 대아찬 거칠부에게 국사 편찬을 지시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관등이 職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거칠부가 관등(대아찬)에 의해 직무의 범위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文士를 모아 국사를 편찬하라는 직무가 부여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국진에서 새로운 관료제가 등장하였지만 여전히 爵이 職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처럼 진흥왕대에도 중앙관서·관직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관등이 職의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에서 관등이 신라 고유의 토착적 모습을 반영하는 용어라는 견해가 주목된다.<sup>116)</sup> 이에 따르면 상고기의 관등은 소지자의 등급을 나타내는 성격을 지니면서 관직적 성격을 내포하는 토착적 모습을 보이다가 중고기 이후 관등이 제도화되면서 관직을 제어하는 운영 원리로 기능하게 되었는데<sup>117)</sup>, 관등은 이러한 신라의 사정을 반영하는 용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거칠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진흥왕대에 새로운 관료제가 등장하였지만 상고기 관등의 관직적 성격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118)</sup> 따라서 관등이 여전히 職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병부·품주·사정부 및 某大等の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발생할 때마다 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대등 중에서 해당 책임자가 선발되었다고 생각한다.<sup>119)</sup>

#### IV.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봉평비』의 교집단 등 6부의 유력자들은 대등과 연결되는 존재이다. 520년대 휘부·사휼부에 경위제와 신분제가 시행되어 여타 부로 확대는 과정처럼 「봉평비」 건립 이후 휘부·사휼부 중심 유력자가 먼저 임명되고 530년대 초 여타 부의 干支가 경위와 신분제에 편입되면서 대등에 임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531년 상대등이 설치되면서 대등 집단의 성립이 일단락되었고, 이후 532년 가야의 지배층을 흡수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진

116) 김희만, 1996, 「新羅 “官等” 用語의 檢討」, 『경주사학』15, 경주사학회, pp.19~22

117) 하나의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이 배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중국의 관품과 신라의 관등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관품의 경우 하나의 품에 여러 관직이 대응되면서 관직의 高下를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관품이 서열화하는 대상은 관료들이 가진 “직책”이다. 반면, 신라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하나의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여러 등급의 관등이 배정되었다. 따라서 관등 그 자체만으로는 관직의 高下를 드러내기 어렵다. 이에 관등이 서열화하는 대상은 관료라는 “사람”이며, 관료제 내에서 관료가 차지하는 서열상의 위치나 등급(等)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김희만, 1996, 앞의 논문, pp.16~22 ; 이재환, 2010, 앞의 논문, pp.83~85 참조)

118) 물론 거칠부는 『창녕비』(561)에서 某大等A로 기재되었다. 하지만 상대등을 제외한 나머지 某大等 관직이 560년대를 전후로 설치되었음을 고려하면 E-1의 ‘從士’라는 표현은 거칠부가 관등을 받고 국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545년 당시에는 某大等A에 임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119) 진시항 등 중국 황제들의 순수와 「진흥왕순수비」를 비교하여 중국의 황제들이 순수를 할 때 제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진흥왕의 순수에서도 제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박초롱, 2015, 「진흥왕순수비 건립의 의의」, 『사학연구』118, 한국사학회) 이 견해에 따라 진흥왕의 순수에 제의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예부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예부도 설치되지 않았고 의례를 담당할 별도의 관직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관서 혹은 상설 관직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대등 중에서 소지한 관등에 따라 직무에 적합한 자가 선발되어 이를 처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양자량, 2019(b), 앞의 논문, pp.108~109 참조)

흥왕대 비문의 대등은 모두 진골로 생각된다. 대등은 臣으로 의역될 수 있는데 이는 왕이 부를 초월한 지위로 격상함에 따라 왕과 6부의 유력자 사이에 군신 관계가 설정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등은 진골 신분임과 동시에 국왕 아래 편제된 상층 신료로 생각된다.

「창녕비」의 분석을 통해서 군주·당주, 某大等A·B, 使大等도 모두 대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신분은 진골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46명의 대등을 추출하고 분석한 결과 대등 중에서 일부는 중앙 관서의 관직에 임명되었지만 일부는 관직에 임명되지 않고 관등만 소지하였다. 관직에 임명되지 않고 관등만 소지한 대등을 검토하기 위해 삼국의 관등이 爵 또는 職으로 표현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서주·춘추시대와 전국 진 시기의 爵과 검토하고 거칠부가 職이 대아찬에 이르렀다고 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진의 유작자의 직무가 爵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진흥왕대도 여전히 상고기처럼 관등이 職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대등은 국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지한 관등에 따라 직무 범위가 설정되면서 해당 책임자로 선발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日本書紀』, 『春秋左氏傳』, 『說文解字』, 『國語』, 「鳳坪碑」, 「蔚州川前里書石」, 「赤城碑」, 「昌寧碑」, 「磨雲嶺碑」, 「黃草嶺碑」, 「北漢山碑」

나라문화재연구소, 2012, 『특별사적 후지와라 궁지』

김영하,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김수태, 1996, 『新羅中代政治史研究』, 일조각

김철준, 1975, 『韓國古代國家發達史』, 韓國日報社

노용필, 1996,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일조각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신형식, 1984,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신형식, 1985, 『新羅史』,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이기백, 이기동, 1982, 『韓國史講座(I) 古代編』, 일조각

이문기, 1997, 『新羅兵制史研究』, 일조각

이영호, 2014,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이인철,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이종욱,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일조각

전덕재, 1996, 『新羅六部體制研究』, 일조각

정덕기, 2021, 『신라 상·중대 중앙행정제도 발달사』, 혜안

정구복 외 4명, 2012,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 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주보돈, 2002,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하일식, 2006, 『신라집권관료제연구』, 혜안

허신, (하영삼 譯), 2022, 『완역 설문해자』1, 도서출판3

小倉芳彦, 1970,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青木書店

강만길, 1955, 「眞興王碑의 隨駕臣名研究-黃草嶺碑와 昌寧碑-」, 『史叢』1, 高麗大學校史學會

- 강재광, 2008, 「新羅 眞興王代 使大等 편제의 역사적 성격-眞興王昌寧碑를 중심으로-」, 『신라사학보』12, 신라사학회
- 今西龍, (橋本繁 譯), 2005, 「新羅眞興王巡狩管境碑考(3)」, 『新羅史學報』5, 신라사학회
- 김광수, 1996, 「新羅 官名 ‘大等’의 屬性和 그 史的 發展」, 『역사교육』59, 역사교육연구회
- 김희만, 1996, 「新羅 “官等” 用語의 檢討」, 『경주사학』15, 경주사학회
- 김희만, 2009, 「新羅 官職體系의 樣相과 그 性格」, 『경주사학』29, 경주사학회
- 노용필, 1990, 「新羅 眞興王代 大等の 分化 와 그 政治的 背景 -昌寧 眞興王巡狩碑 會集人名의 大等관계 部分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학보』127, 역사학회
- 노중국, 1992(a), 「昌寧 眞興王拓境碑」,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신라 1·가야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 노중국, 1992(b), 「磨雲嶺 眞興王巡狩碑」,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신라 1·가야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 민후기, 2000, 「戰國 秦의 爵制 연구 -爵制에서 官僚制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69, 동양사학회
- 박대재, 2014, 「新羅의 四靈地會議와 和白」, 『신라문화』44,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 박초롱, 2015, 「진흥왕순수비 건립의 의의」, 『사학연구』118, 한국사학회
- 신형석, 2001, 「新羅 中古期 大等の 身分」, 『신라학연구』5,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 신형석, 2002, 「6세기 新羅 貴族會議와 그 性格」, 『국사관논총』98, 국사편찬위원회
- 양자량, 2019(a), 「6세기 신라 대등 성격에 대한 검토-진흥왕대 비문 분석을 중심으로-」, 『신라문화』5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 양자량, 2019(b), 「5~7세기 신라 국정운영과 대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백, 1974(a), 「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 이기백, 1974(b), 「上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 이기백, 1996, 「丹陽 赤城碑 ‘王敎事’ 部分의 檢討」,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 이명식, 1992, 「蔚珍 鳳坪碑」,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신라 1·가야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 이문기, 1982, 「新羅 眞興王代 臣僚組織에 대한 一考察」, 『대구사학』20, 대구사학회
- 이문기, 1992, 「蔚州 川前里書石」,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신라 1·가야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 이인철, 2003, 「신라의 왕권과 정치구조-군신회의 구성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라문화』2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이수훈, 1988, 「新羅 中古期 州의 構造와 性格」, 『부대사학』12, 부산대학교 사학회
- 이재환, 2010, 「新羅 中·下代 官等制의 성격 변화-人名·官等의 표기 방식을 중심으로-」, 『韓國史論』5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이재환, 2014, 「新羅 眞骨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환, 2018, 「신라의 회의제와 상대등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대구사학』131, 대구사학회
- 이종서, 1998, 「‘節’·‘等’의 의미분석과 赤城碑 ‘敎事’ 部分의 재검토」, 『한국사론』39, 서울대 국사학과
- 이종서, 2008, 「新羅 中古期 大等の 語義와 性格」, 『신라문화』31,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신라문

학연구소

- 전덕재, 2000, 「7세기 중반 관직에 대한 관등규정의 정비와 골품제의 확립」, 『한국 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 전덕재, 2002, 「新羅 소경의 설치와 그 기능」, 『진단학보』93, 진단학회
- 전덕재, 2013, 「新羅 下代 得難 신분의 擡頭와 骨品制의 變化」, 『신라문화』4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전덕재, 2014, 「異斯夫의 家系와 政治的位相」, 『사학연구』115, 한국사학회
- 전덕재, 2018, 「『삼국사기』 직관지의 원전과 찬술에 대한 고찰-중앙행정관부 기록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83, 한국사연구회
- 전덕재, 2022, 「삼국시대 역사서의 내용과 성격-서기와 국사를 중심으로-」, 『진단학보』138, 진단학회
- 주보돈, 1992(a),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韓國社會發展史論』, 일조각
- 주보돈, 1992(b), 「丹陽 赤城碑」,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신라 1·가야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 최상기, 2015, 「6~7세기 신라 장군(將軍)의 역할과 운용」, 『역사와 현실』97, 한국역사연구회
- 하일식, 1995, 「신분제와 관등제」, 『한국역사입문1』, 풀빛
- 宮崎市定, 1992, 「中國官制の發達-古代より唐に至る-」, 『宮崎市定全集』7, 岩波書店
- 宮崎市定, 1993, 「古代史」, 『宮崎市定全集』1, 岩波書店
- 末松保和, 1954, 「上大等について」,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政治體制」,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學生社
- 武田幸男, 2020,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新羅中古期の史的研究』, 勉成出版

# 「新羅 中古期 전반 大等の 성립과 운영 방식」에 대한 토론문

정덕기 | 중부대학교<sup>1)</sup>

이 글은 한동안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대등(大等)을 주목하고, 대등의 성립과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시도한 글입니다. 대등은 국가형성사를 비롯해 정치사·제도사·사회사 등의 분야사에서 영향력이 높은 주제이자, 중고기 신라를 이해할 때 최대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논의가 복잡하므로, 이 글에서 설명한 것을 다소 상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론자의 논지 정리에 오해가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520(울령반포(520))~530년(상대등 설치(531))을 전후한 부체제 해체기에 궤부·사궤부의 유력자를 시작으로 나머지 4부 간지(干支)가 관등제·골품제에 편입되어 대등 집단이 형성되었다.

②대등의 전신은 「봉평비」에서 교(敎)를 내린 집단이다.

③진흥왕대의 5비 중 「북한산비」(568)·「황초령비」(568)를 제외한 3비(「적성비」(550), 「창녕비」(561), 「마운령비」(568))에 대등(大等) 혹은 대중등(大衆等)으로 나타나는 인명을 분석해 접근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을 3비로 제약한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의 대등은 동일하므로, 「황초령비」는 제외한다. 둘째, 「북한산비」의 대등 중 정확한 인명이 확인되는 것은 (1)내부지(內夫智), (2)영역지(勇力智), (3)미지(未智), (4)굴정차(屈丁次)이나, (1)~(3)은 3비의 대등과 인명이 중복되므로, 「북한산비」는 제외한다. **단 (4)굴정차(屈丁次)는 3비의 대등과 중복되지 않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④진흥왕대 대등의 임명 기준으로 '나마 이상의 신료'이나 '골품'이 제시되었으나, 골품이 기준이다. 특히 비골(두품)을 제외한 **진골만이 대등에 임명되었다.**

⑤비문의 대등은 사안을 '의결'한 존재이다. 대등은 진골로 국왕과 군신 관계에 있었으며, 실무자와 구분되는 상층 신료이다. 「냉수리비」·「봉평비」의 교 집단은 '공론·의결' 외 다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대등은 의결을 수행하고, 중앙 관서의 관직이나 모대등(某大等)에 임명되거나, 관직 없이 소지한 관등에 따라 특정한 직무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대등은 신라 관료제 도입 초기 중앙 관서·관직 체계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였다.

⑥3비는 「적성비」 → 「창녕비」 → 「마운령비」 순서로 건립되었고, 이전 단계에서 대등이 아니나, 다음 단계에서 대등이 된 인물이 있다(「적성비」에 대등이 아니나, 「창녕비」에 대등으로 나오는 인물 등). 또 이들과 유사한 관직을 지닌 인물이 있다. 이들은 직전 단계의 비에 군주·당주 등이었지만, 다음 단계의 비에서 대등이었다. 「창녕비」에 보이는 대등의 하한 관등은 (9)급간지이므로, 직전 단계의 비에 대등으로 서술되지 않더라도 대등이다. 직전 단계의 비에 대등으로 서술되지 않은

---

1)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조교수.

이유는 군주·당주 등의 직임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㉗-1. 「창녕비」의 대등 36명을 기준으로, 「적성비」의 대등 7명(군주·당주 등 포함)과 「마운령비」의 대등 3명을 더하면, 진흥왕대 비문에서 확인되는 대등은 46명이다. 대등은 관등을 가진 진골이므로, 대등의 구성원 수는 관등을 지닌 진골 수이다.

㉗-2. 669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논공행상을 하면서 말목장을 나누어 주었을 때, 대아찬 이상은 36명이었다. 아찬 이하의 진골도 있었을 것이므로, 669년 당시 진골의 수는  $36+a$ 명이 된다. 진흥왕 이후 전체 진골의 수가 증가되더라도, 관등을 지닌 진골의 수는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 진흥왕 대보다 문무왕대 대아찬 이상의 진골 수가 많은 이유는 전공을 통한 승진이 많았기 때문이다.

㉗-3. 이상에서 **대략  $46+a$ 명**의 대등은 진흥왕대의 대등 집단 전체 구성원에 근접한다. **단  $+a$ 명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글에 없다.**

㉘신라가 진흥왕대까지 둔 관직은 상대등 1인, 병부령 2인과 병부사 12인, 전대등 2인과 품주사 14인, 사정부경 2인과 사정부사 10인이다. 동시전은 관원의 설치 시점을 몰라 제외한다. 여기에 군주·당주·모대등A·모대등B·사대등 등을 합치면,  $46+a$ 명의 대등 중에서 20명은 관직에 임명되었다. 나머지  $26+a$ 명은 관등만 소지하였다.

㉙-1. 관등만 소지한 대등은 삼국의 관위가 작(爵)·위(位)·직(職) 등으로 표현되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서주·춘추 작제는 작이 직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삼국의 관등도 이런 성격을 가졌다. 서주·춘추 작제의 성격은 전국 작제에도 잔존하였다. 3세기 초 고구려의 관등인 주부, 신라의 나마·대사의 기원(대세력에 부속된 가신 중 실무 관리자), 대나마·대사는 관위 명칭과 관직 명칭으로 동시에 사용되었다.

㉙-2. 관등을 직처럼 쓰는 사례는 545년 국사 편찬 당시에도 나타난다.

“이찬 이사부가 아뢰기를 “國史라는 것은 君臣의 선과 악을 기록하여 萬代에 옳고 그름을 보이는 것입니다. (國史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심히 그렇다고 하여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널리 文士를 모아(廣集文士) 편찬하게 하였다(『삼국사기』 권 4, 신라본기4, 진흥왕 6년(545) 추 7월).”

545년에 문한기구는 설치되지 않았다. 국사 편찬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등을 지닌 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거칠부는 관등에 의해 직무의 범위가 결정되었고, 문사를 모아 국사를 편찬하라는 직무가 부여되었다.

㉚상고기 관등은 소지자의 등급을 나타내는 성격을 지니면서 관직적 성격을 내포하는 토착적 모습을 보이다가, 중고기 이후 관등이 제도화되면서 관직을 제어하는 운영 원리로 기능하였다. 진흥왕대에 새로운 관료제가 등장했지만, 관등의 관직적 성격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관등이 여전히 관직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병부·품주·사정부·모대등 외 나머지 업무는 발생할 때마다 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대등 중에서 해당 책임자가 선발되었다.

이상이 이 글의 요지로 이해됩니다. 토론자의 임무는 더 좋은 글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몇 중요 문제를 짚어,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 1. ‘중고기 전반’, ‘경위·경위제·위호·관등’, ‘상대등과 중앙집권체제’

1-1. 필자는 이 글의 제목에 중고기 전반을 내세웠고, 법흥왕~진흥왕대의 대등을 위주로 논의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중고기 전반이란, 법흥왕~진흥왕대를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한편 필자는 『신라진골 연구』의 논의를 기준으로, 신분·진골 등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신라진골 연구』는 법흥왕~진흥왕대 신분제에 대한 논의를 골·비골 위주로 전개하였고, 진평왕 이후 성골과 진골이 분화되었다고 보았다. **중고기 전반이란 어느 시기를 말하며, 진골은 언제 성립했다고 보는가?**

1-2. 이 글에서는 ‘경위·경위제·위호·관등’이 착란되어 있다. 이 글은 부체제론을 위주로 논의했지만, ‘관인의 정치적 등급’을 의미하는 용어로 대개 서론부터 2장까지는 ‘경위·경위제·위호’로 썼고, 3장부터 결론까지는 관등이라 썼다. 한국고대사에서 ‘관인의 정치적 등급’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 관계·관위·위제·관등이나 경위·경위제·위호 등이 관위의 기원을 달리 인식하는 연구사적 맥락에서 활용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단순한 용어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라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필자는 용어에 혼선을 일으키면서, 『신라육부체제연구』와 『신라집권관료제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연구사적 맥락을 자의적으로 취사하였다. 예컨대 각주19)는 『신라육부체제연구』에 거론된 관등의 정비과정을 인용하였고, 22쪽에서는 『신라집권관료제연구』에 거론된 관등의 기원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신라육부체제연구』와 『신라집권관료제연구』에서 상정한 관등·경위의 기원은 설명·명명 방식이 다르다. 연구사를 인용하면서 논자별 상을 자의적으로 취사할 수 없지만, 일단 필자의 서론을 존중해보기로 한다. **이 경우 부체제론에 입각해 설명하면서도 굳이 글의 전반부에서 ‘경위’로 쓴 이유와 후반부에서 ‘관등’으로 쓴 이유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써야만 했던 이유, 신라에서 경과 외를 구분한 시점, 이 글 전반부의 용어를 결정지을 정도로 이 글에서 경·외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길 바란다.**

## 1-3. 상대등의 성격과 중앙집권체제

‘등(等) → 대등(大等) → 상대등(上大等)’과 ‘등(等)=신(臣)’의 도식은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이 글의 논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쓰이고 있다. 토론자 역시 이 도식에 대해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그런데 상대등에 대한 논의는 정반대의 설명을 같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 글 6쪽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대등은 상대등이 임명된 531년 4월 이전에 등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상대등은 그 명칭에서 대등의 우두머리라는 것과 여러 대등 중에서 한 명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고(노용필, 1996), 직무인 攄知國事의 본질은 왕의 정치적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양자량, 2019 ; 신형식, 1985 ; 이영호, 2014), 대등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기백, 1974).”

주지의 사실이나, 상대등의 성격으로 설명된 왕의 정치적 파트너, 대등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자라는 설명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래 『신라정치사회사연구』에서 설명된 상대등은 대등으

로 구성된 귀족회의의 의장으로서, 귀족의 통솔자, 대변자, 대표자란 견해이고, 왕권을 제약하는 존재로서 중대 전제왕권의 대변자인 중시와 길항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반면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 구조』에서 설정된 상대등의 성격은 각주에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왕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문만 아니라, 『한국고대사연구』6에 수록된 「신라의 귀족회의와 상대등」에 지정토론문까지 실려 서비스가 되고 있다. 121쪽에 수록된 지정토론문의 일부만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서술했다면, 논자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상대등 설치의 부체제 해체의 직접적 지표로 상정한 견해가 있고, 중앙집권체제로 들어가는 편년의 구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필자가 말하는 대등은 ‘군신 관계’로 왕과 엮였고, 일부 직임을 받은 대등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 상고기의 관위소지자와 별 차이가 없다. 이 점에서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상대등의 역할과 성격, 중앙집권체제의 정의, 부체제와 중앙집권체제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길 바란다.**

## 2. 무편년 중앙행정관직의 편년 이해 방식

필자는 진흥왕대 3비를 기준으로 대등의 총원을 재구성하고, 관직이 있는 대등과 관직이 없는 대등으로 나누었다. 관직이 있는 대등은 다시 비문에 관직이 나오는 대등과 중앙행정관직의 정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약 20명의 대등은 관직이 있었다고 보았다. 일단 정원은 해당 관직에 설정된 인원 수의 최대값이므로, 관직별 정원을 다 채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며 서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진흥왕대까지 설정된 중앙관직의 정원을 계산하였다. 직관 상에 따르면, 진흥왕대까지 직관 상에 전하는 형태로 든 중앙관청은 병부, 품주, 사정부, 동시전이다. 각주93)에서 ‘동시전은 지증왕대 설치되었으나 관원의 설치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표 8>을 보면, 관원의 설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병부사, 품주사, 사정부사의 정원은 넣어놓았다. 3개 관청의 사는 동시전의 관직과 마찬가지로 모두 설치 연대가 서술되지 않은 관직이다. 직관 상 연구에서는 관청의 장관 혹은 상급 관직이 설치되거나, 관청이 설치될 때 관원을 두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필자가 동일하게 편년이 서술되지 않은 관직을 일부는 포함하고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며, 관원 설치연대를 이해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기 바란다.

이상입니다.



# 신라 통일기 물류 관부와 지방의 船家 운영<sup>1)</sup>

민채림 | 서울대학교

- I. 머리말
- II. 통일기 물류 관련 관부의 확충
- III. 船家の 운영과 기능
  - 1. 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의 분석
  - 2. 船家の 기능
-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대 국가의 전쟁은 지역 간 물자의 이동을 촉발하는 배경이었다. 신라는 삼국통일전쟁에서 막대한 병력과 물자의 동원이 요구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라 중앙 권력의 지방 장악력은 더욱 진전되었다.<sup>2)</sup> 더불어 전쟁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가 초래되었다.<sup>3)</sup> 이에 따라 통일 이후 신라는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경제 구조의 일원화를 새로운 과제로 안았다. 새로운 영토를 획득한 신라는 새롭게 획득한 지역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수취 체제를 정착시켜야 했다. 고대의 경제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시장경제의 논리 속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 관습, 신분, 호혜성에 내재해 있었다.<sup>4)</sup> 곧 고대 국가의 경제 구조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경제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의 장악력을 지방에 투영하여야 했다.

국가는 교통로를 통해 각지에 동일한 정치적 이념, 문화, 사회 구조를 구축한다.<sup>5)</sup> 전근대사회의 교통로는 육운과 수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수운은 배를 이용하여 비교적 많은 양의 물건을 나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수운의 대표적 예시로는 조운이 있다. 이는 “배로 수로를 따라 양식을 운송하여 수도나 軍에 공급함을 이르던 말”을 뜻한다.<sup>6)</sup> 그동안 한반도에서 조운은

---

1) 이 글은 민채림, 2024 「新羅 統一期 漢州에서의 물자 운송과 그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300.  
3) 김기흥, 1991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p.224.  
4) Van der Spek, R. J., Jan Luiten van Zanden, and E. S. van Leeuwen, eds, 2015 “A History of Market Performance: From Ancient Babylonia to the Modern World” Routledge, 25.  
5) 고동환, 2015 『한국 전근대 교통사』, 들녘, p.18.  
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2005 『漢韓大辭典 8』, 檀國大學校 出版部, p.834.

고려대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선리 명문와를 토대로 신라대의 조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sup>7)</sup> 이 기와는 일제시기 을축년 대흥수 당시 발견된 것으로, 국내 소장처는 서울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3곳이며 국외 소장처로는 일본 간사이대학박물관과 교토대학 고고학 연구실이 있다.<sup>8)</sup>

선리 명문와를 다룬 종래의 연구는 기와의 생산지와 소비지에 주목함으로써 물자 이동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며, 船家の 구체적인 기능과 신라 통일기 한강 수운의 활용 양상을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선리 명문와가 발견된 현재 하남 지역은 한강을 본류로 하는 여러 지류 하천이 흐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곡천, 덕풍천, 대사골천, 초이천, 망월천, 감이천이 이에 해당한다. 한강의 경우 계절에 따른 유량의 변화가 심하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여름에는 유량이 증가하고 겨울에는 유량이 대폭 감소하는 구조이다. 또한, 물이 깊고 잔잔한 沼와 흐름이 빠른 여울이 번갈아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선박 운항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sup>9)</sup> 따라서 신라 통일기의 조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한강 수운을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추론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와에 새겨진 명문을 참고할 때 船家 앞에 ‘国’이 붙는다는 점에서 船家は 국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船家 신라의 관부 중 하나인 선부와 연관 지어 이해하려는 시도 역시 존재하였는데,<sup>11)</sup> 국영이라는 속성을 고려할 때 船家を 신라의 중앙 관부와 연관 짓는 것은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기와가 한주 내 물류 이동의 양상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선부 외에 창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부 역시 세곡의 운송을 담당한 기관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2)</sup> 창부는 진덕왕 5년(651)에 분치된 기구로 과거에는 품주가 창부의 일을 겸하였다.<sup>13)</sup> 『삼국사기』 직관지를 참고할 때 선부와 창부 모두 계속해서 관원이 확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통일 이후 두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가 증가하였음을 드러낸다. 창부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창고와 관련된 기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창고는 물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신라 통일기 수운 활용의 실태와 추이를 밝히는 작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선부와 창부를 중심으로 물자 운송과 중앙의 관부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 상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III장에서는 蟹口에 있던 船家の 기능을 논증함으로써, 船家が 신라 통일기에 물류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했을 개연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조운의 시행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7) 박성현, 2021 「신라 통일기 한주(漢州)의 물자 이동과 조운(漕運): 하남 선동 출토 명문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21; 김창석, 2021 「한국 고대의 輸役과 漕運: 船家の 출현 배경과 관련하여」 『동서인문』 17; 2022, 「고대의 수취품 운송과 船家の 출현」 『고대 동아시아 물자 유통과 관리』, 진인진.

8) 임상택·전덕재·양시은, 2002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명문기와』, 서울대학교 박물관;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7 『博物館所藏品目錄: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00주년 기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규동·성재현, 2011 「船里 銘文瓦 考察」 『考古學誌』 17; 高正龍·熊谷舞子·安原葵, 2014 「関西大学博物館所蔵朝鮮瓦: 文字瓦を中心として」 『関西大学博物館紀要』 20. 교토대학 고고학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선리 명문와는 이마니시가 수집한 자료를 유족에게서 기증받은 것이다(요시이 히데오, 2017, 「광주 선리 명문기와의 고고학적 재검토: 이마니시 류 수집자료의 검토를 중심으로」 『佛智光照: 청계 정인스님 정년퇴임 기념 논총』, 정인스님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p.1121).

9) 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민족의 젓줄 한강』, 국립민속박물관, p.131.

10) 田中俊明, 2004 「廣州船里出土文字瓦銘文の解釋と意義」, 『古代文化』 56-11.

11) 김창석, 2021, 앞의 논문; 2022, 앞의 논문.

12) 고동환, 앞의 책, p.146.

13) 『三國史記』 권38 잡지7 직관上. “倉部, 昔者倉部之事, 兼於稟主, 至眞德王五年, 分置此司.”

## II. 통일기 물류 관련 관부의 확충

통일 이후 신라는 행정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관부를 확충하였다.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신라의 관부로는 선부와 창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신라의 관부에 관한 정보를 전하는 전거로는 『삼국사기』 직관지가 있다. 아래의 <표 1>은 직관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부와 창부에 관한 사항을 비교·정리한 것이다.<sup>14)</sup> 두 부는 각각 다른 연원을 지니고 있으나, 5개의 직을 두었다는 점은 동일하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창부의 경우 租舍知, 선부의 경우 舍知라 한 점이 있다. 그리고 직에 임명될 수 있는 관등을 창부 대사의 경우 사지에서나마까지를, 선부의 경우 사지에서 대나마까지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창부	선부
연원	품주	병부
설치	진덕왕 5년(651)	문무왕 18년(678)
관직(정원)	令(1)-卿(2)-大舍(2)-租舍知(1)-史(8)	令(1)-卿(2)-大舍(2)-舍知(1)-史(8)
관등	令: 대아찬~대각간 卿: 급찬~아찬(병부의 대감과 동일) 大舍: 사지~나마(병부의 대사와 동일) 租舍知: 사지~대사(병부의]노사지와 동일) 史	令: 대아찬~대각간 卿: 급간~아찬(조부의 경과 동일) 大舍: 사지~나마(조부의 대사와 동일) 舍知: 사지~대사(조부의 사지와 동일) 史
인원 변동	진덕왕 5년(651) 卿2, 史8(651?) 문무왕 11년(671) +史3 문무왕 12년(672) +史7 문무왕 15년(675) +卿1 효소왕 8년(699) +租舍知1, 史1 경덕왕 11년(752) +史3 <b>혜공왕 12년(776) +史8</b>	문무왕 3년(663) 卿2 <b>문무왕 18년(678?) 大舍2, 舍知1, 史8</b> 신문왕 원년(681) +史2 신문왕 8년(688) +卿1 애장왕 6년(805) -史2
개칭	-	이제부(경덕왕) → 선부(혜공왕)

<표 16> 『삼국사기』 직관지에 기재된 선부 및 창부

선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선부서는 병부의 속사였다.<sup>15)</sup> 이를 고려할 때 선부가 단독으로 분

14)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上. “倉部, 昔者倉部之事, 兼於稟主, 至眞德王五年, 分置此司. 令二人, 位自大阿滄至大角干爲之. 卿二人, 眞德王五年置. 文武王十五年加一人. 景德王改爲侍郎, 惠恭王復稱卿. 位與兵部大監同. 大舍二人, 眞德王置. 景德王改爲郎中, 惠恭王復稱大舍. 位與兵部大舍同. 租舍知一人, 孝昭王八年置. 景德王改爲司倉, 惠恭王復故. 位與弩舍知同. 史八人, 眞德王置, 文武王十一年加三人. 十二年加七八, 孝昭王八年加一人, 景德王十一年加三人, 惠恭王加八人.”; “船府, 舊以兵部大監·弟監, 掌舟楫之事, 文武王十八年別置. 景德王改爲利濟府, 惠恭王復故. 令一人. 位自大阿滄至角干爲之. 卿二人, 文武王三年置, 神文王八年加一人. 位與調府卿同. 大舍二人, 景德王改爲主簿, 惠恭王復稱大舍. 位與調府大舍同. 舍知一人, 景德王改爲司舟, 惠恭王復稱舍知. 位與調府舍知同. 史八人, 神文王元年加二人, 哀莊王六年省二人.” 인원 변동에 관한 사항 중 밑줄 그은 부분은 직관지에 정확한 시점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이다. 다만, 혜공왕 때 창부의 史를 8명 추가한 기록이 본기에 남아있어 이를 참고하여 이를 토대로 연도를 기재하였다(『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혜공왕 12년 3월. “加倉部史八人.”). 그 외의 사항은 모두 해당 관직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앞에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부의 분치 시점인 진덕왕 5년(651)과 문무왕 18년(678) 당시의 정황으로 이해된다.

15)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5년 1월. “始置船府署大監·弟監各一員.”; 주 14번.

치되기 전까지 선부서는 수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직관지의 내용을 참고할 때 선부의 관원과 관련하여 가장 시기가 이른 일은, 문무왕 3년에 두 명의 경을 둔 것이다. 이는 선부로의 분치가 이루어지기 전의 시점에 해당한다. 663년의 주요 사건으로는 백제 부흥 세력과의 백강구 전투가 있다. 이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 중 육군의 주력은 신라군이었으며, 해군의 주력은 당군이였다.<sup>16)</sup> 백강구 전투에서 신라군의 역할은 육상 전투를 담당함과 동시에 당의 수군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부서의 역할 역시 강화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치 이전 선부서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나당 전쟁기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라의 수군 강화 필요성은 나당 전쟁 중 더욱 대두되었다. 신라 수군은 당과 치열한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화되었다.<sup>17)</sup> 나당 전쟁 당시 당의 주된 공격로는 해상이었다.<sup>18)</sup> 따라서 신라군은 육상에 주둔한 당의 군대를 상대하면서도, 신라 해상에 접근한 당군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했다. 이를 고려할 때 당시 선부서의 역할은 수군 외에 군수품의 수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당의 수군을 상대하기 위해 신라군 역시 수군을 동원하였다. 문무왕 11년(671) 겨울에는 당의 조운선을 공격하여 승리하였으며<sup>19)</sup>, 15년(675) 가을에는 병선 40척을 빼앗았다.<sup>20)</sup> 장기간에 걸친 해상 전투로 인해 신라 수군은 군량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선부서는 배를 이용하여 군수 물자를 보급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선부로의 분치 이후에는 최고 관직인 수을 두고 배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sup>21)</sup> 분치 시점이 삼국통일 이후라는 점에서 선부의 역할은 군사적인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았을 것이다. 배와 관련된 업무는 수군과 같은 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업무 외에 운송과 관련된 소관도 있다. 이에 따라 선부는 전문적인 수군 통솔 기구로 기능하면서도<sup>22)</sup>, 수송 직무를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가 물류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첫째, 운송에 필요한 배를 관리해야 하고, 둘째, 그 배가 지나기에 알맞은 海路를 탐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송에 필요한 인력을 관리할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라 통일기에 선부가 물자 운송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나당 전쟁 이후 선부에서 수취품 운송 및 교역의 추세를 읽을 수 있는데 이는 경덕왕 때 선부의 이름이 이제부로 개칭되었던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sup>23)</sup> 추가로 신라의 역역 징발 체제 역시 통일기에 접어들면서 변화하였다. 평화가 지속됨에 따라 병졸로서의 역할이 소실되었고 노역에 사역하게 되었다.<sup>24)</sup> 이는 선부가 수군과 관련된 군사 관련 업무 외의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배경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국가 주도로 전국을 단위로 한 물류망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환적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수로를 이용한 운송 방식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와 같은 문제로

16) 노태돈, 앞의 책, p.181.

17) 정진술, 2009 「통일신라와 발해의 해상활동」 『한국해양사』 고대편, 경인문화사, p.219.

18)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p.322.

1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10월. “擊唐漕船七十餘艘，捉郎將鉗耳大侯，士卒百餘人，其淪沒死者，不可勝數。級滄當千功第一，授位沙滄.”

2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9월.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李國，引風訓爲鄉導，來攻泉城。我將軍文訓等，逆戰勝之，斬首一千四百級，取兵船四十艘，仁貴解圍退走，得戰馬一千匹.”

2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8년 1월. “置船府令一員，掌船楫事.”

22) 정진술, 앞의 책, p.224.

23) 김창석, 2021, 앞의 논문, p.88.

24) 김기흥, 앞의 책, pp.187~190.

인해 수운을 이용하여 물건을 나를 수 있는 노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건에 따라 수운을 활용한 이후 수레나 말 등에 물건을 옮겨 신고,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환적 절차가 요구된다. 환적을 위해서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환적에 이르기까지 소요하는 기간과 이후의 유통 체계를 연상해 볼 때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 온 물자를 보관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대 조운 제도의 시행은 조창의 설치를 동반하였다. 조창은 운송 경로상의 거점에 설치되었으며, 운송 경로상의 중추로 기능하였다. 신라는 문무왕 3년(663)에 경주 남산에 장창을 건립하였는데<sup>25)</sup>, 이는 국가 재정수입이 늘어나 기존의 창고에 곡물을 모두 저장하기 어려워 창고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었다.<sup>26)</sup> 신라는 7세기 이후 현 단위 이상의 행정단위에 지방 창고를 설치하였다.<sup>27)</sup> 이는 수취한 현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작업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라 통일기에는 지방 창고와 물자 운송이 국가 주도 유통 체계 속에서 주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부와 창부 중 신라의 물류와 관련하여 더욱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 부서는 어느 곳일까. <표 1>을 참고할 때 선부에 비해 창부의 관원 확충 양상이 미세하지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창부의 경우 가장 말단 관직인 史의 총원이 빈번히 나타난다. 문무왕 11년에 기존의 관원에 사를 3명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혜공왕 때에 이르기까지 늘어난 사의 인원수는 총 22명이다. 그에 반해 선부의 사는 큰 변동이 없으며, 애장왕 대의 경우 인원이 줄어든 양상이 포착된다. 하급 관료의 수가 많다는 점은 당시 창부의 업무가 상세히 나뉘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령 관료별로 관할 지역을 설정하는 것처럼 업무를 분담하였을 수 있다. 창부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창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창고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이나 생산품을 저장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 온 물자를 보관하는 공간이다. 중앙 정부에서는 각 지역에 저장된 창고의 물자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sup>28)</sup> 특히, 통일기의 신라는 과거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였던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을 파악하고, 이를 신라의 유통망 속에 편입시켜야 했다. 이에 따라 새로 획득한 지역의 물류 흐름을 파악할 하급 관리가 추가로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수운 관련 시설에 비해 창고는 상대적으로 공간 설치 시 입지의 제약이 적다. 더불어 수로의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수운에 비해 육운을 이용하는 것이 물류비용을 줄이고 운송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경우 역시 존재했을 것이다.

추가로 직관지에 기재된 사항 중 눈여겨 볼 사항이 한 가지 있다. 선부는 조부, 창부는 병부의 관직에 대응하여 각 관직에 임명할 수 있는 관등을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병부의 경우 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조부는 창부와 마찬가지로 품주를 그 연원으로 하는데, 진평왕 6년(584)에 설치되어 지방의 특산품을 관장하였다.<sup>29)</sup>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선부와 병부, 창부와 조부를 대응시켜 세부 사항을 서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을까 싶다. 창부의 경우 통일기에도 계속해서 조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던 점이 확인된다. 이는 고려 초기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재지 지배층은 신라의 중앙관서를 모방하여 재지 관반을 설치하였는데 그

2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3년 1월. “作長倉於南山新城.”

26) 전덕재,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p.335.

27) 김창석, 2004,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p.146.

28) 그 예로 唐·宋과 일본에는 倉庫令이 존재하였다. 이는 令의 형태로 창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었다 (김택민·하원수 편, 2013 『천성령 역주』, 해안; 기요하라노 나츠노, 이근우 역, 2014 『영의해 역주』, 세창출판사 참고).

2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6년 3월. “置調府令一員, 掌貢賦, 乘府令一員, 掌車乘.”

사례 중 하나인 창부가 재지 사회에서 재정과 수취 업무에 관여한 점이 확인된다.<sup>30)</sup>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선부와 창부는 모두 신라의 운송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관부로 이해된다. 신라에서는 장관의 관등 규정이 유사하더라도 각 관직과 관부가 독립적이고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sup>31)</sup> 이는 신라의 관부 운영 양상에 있어 중복되는 소임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을 반증한다. 통일신라의 운송 체계는 국가의 공식 체계를 따랐다.<sup>32)</sup> 선부의 분치 시기는 창부보다 늦으며, 통일기에 들어서야 군수품을 제외한 물자의 운송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식별된다. 따라서 선부와 창부 중 통일기 국가의 유통 체계에서 상위의 위상을 지니고 있던 관부는 창부로 판명된다.

### Ⅲ. 蟹口 船家の 운영과 기능

#### 1. 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의 분석

남으로는 熊津으로 나르고 북으로는 平壤에 공급하였으니, 조그마한 신라가 두 곳으로 나뉘어 공급하느라 인력의 피로함이 극에 달하였고 소와 말이 거의 다 죽었으며 농사의 때를 놓쳐 곡식이 잘 익지 못하였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양식은 날라주느라[漕運] 모두 써버려서 신라의 백성은 풀뿌리도 오히려 부족하였지만, 웅진의 중국 군사는 군량에 여유가 있었습니다.<sup>33)</sup>

신라에 관한 문헌 자료 중 ‘漕運’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위의 사료와 같다. 이는 문무왕 답서 중 일부로 조세의 운송에 따른 피지배민의 고통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당시 신라에서 조운제가 시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sup>34)</sup> 신라의 조운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문헌 자료는 없는 실정이기에, 물질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신라 통일기의 조운 가능성이 제안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선리 명문와는 을축년 대흥수(1925) 이후 현재의 경기도 하남시 선동 일대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기와를 소재로 한 초기의 연구는 복원 명문 본연에 주목하기보다는 특정 주제와 연관된 소재로서 기와를 다루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장 처음 이 기와를 다룬 연구는 신라 한주의 설치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였다.<sup>35)</sup> 국내에서는 백제 위례성의 위치를 검토하면서 복원 명문 중 하나인 ‘北漢受國蟹口船’가 소개되었으며<sup>36)</sup>, 平瓦를 고찰하면서 기와를 검토하기도 하였다.<sup>37)</sup> 이후 포천 반월산성에서 비슷한 명문와가 출토됨에 따라 명문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sup>38)</sup>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이 기와에는 통일기 한주에 해당하는 지명이 새겨져 있어, 신라의 수운 활용 양상을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에서야 이를 활용하여 신라 통일기의 물류

30) 전덕재, 2005 「新羅 中央財政機構의 性格과 變遷」 『신라문화』 25, pp.20~21.

31) 박수정, 2017 「三國史記 職官志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1.

32) 김창석, 앞의 책, p.154.

3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南運熊津, 北供平壤, 叢小新羅, 分供兩所, 人力疲極, 牛馬死盡, 田作失時, 年穀不熟, 所貯倉糧, 漕運並盡, 新羅百姓, 草根猶自不足, 熊津漢兵, 糧食有餘.”

34) 문경호, 2014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해안, p.33.

35) 藤田亮策, 1953 「新羅九州五京攷」 『朝鮮學報』 5, p.97.

36) 李丙燾, 1987 「慰禮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496.

37) 徐五善, 1985 「韓國平瓦紋樣의 時代的 變遷에 對한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서영일, 1996 「포천 반월산성 출토 < 마홀수해공구단(馬忽受解空口單) > 명 기와의 고찰」 『史學志』 29; 李道學, 1997 「抱川 半月山城 出土 ‘고구려’ 기와 銘文의 再檢討」 『高句麗研究』 3.

를 추적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기와의 제작 연대는 통일신라 초로 이해된다.<sup>39)</sup> 다만, 이는 기와가 제작된 시기의 상한이며 그 하한은 고려 초기로 파악되기도 한다.<sup>40)</sup> 기와의 연대를 파악하는 데는 명문에 나타나는 지명을 참고할 수 있다. 경덕왕 16년(757)과 고려 태조 23년(940)에 지명을 바꾼 점을 고려할 때 기와의 제작 연대는 두 시점의 사이가 된다.<sup>41)</sup>

복원한 명문의 기본 구성은 ‘지명+受國蟹口船家草’이다. 마지막의 ‘草’는 지붕을 덮는 기와를 뜻한다.<sup>42)</sup> 기와에 새겨져 있는 명문의 유형을 글자의 조합 관계와 새김 방법을 고려하여 ①지명+受(國)+蟹口)+船(家, 宇), ②지명+受+蟹口(草), ③지명+蟹口, ④지명으로 분류된다.<sup>43)</sup> ①과 관련하여 船宇로 기재되어 있는 명문도 존재한다. 다만 船家와 船宇 모두 船 뒤에 집을 의미하는 家나 宇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의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명문 가운데 각 지명과 ‘蟹口’는 항상 남아있는 글자로, 이 중 ‘蟹口’는 지명만 남아있는 네 번째 유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통된다.<sup>44)</sup>

선리 명문와를 둘러싼 논점은 기와가 어디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것인지에 관해서이다. 기와의 사용처를 이해하는 것은 기와를 둘러싼 생산-공급의 관계와 유통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복원된 명문 중 ‘受’를 본래 뜻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受)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준다는 의미(授)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sup>45)</sup> 이는 곧 기와의 사용처가 군현인지 아니면 船家인지에 관한 사안이다. 기와의 사용처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船家’ 혹은 ‘船宇’가 들어간 명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명문만이 이를 담고 있어, 기와의 생산처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라에서 기와는 제작이나 형식에 관한 규범이 없어 장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었다.<sup>46)</sup> 기와의 수요는 한정되었으며 기와는 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운송에 드는 물류비용이 높았다.<sup>47)</sup> 기와는 정기적인 유통이 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필요시 가마를 설치하여 기와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처에 공급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sup>48)</sup> 생산처에서 만든 기와를 사용처까지 옮기기 위해서는 육운보다 수운이 적합하다. 무거운 기와를 民 또는 동물을 이용하여 육로를 통해 나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수운을 통해 기와를 나르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기와의 제작을 위해서는 기술자의 조직과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경제적 뒷받침 역시 필요하다.<sup>49)</sup>

선리 명문와의 타날판 문양은 집선문, 사격자문, 물손질, 사선문, 어골문, 복합문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다. 눈여겨볼 점은 같은 郡縣名을 지칭하는 기와더라도 그 문양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는 漢陽郡과 그 屬縣인 荒壤縣, 遇王縣의 새김 방식과 문양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한양군을 새긴 기와의 경우 세장방형 인장으로 명문을 새기고, 그 문양은 사격자문과 사선문 두 가지이다. 그런데 황양현 기와의 경우 새김 방식이 세장방형이라는 점에서는 공

39) 藤田亮策, 앞의 논문, p.97.

40) 이는 기와에 남겨진 명문의 내용과 타날 문양 등을 고려한 견해이다(徐五善, 앞의 논문, pp.58~60).

41) 박성현, 2021 앞의 논문, p.44.

42) 李炳鎬, 2006 「夫餘 定林寺址 出土 塑造像의 製作時期와 系統」 『美術資料』 74, p.51; 박성현, 2008, 「신라 城址 출토 문자 자료의 현황과 분류」 『木簡과 文字』 2, pp.119~120.

43) 요시이 히데오, 앞의 논문, pp.1135~1136.

44) 요시이 히데오, 앞의 논문, p.1136.

45) 이 중 후자는 경주 「關文城 石刻」에서의 용례를 고려한 것이다(田中俊明, 앞의 논문, pp.46~47 참고).

46) 김유식, 2014 『신라기와연구』, 민속원, p.64.

4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2008b 『漢城百濟史 5. 생활과 문화,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87.

48) 김창석, 2007 「왕경인의 소비생활과 교역」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8, p.157.

49) 김종일·권오영·장남원·한혜선, 2022 『토지와 도자기: 한국 도자기 문명사』, 들녘, pp.314~315.

통되나, 사격자문 외에 집선문 기와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우왕현 기와의 경우 장방 타날판으로 명문을 새겼다는 점에서 앞의 두 기와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선리가 한강 하중도에 있어, 이곳에 서로 다른 계보를 지닌 복수의 製瓦匠이 모여 기와를 제작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었다.<sup>50)</sup> 또한, 같은 군현명의 기와 유형이 1~2가지인데 반해, 다른 군현의 기와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각지에서 기와를 생산해서 납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sup>51)</sup> 더불어 한주 소속 군현에서 기와를 분담 및 제작하여 보낸 것으로 파악되었다.<sup>52)</sup> 이렇듯 선리 명문와의 문양을 고려하여 기와는 각 군현에서 만들어 蟹口의 船家에 공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군현에서 공급한 기와를 船家の 건물을 올리는 데 실제로 사용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舊唐書』에서는 신라의 습속이 고구려·백제와 같으며, 고구려에서는 사찰, 왕궁, 그리고 관부만이 기와를 쓴다고 하였다.<sup>53)</sup> 이에 따라 기와의 생산 역시 국가적인 조영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sup>54)</sup> 船家の 건물을 짓는 데 기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船家가 높은 위계를 가진 공간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船家は 국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지닌 공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천을 따라 유하하는 유수는 주로 유역에 내린 강수에서 비롯된다.<sup>55)</sup> 현재 하남 지역의 지류 하천은 모두 한강을 본류로 하는 지류 하천이다. 더불어 초이천과 망월천은 고덕천의 지류 하천이다.<sup>56)</sup> 고덕천이 과거 계내[蟹川]라고 불렸다는 점과 선리 명문와의 발견지가 고덕천과 왕숙천이 한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임을 고려할 때 이곳의 지명이 蟹口였던 것으로 보인다.<sup>57)</sup> 따라서 蟹口의 위치는 고덕천 인근의 포구였던 것으로 이해되며, 이곳에 선박이 정박할 수 있었다. 추가로 선리 명문와에 등장하는 군에 속하는 현명 중 위치를 대략적으로나마 비정할 수 있는 곳은 인근에 유수를 두고 있다는 데서 공통적이다. 해당 군에 속하는 현의 유수는 한강, 금강, 안성천, 석정천을 본류로 하였다.<sup>58)</sup> 군현 내 유수는 해당 군현에서 생산된 물자를 타지로 운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유수가 있다고 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천의 유량변동과 관련된 대표적 요인은 강수량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는 산악 지형이 대다수이기에 토양의 표토층이 얇아 보수능력이 적으며 하천의 경사가 급하기에 홍수가 일시에 유출된다.<sup>59)</sup> 하상계수는 하천 유량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대하천의 주요 지점에서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로 계산한다. 국내의 경우 다목적 댐이 건설되기까지 주요 하천의 하상계수가 대체로 1:300을 넘었다는

50) 요시이 히데오, 앞의 논문, p.1137.

51) 박성현, 2021, 앞의 논문, p.43.

52) 김창석, 2021, 앞의 논문, p.91.

53) 『舊唐書』 권199上 열전149上 고려조. “其所居必依山谷, 皆以茅草葺舍, 唯佛寺·神廟及王宮·官府乃用瓦.”

54) 이정신, 2013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所 연구』, 혜안, p.127.

55) Koichi YAMAMOTO, 이삼희 역, 2018 『층적하천학』, 형설출판사, p.21.

56) 환경부 하천정보관리시스템, 2024 「2023년 한국하천일람」, 환경부, <https://www.river.go.kr/summary/riverData.do>(접속일 2025.09.26.).

57) 김규동·성재현, 앞의 논문, pp.569~570.

58) 환경부 하천정보관리시스템, 2024 위의 인터넷 자료. 서울에서 안성천 하구에 이르는 경로에는 지형적 장애물이 거의 없다. 현재는 평야 지대로 바뀌었지만, 안성천 하류는 아산만이 육지로 깊게 들어오는 곳이었다. 안성천의 도하 지점은 공도읍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것이 편하다. 이에 따라 안성은 예로부터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 중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2008a 『漢城百濟史 4. 대외관계와 문물교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p.24~28, 참고).

59) 이종석, 2010 『하천공학 및 설계』, 새론, p.95.

점에서 하천의 유황이 매우 불안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60)</sup> 특히 경기지역의 하천은 산지 하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하천 바닥의 경사가 급하고 하천 유역에 비해 물길의 폭이 좁다.<sup>61)</sup> 이러한 양상은 호우로 인한 하천의 범람과 홍수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다. 조선대에도 강의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에 각각 水上船과 水下船이 다녔다는 점에서 물길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62)</sup> 한강 하류의 돛배는 상류에 반해 수심이 깊고 강폭이 넓다는 점에서 길이가 짧고 배의 폭을 넓게 한다.<sup>63)</sup> 반면, 한강 상류에서 운행되는 돛단배는 배의 폭이 좁은 대신 길이가 긴 형태를 취하는데, 이를 평저선이라 한다.<sup>64)</sup> 이를 종합하면 한강 유역 일대는 수운을 활용한 운송이 고도로 발달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한강의 가항수로는 항상 배가 다닐 수 있는 상시가항수로, 우기 때에 큰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중수기대선수로, 우기 때 작은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중수기소선수로 등으로 나뉜다.<sup>65)</sup> 일제시기 자료를 참고할 때 한강의 총 가항 수로 연장은 669km로 압록강 다음으로 길었으며<sup>66)</sup>, 과거 한강의 실제 가항 수로는 현재의 영월, 괴산, 화천, 양구 지역보다 상류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sup>67)</sup> 이를 참고할 때 신라 통일기 한강에서의 조운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신라 통일기의 조운은 후대인 고려나 조선대와 같이 세곡을 나르는 운송 제도라 하기는 어렵다. 선리 명문와와 같은 기와는 세곡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신라 통일기의 조운은 후대와 같이 곡식을 운송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물류 체계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상위의 기관으로 보내는 무언가를 수취하는 제도로 그 의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연 조운은 출발 지점, 기항 지점, 도착 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3개의 지점을 잇는 선이 조운의 주된 운항로가 된다.<sup>68)</sup> 한반도 내에서 실시된 조운의 전반적인 경로를 추정할 때 최종 도착 지점은 수상 운송으로 다다를 수 없는 수도 지역이었다. 즉, 수도 인근에 위치한 하구까지는 수운을 이용하여 화물을 나를 수 있지만, 관영에 납부할 때는 자연스레 육운으로의 환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卍의 중심이 되는 공간은 바로 주치이며, 이곳은 卍 내에서 가장 높은 격을 지닌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주의 주치는 672년 이전 하남 이성산성 일대에 고정되었던 것으로 규명되었다.<sup>69)</sup> 蟹口의 위치였던 것으로 비정되는 고덕천 일대는 이성산성과 약 10km 떨어져 있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복원된 명문에서 蟹口는 船家の 바로 앞에 놓여 있어 자연스럽게 蟹口[지명]의 船家로 해석된다.<sup>70)</sup> 따라서 船家の 위상을 상정하는 작업에 있어 한주의 주치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참고하여 한주 내의 운항로를 그린다면, 각 군현에서 기와를 제작한 뒤 船家を 거쳐 주치로 향하였음을 가정할 수 있다.

蟹口에 관해서는 船家나 船宇가 새겨져 있지 않은 기와편에도 蟹口 혹은 ‘蟹’가 새겨져 있는 경

60) 이종석, 앞의 책, p.55.

6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2001 『한강의 어제와 오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43.

62) 이정재, 2007 『남한강 수운의 전통』, 한국학술정보, p.160.

63) 이정재, 앞의 책, p.161.

64) 이정재, 앞의 책, p.161.

65) 최영준, 1987 「남한강 수운 연구」 『地理學』 22-1, p.5.

66) 고동환, 앞의 책, p.232.

67) 김종혁, 2001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 (1770)에 나타난 한강유역의 장시망과 교통망」 『경제사학』 30, p.7.

68) 이정재, 앞의 책, p.25.

69) 김민주, 2023 「新羅 漢州 州治의 형성과 공간구조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5.

70) 요시이 히데오, 앞의 논문, p.1136.

우가 다수 있다는 점이 참고된다. 蟹가 기재되어 있는 명문은 모두 이를 기준으로 그 앞이나 뒤에 한주의 군현을 가리키는 지명이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해구에 관해서는 한주의 郡縣名 중 하나인 海口郡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蟹口’와 ‘海口’는 발음은 같지만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蟹口와 海口 중 전자의 ‘蟹’는 ‘계’라는 뜻을 고려할 때 개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海口郡의 비정 위치를 고려할 때 바다 인근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각 전자는 개울의 입구, 후자는 바다의 입구라는 해당 지역의 위치가 가지는 특성을 반영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선리 명문과 외에도 아래의 <표 2>와 같이 ‘蟹口’가 새겨진 기와편이 발견된다는 점은<sup>71)</sup>, 蟹口가 지명을 뜻하는 고유명사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sup>72)</sup> 곧, 蟹口는 일제시기 지형도에서 등장하는 지명인 고덕천[계내]의 하구로 판명된다.<sup>73)</sup>

번호	출토 예	새긴 방법	최초 보고서
1	馬忽受蟹口草	인장	단국대학교 사학과(1996)
2	岳蟹口	타날판	중부고고학연구소(2020)
3	岳蟹口	타날판	한양대학교 박물관(2017)
4	蟹	타날판	서울대학교박물관(2000)

<표 17> 선동 출토 명문 기와 외 ‘蟹’ 혹은 ‘蟹口’가 새겨진 기와편

船家에서는 수운을 이용하여 각지에서 신고 온 기와를 집산하는 중간 지점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船家が 국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참작하면, 船家は 신라 중앙의 관부인 선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船家 역시 지방에 설치된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주치보다는 하위의 격을 지닌 공간으로 생각된다. 신라는 통일 이후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기 위해 9주 5소경 체제를 확립하였다.<sup>74)</sup>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는 주치라는 공간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치의 건물을 짓는 데는 기와를 사용했을 것이다. 또한, 주치는 해당 주 내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함과 동시에 신라의 중앙과 연결된 기구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에 한주 내의 물자의 운송과 관련된 기구로 파악되는 船家보다는 주치가 더 강력한 힘을 지닌 공간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기에 선리 명문과에 등장하는 船家は 기와의 직접적인 사용처라기보다는 중간 거점지로 이해된다. 군현에서는 할당받은 만큼 기와를 제작하여 船家로 운송하고, 船家は 이를 사용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아 船家の 기능은 물자의 운송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으며,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을 것이다. 통일 이후 신라에서는 기와의 생산 및 관리에 국가가 관여하고 있었다.<sup>75)</sup> 신라는 경덕왕대 官號 개혁을 전후로 공중수공업의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고, 관

71) 단국대학교 사학과·경기도 포천시, 1996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2017 『하남 광주향교 경관광장 유적 -광주향교 주변 경관광장 조성공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중부고고학연구소, 2020 『河南 下司倉洞 遺蹟』, 중부고고학연구소.

72) ‘00寺’, ‘00城’과 같이 명문에서 ‘船家’의 앞에 붙은 ‘蟹口’는 船家の 고유명일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요시이 히데오, 앞의 논문, p.1136 참고).

73) 박성현, 2021, 앞의 논문, p.41.

74) 藤田亮策, 앞의 논문.

75) 김유식, 앞의 책, p.24; 『삼국사기』에는 “瓦器典, 景德王改爲陶登局, 後復故. 干一人, 史六人.”라고 기록되어 있다(『삼국사기』 권39 잡지8 직관중 와기전).

사를 증치 및 정비함으로써 생산 공정별로 분업화가 이루어졌다.<sup>76)</sup> 신라 지방에서도 중앙의 영향을 받아 수공업의 발전이 나타났다. 한주 내 각 군현에는 기와를 생산하는 가마가 존재하였으며, 이곳에서 나오는 기와는 중앙 정부의 관리 아래 사용처로 운송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신라 한주의 권역 내에 속했던 가마터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진관동 유적이 현재까지 대표적이다. 진관동 은평뉴타운 3지구 D공구에서 생산 유적인 가마 유구 11기가 확인되어 화제가 되었으며 가마 안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로 편년되는 기와 및 도기편이 출토되어 유구의 시기도 이와 같을 것으로 판단된다.<sup>77)</sup> 이는 서울에서 처음 발견된 신라 통일기의 기와 요지로 주목을 받았으며 그 규모 역시 작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은평구 일대는 신라의 한주 경영에서 하남 일대만큼 중심이 된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의 외곽에 해당하며 신라 통일기에 설치된 군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대규모 기와 요지가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은평구 일대는 오히려 경기도 고양시 일대와 맞닿아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고봉산성은 선리 명문와의 복원된 명문 중 ‘高烽縣受國蟹口船家’와 관련된 곳이다. 혹 ‘高烽’이 새겨진 기와편이 이곳에서 만들어져 하남 일대의 주지로 운송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고봉산과 진관동 유적 사이의 직선 거리는 15km로 가까이 위치한다. 진관동 유적의 가마 유구는 그 규모로 미루어 볼 때 관영 생산을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관에 공급할 정도로 많은 양의 기와를 이곳에서 생산하여 주지로 날랐을 여지가 있다.

## 2. 船家の 기능

삼국통일 이전 한강은 삼국의 각축이라는 군사적 행위의 무대였다. 하지만 통일기에 접어들면서 격전지로 자리했던 한강 유역 일대는 변화를 맞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전근대사회에서 한강의 역할은 농경을 통한 경제적 안정, 군사 방어의 효용성 제고, 문화의 수용과 전파, 물자교류와 외교 통상의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sup>78)</sup> 앞의 절에서 船家を 주지인 하남 일대까지 향하는 운송 경로 중 거쳐야 하는 거점지로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거점지로서 船家は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었을까. 船家が 주지까지 향하는 경로상의 중간 지점이었다는 점은 당시의 물자 유통 체계 속에서 단순한 수운 활용이 아닌, 조달 및 수취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을 성립 여지를 보여준다.

船家が 수운을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거점이었다. 이 점에서 船家は 선착지로서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蟹口의 船家は 강 인근에 있어 배가 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착장의 기능을 담당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통일 이후 신라의 영역은 팽창되었고 내부에서는 여러 사회 변동이 일어났다. 가령 일반 장인을 비롯하여 관등을 가진 장인들도 8세기 중엽에 들면서 입역하지 않을 때 기술적 대가인 工價를 받는 등 자본을 축적하였다.<sup>79)</sup> 8세기 신라의 유통 경제는 이전보다 활발해졌으며 이에 따라 다량의 물자를 운송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국가가 船家を 관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船家の 배가 조운선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80)</sup> 이러한 물류의 양상을 고려할

76) 朴南守, 1996 『新羅手工業史』, 新書苑, p.119.

77) 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서울 진관동 유적 V』, 한강문화재연구원, p.260.

7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2001, 앞의 책, p.9.

79) 朴南守, 앞의 책, p.301.

80) 김창석, 2021, 앞의 논문, p.94.

때 船家의 일차적인 기능은 선착장이었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부차적으로 船家は 조선소나 驛으로 기능하였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船家が 조선소로 기능하였을 개연성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조선소는 수송에 필요한 배를 짓는 공간이다. 선박의 건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는 목재이다. 한강 수운을 활용하여 대량의 목재를 운송하였던 것과 관련된 문헌 자료는 조선대에 확인되는데<sup>81)</sup>, 이는 한양 천도와 함께 궁궐을 신축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목재의 주된 출처는 강원도 지역이었다. 황장목과 같이 재관에 쓰이는 질 좋은 소나무는 이처럼 조선대에 한강 수로에서 뗏목을 통해 서울로 옮겨졌다.<sup>82)</sup> 이처럼 뗏목은 한강 상류에서 하류로의 방향으로만 이동하였다. 이는 뗏목의 경우 적재한 상품을 운반하는 뚝배와 달리 목적지에 도착하면 통나무를 해체하고 그 자체를 상품화한다.<sup>83)</sup> 과거 배를 짓는 데 적합한 목재는 소나무였다. 선박의 건조를 위해서는 대량의 소나무를 벌목할 필요가 있었는데, 조선대의 목재 수송 사례를 보더라도 蟹口의 船家 인근에서는 목재를 대량으로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船家は 조선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보다는 선박이 파손되었을 때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는 임시 수리소로 기능했을 것이다. 당·송대의 율령 조문을 참고하면 관선을 운항하다가 파손되었는데, 그 인근에 마땅한 선박수리소(船場)가 없는 경우 관사가 이를 사안에 따라 수리했다고 한다.<sup>84)</sup> 이처럼 蟹口의 船家は 국영 성격을 띠는 관사로서, 조선소보다는 수리를 위한 임시 방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蟹口의 船家は 주치로 향하기 전 거쳐야 하는 거점이었다는 점에서, 환적 시설을 갖춘 驛으로 기능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해상 운송 후 육상 운송으로 전체 운송이 끝나는 경우를 미니랜드브리지(mini-land bridge) 운송이라 하며 이 역시 환적에 포함된다.<sup>85)</sup> 驛은 도로를 따라 설치되는 교통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를 船家와 연관시키면 물자를 이송하는 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처로 기능하였을 확률이 높다. 신라는 일찍이 사방에 郵驛을 설치하고 官道를 수리하게 하였다.<sup>86)</sup> 이처럼 삼국통일 이전부터 신라는 우역을 통해 공문서의 전달을 원활히 하고, 영토의 확장 과정에서 軍需을 신속하게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87)</sup>

신라에는 전국에 驛이 산재해 있었으며 각 지방의 驛이 왕도와 연결되어 있었다.<sup>88)</sup> 신라의 郵驛制는 漕運制와 함께 지방과 중앙 창고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sup>89)</sup> 이에 따라 물류의 거점인 船家 역시 驛의 기능을 겸하였을 수 있다. 선원의 경우 船家에 임시로 머물렀을 것이다. 5문역이 각 교통로의 관문을 담당하였던 일처럼<sup>90)</sup>, 船家 또한 물자가 이동하는 여정에서 일종의 관문인 驛으

81) 『朝鮮王朝實錄』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2월 계미조. “交州道斫木別監盧湘啓曰: “所斫材木萬餘條, 若於此時, 刻日盡輸, 其弊甚鉅。願待雨作結桴流下便。” 上從之.”; 동년 8월 기사조. “遣判校書監事咸傳霖於江原道, 監督長生殿材木。仍命問疾原州牧使趙璞, 且賜內藥.”; 태종실록 권 35 태종 18년 6월 기사조. “遣梓人吳德海于江原道, 率船軍六百名, 斫木於原州, 寧越, 麟蹄等處, 將以修葺昌德宮也.”

82) 진용선, 2018 「남한강 뗏목과 떼꾼들의 삶」 『한강 수로와 어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p.270.

83) 우승하·황무원, 2018 『한강의 수로와 어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p.91.

84) 김택민·하원수 편, 앞의 책, p.523. “諸官船(般)行用, 若有損壞, 州無船場者, 官司隨事修理。若不堪修理, 須造替者, 每年預料人功調度, 申三司聽報。”

85)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990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orts: The establishment of transshipment fac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UNCTAD.

86)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 마립간 9년 3월.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

87) 趙炳魯, 2002 『韓國驛制史』,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p.36.

88) 朴方龍, 1995 「新羅王都의 交通路: 驛·院을 중심으로」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6, p.104.

89) 김창석, 앞의 책, p.148.

90) 정요근, 2008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5.

로 기능한 것이다. 더불어 일찍이 驛에서 기와를 생산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제기되었던 만큼<sup>91)</sup>, 驛은 물류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驛과 기와의 생산이 이어진다는 점은 주와 군에서 제작된 기와를 수합하는 蟹口의 船家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논리를 확장하면 신라 전역에 驛이 산재해 있던 것처럼, 船家와 유사하게 거점지로 기능하였던 기구 역시 전국에 분포했을 전망을 시사한다. 따라서 蟹口의 船家は 조선소보다는 驛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명된다.

船家は 국가의 관할 아래 있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船家라는 공간 인근에는 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船家 근처에는 선착장인 동시에 물자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환적 시설이 존재했을 것이다.<sup>92)</sup> 船家와 인접해 있는 창고는 모두 물자의 운송과 관련된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II장에서 논의하였듯 통일기 선부와 창부가 담당 업무에 있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하남 하사창동 유적 내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은 그 규모로 인해 하남 내 타 유적에 비해 주목을 받았다. 이곳의 지명 역시 창고와 관련이 있는데 과거 창우포와 둔지포에 운반된 쌀과 소금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어 사창리라 불렀다고 한다.<sup>93)</sup> 하사창동 일대는 과거 관영 창고가 있었다는 점에서<sup>94)</sup>, 8칸의 대형 건물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9호 건물지는 창고 시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95)</sup> 이 점을 참고할 때 해당 유적의 성격은 船家を 거쳐 가져온 물건을 보관하는 주치의 창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蟹口의 船家에 설치되었던 시설을 유추해 볼 때 船家は 고려의 조창과 비교될 수 있는 측면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sup>96)</sup>

통일 이후 船家에 여러 배가 정박하자 자연스레 상업이 발달함과 동시에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신라는 한강의 수계와 서해안을 이용하는 물류망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였는데 이는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sup>97)</sup> 이는 통일 이전 신라 한주의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 삼국통일전쟁 당시 신라는 전력의 소모를 막기 위해 民을 징발했다. 하지만 전쟁 이후에는 이전만큼 대규모의 民을 군역에 차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국영 船家は 배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役에 동원된 民 중 일부가 船家에 소속되었을 여지가 존재한다. 중앙 정부는 지방에서 수취한 세물을 운송할 필요가 있었다. 세물의 운송에는 주로 役에 동원된 일반 民을 이용하였다. 그 예로 고려시대 田租는 경우 국가 차원의 조운을 통해 중앙으로 운반되었다. 그러나 각 군현에서 거둔 전조를 조창까지 운반하는 일이나, 조운 이후 전조를 중앙의 각종 창고로 운반하는 일은 모두 일반 民의 요역 징발을 통해 이루어졌다.<sup>98)</sup> 따라서 民은 船家에 소속되어 軍役 대신 배와 관련된 役을 부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船家에서 役을 지게 된 民 역시 고달픈 삶을 살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91) 하일식, 2011 「신라 왕경인의 지방 이주와 編籍地」 『신라문화』 38, p.193.

92) 박성현, 2021 앞의 논문, p.55.

93) 하남시사편찬위원회, 2017 『하남시사⑧ 민속과 지명유래』, 하남시사편찬위원회.

94) 하남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277.

95) 중부고고학연구소, 앞의 보고서, p.496.

96) 이와 관련하여 조창 역시 조운과 관련하여 조운선을 안전하게 정박시키는 선착장, 조창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관아, 수취한 세곡을 보관하는 창고, 노역을 담당하는 조창민 거주 촌락으로 구성되었다는 점(한국해양재단 편, 2013 『한국해양사 III. 고려시대』, 한국해양재단, p.137.)이 참고된다.

97) 윤성호, 2018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77~284.

98) 박종진, 2000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pp.138~139.

船家에 소속된 인물의 성격에 관해서는 통일 이후 신라의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라는 한주 지역 내 고구려와 백제의 옛 유민 중 일부를 船家에 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당 전쟁이 종식된 후 신라에는 고구려와 백제 유민의 신규 유입이 현저해졌고, 신라는 증가한 신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였다.<sup>99)</sup> 이에 따라 유이민 중 일부 역시 신라에 포섭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각종 役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 사회의 분화가 진전됨에 따라 船家の 업무 역시 유이민이 분담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려와 조선의 경우 각각 驛民의 신분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호구 장부를 제작한 기록이 남아있다.<sup>100)</sup> 이를 참고할 때 驛에 거주하던 驛人은 타 집단과는 구분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船家 역시 驛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船家에 속한 民 역시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신라 통일기 물자 운송 관련 관부와 船家の 운영 양상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I장에서는 7세기 신라군의 군량과 물자 운송과 관련된 관부의 운영을 다루었다. 창부의 경우 통일 이전인 진덕여왕 때 분치되었으며, 창고를 기반으로 하여 물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관부로 파악되었다. 반면 선부의 경우 본래 병부의 속사로, 배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수군과 관련된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규명하였다. 전쟁 이후 평화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선부가 담당하였던 군사적인 기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의 관부는 복잡하게 얽혀있었다는 점에서 선부와 창부의 담당 업무가 완전히 분할되어 있지는 않던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더불어 물류와 관련된 관부인 선부와 창부 중 보다 많은 영역의 업무에 걸쳐 있던 관부는 창부라 할 수 있다. 선부가 배를 이용한 수운에 관한 업무를 맡을 때, 창부의 경우 재정과 관련된 더욱 넓은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식별된다.

III장에서는 신라 통일기 蟹口 船家の 운영 양상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蟹口는 고덕천의 하구로 비정되는데, 이곳은 한주의 주치로 비정되는 이성산성과 가까운 거리이다. 한주 내에서 가장 높은 위계를 지닌 공간은 주치라는 점에서, 蟹口의 船家가 건물을 올리는 데 기와를 사용할 만큼의 위계를 가진 공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船家は 기와의 사용처가 아닌 거점이었으며, 각 군현에서는 할당받은 만큼 기와를 제작하여 船家로 운송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蟹口의 船家は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강의 하안에 있었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선착장으로 기능하였다. 조선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박의 건조를 위해 인근에서 대량의 나무를 벌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蟹口의 船家 인근에는 이를 위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船家は 조선소로는 기능하지 못했으며, 임시 수리소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蟹口의 船家は 거점이었다는 점에서 환적 시설을 갖춘 驛으로 기능했다. 驛은 도로를 따라 설치되는 교통 기관으로, 이를 船家和 연결하면 船家は 물자를 이송하는 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처로 기능하였음을 상정할 수 있다. 驛은 교통망의 확충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물류의 거점인 船家は 驛의 성격을 지닌 양상이 확인되었다.

99) 최희준, 2020 「7세기 후반 신라의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 『新羅史學報』 50, p.93.

100) 『高麗史』 권84 지38 호훈. “郡縣人, 與津·驛·部曲人, 交嫁, 所生, 皆屬津·驛·部曲, 津·驛·部曲, 與雜尺人, 交嫁, 所產, 中分之, 剩數從母.”.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7월 20일. “各官驛吏, 令所在官守令, 開具根脚, 并子孫名字、年歲, 依平民戶口例, 以本驛稱爲本貫, 各給戶口案”).

선원의 경우 船家에 임시로 머물렀을 것이다. 驛과 기와의 생산이 이어진다는 점은 주와 군에서 제작된 기와를 수합하는 蟹口의 船家와도 밀접히 관계된다. 이를 확장하면 신라에 驛이 산재해 있던 것처럼, 船家와 유사한 거점 기구 역시 전국에 분포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蟹口의 船家는 조선소보다는 驛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전쟁 이후 신라는 한주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력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8세기 이후 한주에서의 물자 운송에 영향을 끼쳤다. 신라는 통일 이전에 비해 한강 수운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기의 관부와 船家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물자 이동 양상을 조망하려 하였다. 그 결과 선부와 창부는 모두 물류와 밀접히 연관된 관부였으며, 선부보다는 창부의 담당 업무가 더 포괄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선리 명문와를 검토함으로써 통일기에 한주가 한강 수운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그 양상을 고찰하였다. 蟹口의 船家は 거점지로서 한주 내 물류 이동의 거점이었다. 더불어 船家は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선착장이면서 그와 동시에 驛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일대에는 창고 관련 유적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운송과 관련된 환적 시설이 마련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치인 이성산성 일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상 운송 외에 육상 운송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주치 인근에 관련 시설을 마련하여 세물을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설치 및 보수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 참고문헌

『高麗史』

『舊唐書』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기요하라노 나츠노, 이근우 역, 2014 『영의해 역주』, 세창출판사

김택민·하원수 편, 2013 『천성령 역주』, 혜안

단국대학교 사학과·경기도 포천시, 1996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7 『博物館所藏品目錄: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00주년 기념』

임상택·전덕재·양시은, 2002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명문기와』, 서울대학교 박물관

중부고고학연구소, 2020 『河南 下司倉洞 遺蹟』

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서울 진관동 유적 V』

한양대학교 박물관, 2017 『하남 광주향교 경관광장 유적 -광주향교 주변 경관광장 조성공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고동환, 2015 『한국 전근대 교통사』, 들녘

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민족의 젓줄 한강』, 국립민속박물관

김기흥, 1991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김유식, 2014 『신라기와연구』, 민속원

김종일·권오영·장남원·한혜선, 2022 『토지와 도자기: 한국 도자기 문명사』, 들녘

김창석, 2004,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2005 『漢韓大辭典 8』, 檀國大學校 出版部

문경호, 2014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혜안

朴南守, 1996 『新羅手工業史』, 新書苑

박종진, 2000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2001 『한강의 어제와 오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_\_\_\_\_, 2008a 『漢城百濟史 4. 대외관계와 문물교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_\_\_\_\_, 2008b 『漢城百濟史 5. 생활과 문화』,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우승하·황무원, 2018 『한강의 수로와 어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이정신, 2013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所 연구』, 혜안

이정재, 2007 『남한강 수운의 전통』, 한국학술정보

이종석, 2010 『하천공학 및 설계』, 새론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전덕재,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趙炳魯, 2002 『韓國驛制史』,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하남시사편찬위원회, 2017 『하남시사⑧ 민속과 지명유래』, 하남시사편찬위원회

- 한국해양재단 편, 2013 『한국해양사 III. 고려시대』, 한국해양재단
- Koichi YAMAMOTO, 이삼희 역, 2018 『충적하천학』, 형설출판사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990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orts: The establishment of transshipment fac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UNCTAD
- Van der Spek, R. J., Jan Luiten van Zanden, and E. S. van Leeuwen, eds, 2015 “*A History of Market Performance: From Ancient Babylonia to the Modern World*” Routledge, 25
- 김규동·성재현, 2011 「船里 銘文瓦 考察」 『考古學誌』 17
- 김민주, 2023 「新羅 漢州 州治의 형성과 공간구조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혁, 2001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에 나타난 한강유역의 장시망과 교통망」 『경제사학』 30
- 김창석, 2007 「왕경인의 소비생활과 교역」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8
- \_\_\_\_\_, 2021 「한국 고대의 輸役과 漕運: 船家の 출현 배경과 관련하여」 『동서인문』 17
- \_\_\_\_\_, 2022, 「고대의 수취품 운송과 船家の 출현」 『고대 동아시아 물자 유통과 관리』, 진인진
- 朴方龍, 1995 「新羅王都의 交通路: 驛·院을 중심으로」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6
- 박성현, 2008, 「신라 城址 출토 문자 자료의 현황과 분류」 『木簡과 文字』 2
- \_\_\_\_\_, 2021 「신라 통일기 한주(漢州)의 물자 이동과 조운(漕運): 하남 선동 출토 명문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21
- 박수정, 2017 「三國史記 職官志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일, 1996 「포천 반월산성 출토 < 마홀수해공구단(馬忽受解空口單) > 명 기와의 고찰」 『史學志』 29
- 徐五善, 1985 「韓國平瓦紋樣의 時代的 變遷에 對한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요시이 히데오, 2017, 「광주 선리 명문기와의 고고학적 재검토: 이마니시 류 수집자료의 검토를 중심으로」 『佛智光照: 청계 정인스님 정년퇴임 기념 논총』, 정인스님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 윤성호, 2018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道學, 1997 「抱川 半月山城 出土 ‘고구려’ 기와 銘文의 再檢討」 『高句麗研究』 3
- 李丙燾, 1987 「慰禮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李炳鎬, 2006 「夫餘 定林寺址 出土 塑造像의 製作時期와 系統」 『美術資料』 74
- 전덕재, 2005 「新羅 中央財政機構의 性格과 變遷」 『신라문화』 25
- 정요근, 2008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술, 2009 「통일신라와 발해의 해상활동」 『한국해양사』 고대편, 경인문화사
- 진용선, 2018 「남한강 뗏목과 떼꾼들의 삶」 『한강 수로와 어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최영준, 1987 「남한강 수운 연구」 『地理學』 22-1
- 최희준, 2020 「7세기 후반 신라의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 『新羅史學報』 50
- 하일식, 2011 「신라 왕경인의 지방 이주와 編籍地」 『신라문화』 38
- 高正龍·熊谷舞子·安原葵, 2014 「関西大学博物館所蔵朝鮮瓦: 文字瓦を中心として」 『関西大学博物館紀要』 20
- 藤田亮策, 1953 「新羅九州五京攷」 『朝鮮學報』 5
- 田中俊明, 2004 「廣州船里出土文字瓦銘文の解釋と意義」, 『古代文化』 56-11
- 환경부 하천정보관리시스템, 2024 「2023년 한국하천일람」, 환경부, <https://www.river.go.kr/summary/riverData.do>(접속일 2025.09.26.)

# 「신라 통일기 물류 관부와 지방의 船家 운영」에 대한 토론편

김창석 | 강원대학교

발표자는 경기도 하남시 선동 출토 명문와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여 신라 중대 漢州의 수취품 운송 체계를 살폈다. 명문와에 보이는 船家는 선착장으로서 驛과 같이 물류의 중간거점 역할을 했고, 이를 관장하던 중앙 관부는 船府와 倉部이지만 창부가 더 비중이 컸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기왕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면서도 水理學, 하천지리 등 역사학 쪽에 생소한 분야의 이론을 원용하여 논지를 전개한 점이 인상적이다.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이견과 글을 읽으며 든 생각을 적고자 한다.

1. 토론자는 船家 또는 船宇가 국가가 조직하여 운영한 수운 기구 혹은 건물이고, 한주의 蟹口에 있던 선가가 다른 광역주에도 설치되어 있었으리라 본 바 있다. 이 시설물에는 배, 선원, 氷庫와 같은 창고가 갖춰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발표자는 선착장 기능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船家와 항포구가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

2. 신라 중대의 중앙 관부 중 倉部가 물류의 중심 기능을 담당했다고 한다. 창부가 수취품의 보관, 출납 등을 맡은 재정 관부였으므로 물류에 간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관원의 증치만을 가지고 창부가 물류의 중심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창부의 확대는 일반 재정 기능을 확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水運, 육운을 뭉뚱그려 운송, 물류라 하지 말고 양자를 구분해서 보면 어떨까 한다. 선부를 경덕왕대 利濟府로 개칭한 것으로 보아 수운의 주무 부서는 역시 선부라고 여겨진다. 육운은 창부뿐 아니라 병부, 調府, 乘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3. 船家の 창고 시설, 換積 기능을 강조하여 마치 창부에 속한 지방 관청, 屬司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명문에 ‘國’蟹口船家라고 했으므로 국가의 통제를 받았음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과연 ‘관부’인지, 창고가 있다고 해서 창부 예하인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선가와 창부의 연결 고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4. 郡縣 - 선가 - 州治의 유통체계를 상정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산주치로부터 왕경 또는 그 역방향으로 물자가 이동할 때, 그리고 주치로 수합된 물자가 管下의 군현으로 이동하는 유통체계는 따로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관련하여 포천 반월산성 출토 명문와(“馬忽受蟹口草”)를 선동 출토 품처럼 해석하면 마홀이 기와 제작지, 해구가 소비처가 된다. 그런데 이 기와가 선동에서 발견되지 않고 반월산성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5. 더불어 그간 선동 명문와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들이 제출되었으나 이제 전면적인 기초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현재 서울대, 이화여대,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관서대학, 교토대학에 흩어져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유물 전체를 실측하여 형식 분류하고 탁본, 재판독하는 기초작업이 이뤄질길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야 좀 더 새롭고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6. 부정확한 용어와 개념, 단정적 표현, 논리의 비약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평화가 지속됨에 따라 병졸로서의 역할이 소실되었고 노역에 사역하게 되었다. 이는 선부가 수군과 관련된 군사 관련 업무 외의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배경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신라는 한주 지역 내 고구려와 백제의 옛 유민 중 일부를 船家에 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평양 지역 적석총 조영 집단에 대한 검토

이승호 | 동국대학교

1. 머리말
2. 대동강 하류 일대의 고구려 적석총
3. 2~3세기 낙랑군의 형세와 고구려
4. 평양 지역의 적석총 조영 집단
5. 맺음말

## 1. 머리말

그동안 북한 학계로부터 전해진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아보면, 오늘날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하류 유역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적석총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무덤 형태는 대부분 기단적석총으로 확인되었고, 오늘날 평양 대성산 일대를 중심으로 대략 150여 기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주목되는 점은 무덤들이 대략 2~3세기 무렵 조영된 고구려 적석총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대성산을 포함한 오늘날 평양 지역은 313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붕괴하기 전까지 낙랑군의 핵심 거점이었다. 기원전 108년부터 4세기 초까지 낙랑군은 前漢·後漢으로부터 요동 公孫氏 정권, 曹魏·西晉으로 이어지는 中原 세력의 관할 아래 존속하였다. 특히 238년 公孫氏 정권을 무너뜨리고 낙랑·대방군을 장악한 曹魏 정권은 이를 발판 삼아 고구려뿐만 아니라 옥저·동예 지역 및 경기도 북부 일대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며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와 같이 전개된 낙랑군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보면, 해당 시기 조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적석총이 대동강 하류 유역에서 출현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도 일찍부터 평양 지역에 산재한 적석총의 존재에 주목한 바 있는데, 이들 적석총의 조영 집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먼저 東潮는 평양 일대 적석

---

1) 채희국,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시기의 유적」, 『문화유산』, 1957-5; 채희국,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무덤들」, 『문화유산』, 1957-6; 채희국·김용간,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 『유적발굴보고 제9집』, 1964; 정찬영, 「기원 4세기까지의 고구려 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5, 사회과학출판사, 1973; 김사봉·최응선, 「안학동, 로산동 일대의 고구려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88-4; 리준걸, 「금옥리 고구려무덤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5-3; 손수호, 「고구려돌각담무덤의 분포상 특징」, 『조선고고연구』 1998-3.

총 분포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면서, 이들 적석총의 조영 시기를 낙랑군이 존속하던 3세기 무렵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적석총 조영 집단에 대해서는 244~245년 고구려-曹魏 전쟁을 계기로 移住·捕虜·避難·逃亡 등의 과정을 거쳐 낙랑군 사회에 들어온 고구려계 주민집단일 것으로 추정하였다.<sup>2)</sup> 이는 선구적인 연구로서 경청할 부분이 많지만, 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오거나 피난·내투해 온 고구려인들을 낙랑군 측에서 고구려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동강 북안에 안치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또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sup>3)</sup> 고구려-曹魏 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끌려간 고구려인들은 중국 내지로 이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4)</sup>

한편, 한국 학계에서는 장효정의 연구를 통해 이 지역 적석총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대동강 하류 일대의 적석총群이 단일 시기 조영된 군집묘가 아닌 2세기 후반~3세기 초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영된 연속적 무덤군으로 이해한다. 이를 통해 해당 시기 고구려가 이미 대동강 북안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적석총 유적이 東川王 21년(247)에 쌓았다는 平壤城과 관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5)</sup> 이와 함께 최근 연구에서도 고구려가 일찍부터 대동강 북안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지배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대성산 고분군의 적석총을 주목한 바 있다.<sup>6)</sup> 그러나 당시 曹魏의 강세 속에 고구려가 대동강 북안 지역에 도읍을 조성하거나 離宮을 조영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고구려-曹魏 전쟁 당시 낙랑군의 병력 또한 참전하여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였음을 상기하면, 그러한 가운데 낙랑군과 인접한 경계 지역에 고구려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평양 일대 적석총의 조영 연대를 2~3세기 무렵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 무덤의 조영 집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는 중원 지역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고구려로 이주해온 주민집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었던 반면, 고구려에서 외부로 이탈해 나갔던 인구집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47년에 고구려인 만여 명을 이끌고 낙랑군에 투항하였다는 蠶支落 大加 戴升의 일만 놓고 보아도<sup>7)</sup> 고구려 역사 초기부터 내부의 정세 변동에 따라 외부로 이탈해 나갔던 인구집단이 상당수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梁貊과 小水貊 등 고구려와 종족적 특성을 같이하면서도 고구려 영역 바깥에 존재했던 ‘貊’ 집단도 3세기 무렵까지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떠올리고 보면, 대동강 하류 유역에 있는 적석총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선에서 해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평양 지역에 산재한 적석총의 분포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조영 시점과 배경, 조영 집단의 성격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물론 현재까지 보고된 평양 지역 적석총 유적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북한 학계에서 발표된 성과에 의지해야 한다. 그만큼 전하는 정보는 매우 영성하고 파편적인 상황이다. 사실 그조차도 2000년대 이전 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유적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다만, 여기서는 유적에 대한 추

2) 東潮, 「高句麗積石塚の出現と展開」,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1997, 100쪽.

3) 장효정, 「대동강 하류일대 고구려 적석총의 분포현황과 그 성격」, 『국사관논총』 101, 2003, 18쪽.

4) 『晉書』 卷56, 列傳 26 江統, “... 乃作徙戎論. 其辭曰, ... 滎陽句驪本居遼東塞外, 正始中, 幽州刺史毋丘儉伐其叛者, 徙其餘種. 始徙之時, 戶落百數, 子孫孳息, 今以千計, 數世之後, 必至殷熾. 今百姓失職, 猶或亡叛, 犬馬肥充, 則有噬齧, 況於夷狄, 能不爲變. 但顧其微弱勢力不陳耳.”

5) 장효정, 앞의 논문, 2003, 21쪽.

6) 장병진, 「고구려의 대방 지역 진출과 영역화 과정」, 『고구려발해연구』 68, 2020, 25쪽 각주 83)번.

7)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高句麗 條, “[建武]二十三年冬, 句驪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詣樂浪內屬”;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2, 閔中王 4년, “冬十月, 蠶支落部大家戴升等一萬餘家, 詣樂浪投漢[後漢書云, 大加戴升等萬餘口]”

후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유적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목표로 하고 싶다.

## 2. 대동강 하류 일대의 고구려 적석총

대동강 하류 유역의 적석총은 평양시 대성산 일대를 중심으로 약 150여 기가 분포하며,<sup>8)</sup> 대부분 기단적석총(일부 무기단적석총)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하는 정보가 비교적 자세한 유적을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성산 장수봉 남쪽 일대 적석총

1958~1961년에 대성산 일대 유적 조사·발굴 과정에서 적석총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곳에는 1,200여기의 고구려 무덤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가운데 적석총은 대부분 기단적석총이며 무기단적석총은 드물게 확인된다고 한다.<sup>9)</sup> 이 일대 적석총의 전체 현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고고학 전서 29』에서는 대성산 1·2호분을 장수봉 1·2호분으로 명명하고 있다.

구분	장수봉 1호분(대성산 1호분)	
위치	장수봉 남쪽 대성산성內 사슴못가	
형태	타원형 Ⅱ 매장시설 불명	
기단	무기단	
실측	9.6m×6.5m Ⅱ 높이 1.5m	
유물	-	
출처	채희국·김용간(1964), 東潮(1997)	

8) 손수호, 앞의 논문, 1998, 27쪽 및 손수호, 『고구려고분연구』, 사회과학출판사, 2001, 9쪽에서는 평양시 일대에 50여기의 적석총이 분포해 있다고 하였는데, 이후 2007년 대성산 소문봉 남쪽 경사면 일대에서 무기단적석총과 기단적석총 100여기가 추가로 조사되었다(최응선, 「대성산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횡혈식돌각담 무덤」, 『조선고고연구』 2008-3, 38쪽).

9) 채희국·김용간, 앞의 논문, 1964, 31쪽.

구분	장수봉 2호분(대성산 2호분)	
위치	대성산성內 잉어못가	
형태	장방형 Ⅱ 매장시설 불명	
기단	기단	
실측	5m×4.5m Ⅱ 높이 -	
유물	-	
출처	채희국·김용간(1964), 東潮(1997)	

## 2) 대성산 소문봉 남쪽(안학동) 일대 적석총

1988년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 유적 조사 과정에서 20여기의 기단적석총이 확인되었으며, 그 가운데 4기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였고 1호분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었다.<sup>10)</sup> 2호분과 3호분은 파괴가 심하여 그 구조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무덤에서는 각각 2개, 1개의 관뿔이 출토하였다고 한다.<sup>11)</sup> 『조선고고학전서 29』에 따르면 해당 고분군은 대성산 을지봉과 소문봉을 연결하는 능선 남쪽 사면의 남북 80m, 동서 600m 범위 안에 30여기가 있다고 전하며, 모두 기단적석총이라고 한다. 또 여기서는 1988년에 1·2·3호분으로 보고된 무덤들을 소문봉 4·5·6분으로 적고 있다.<sup>12)</sup>

구분	소문봉 1호분	구분	소문봉 2호분
위치	대성산 소문봉 남쪽(안학동 북쪽)	위치	대성산 소문봉 남쪽(안학동 북쪽)
형태	방형 Ⅱ 石槨	형태	방형 Ⅱ 石槨
기단	기단	기단	기단
실측	한 변 약 8m Ⅱ 높이 1m	실측	한 변 약 7.8m Ⅱ 높이 0.55m
유물	-	유물	-
출처	『조선고고학전서 29』(2009) *도판 정보 없음	출처	『조선고고학전서 29』(2009) *도판 정보 없음

10) 김사봉·최응선, 앞의 논문, 1988.

11) 김사봉·최응선, 앞의 논문, 1988, 42쪽.

1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전서 29(중세편6 고구려의 돌각담무덤)』[복각판], 진인진, 2009(2017), 205쪽.

구분	소문봉 3호분	
위치	대성산 소문봉 남쪽(안학동 북쪽)	
형태	방형 石槨	
기단	기단	
실측	한 변 약 8.3m 〓 높이 2.1m	
유물	-	
출처	김사봉·최응선(1988-4), 東潮(1997), 『조선고고학전서 29』(2009)	


구분	소문봉 4호분(안학동 1호분)	
위치	대성산 소문봉 남쪽(안학동 북쪽)	
형태	방형 石槨	
기단	기단	
실측	8.5m×9.2m 〓 높이 1m	
유물	-	
출처	김사봉·최응선(1988-4), 東潮(1997), 『조선고고학전서 29』(2009)	

### 3) 고산동 일대 적석총

1936년 朝鮮古蹟研究會의 조사를 통해 존재가 알려진 고산동 일대 적석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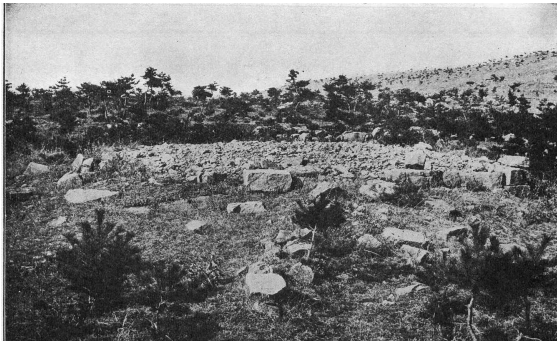
구분	고산동 2호분	
위치	평양시 고산동	
형태	방형 石槨	
기단	기단	
실측	19m×15m 〓 높이 1.4m	
유물	-	
출처	최희국(1957-6), 東潮(1997)	


도판 : 朝鮮古蹟研究會(1937)

구분	고산동 3호분	
위치	평양시 고산동(2호분의 북쪽)	
형태	방형 Ⅱ -	
기단	기단	
실측	6.3m×7m Ⅱ 높이 1.7m	
유물	-	
출처	최희국(1957-6), 東潮(1997)	

#### 4) 승호구역 만달리 일대 적석총

1916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에 의해 평양시 승호구역 만달리 일대에서 2기의 적석총이 확인되었다.

구분	만달리 1호분	
위치	만달산 서남 기슭	
형태	방형 Ⅱ -	
기단	기단	
실측	한 변 약 11m Ⅱ 높이 1.5m	
유물	-	
출처	朝鮮總督府(1917), 東潮(1997)	

구분	만달리 3호분	
위치	만달산 서남 기슭	
형태	방형 Ⅱ -	
기단	기단	
실측	한 변 약 14m Ⅱ 높이 1.5m	
유물	-	
출처	朝鮮總督府(1917), 東潮(1997)	



이밖에 평양시 승호구역 금옥리에서도 기단적석총 12기(금옥리 31~42호)가 보고되었는데, 보고자는 모두 “기단이 없고 무덤곽이 있는 강돌로 된 돌각담무덤들”이라고 하며 “돌각담무덤들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무덤들”이라고 한다. 이곳에 이른 시기의 적석총이 분포해 있음을 추측케 한다.<sup>13)</sup> 또 대성산 소문봉 남쪽 경사면 일대에서도 무기단적석총과 기단적석총 100여기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그중 26기를 발굴했다고 하여 주목된다.<sup>14)</sup> 다만 해당 보고에서는 그 가운데 평양 일대에서 확인된 첫 ‘횡혈식돌각담무덤’에 주목해, 단 1기의 ‘횡혈식돌각담무덤’에 대해서만 자세한 정보를 싣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적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보고자는 해당 ‘횡혈식돌각담무덤’의 조성 연대를 기원후 1세기 말~2세기 초로 비정하고 있는데 이는 따르기 어렵다.

이처럼 단편적인 정보로나마 평양 일대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 조영된 것으로 보이는 기단적석총이 대성산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학계에서는 이러한 적석총의 조영 연대를 대체로 1~3세기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구려가 이미 1세기부터 평양에 진출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sup>15)</sup>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북한 측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평양 지역 내 최신 고고 자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북한 측 주장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sup>16)</sup>

위의 사례와 같은 기단적석총은 보통 1세기부터 4세기에 걸쳐 오랜 기간 조영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sup>17)</sup> 그 가운데서도 2~3세기 고구려의 주요 묘제로 언급되고 있다.<sup>18)</sup> 東潮는 기단적석총[方

13) 리준걸, 앞의 논문, 1995, 20쪽 및 23쪽. 돌무지가 많이 흘러내려 온 상태고 석곽도 파괴가 심해 현재는 원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37호 무덤의 경우 직경 7m, 높이 1.5m이고, 석곽은 길이 2m, 넓이 1m, 높이 60cm이며 그 안에서 약간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다른 무덤의 경우도 구조나 부장 유물이 이와 비슷하다고 한다.

14) 최응선, 앞의 논문, 2008, 38쪽.

15) 리준걸, 앞의 논문, 1995, 23쪽; 손수호, 「유적들을 통해 본 고구려의 평양일대로의 초기진출과정」, 『조선고고연구』 2014-2호.

16) 양시은, 「최근 북한 고고학계의 고구려 연구 동향」, 『고구려발해연구』 56, 2016, 96쪽.

17) 강현숙, 「고구려 고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05쪽 ; 최종택, 「고구려 적석총 군집묘 축조와 흔계」, 『한국학』 47-3, 2024, 75~76쪽 ; .

18) 정호섭, 「고구려사의 전개와 고분의 변천」, 『韓國史學報』 59, 2015, 140쪽; 강현숙, 「3장. 적석총」, 『고구려 고고-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2021, 179쪽.

壇積石塚]이 2세기로부터 4세기 전반에 걸쳐 조영되었으며, 특히 3세기에 발달을 거쳐 3세기 후반부터 계단적석총[方壇階梯積石塚]으로 이행했다고 본다. 나아가 樂浪郡이 존재하던 시기에 이러한 기단적석총이 대성산 일대를 중심으로 조영되었다고 보았다.<sup>19)</sup> 특히 대성산과 만달산 일대에 산재해 있는 적석총을 ‘方壇石槨積石塚’과 ‘方壇階梯石槨積石塚’으로 파악하면서 구조적 측면에서 초기 형태의 것으로 2~4세기에 조영된 것으로 보았다. 안학동 1호분(소문봉 4호분)을 예시로 들며 낙랑군이 존재하던 시기에 조영된 적석총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대목도 주목된다.<sup>20)</sup> 한편, 한국 학계에서는 대성산 일대 고분들이 대개 기단적석총과 계단적석총으로 구성되어 4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21)</sup>

### 3. 2~3세기 낙랑군의 형세와 고구려

이처럼 대동강 북안 대성산 일대에 산재한 적석총 가운데 상당수가 3세기 무렵 조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들 무덤을 조영한 집단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먼저 2~3세기 무렵 낙랑군 屬縣의 분포 상황과 고구려-낙랑군의 경계 변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後漢書』郡國志의 樂浪郡 조를 보면 140년 무렵<sup>22)</sup> 낙랑군의 속현은 朝鮮·誹郿·溟水·舍資·占蟬·遂城·增地·帶方·駟望·海冥·列口·長岑·屯有·昭明·鏤方·提奚·渾彌·樂都 등 총 18현이 있었다고 전한다.<sup>23)</sup> 이는 「初元 4년 호구부 목간」의 총 25개 현 가운데 東部都尉가 別主하는 ‘嶺東七縣’으로 편제되었다가 建武 6년(30) 侯國으로 전환한 7현이 빠진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吞列縣 대신 새로이 樂都縣이 설치된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곧 이 시기 낙랑군은 嶺東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축소되었으나, 나머지 縣 대부분이 존속하며 평안남도과 황해도 일대에서 여전히 세력을 건재하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훗날 帶方郡으로 편제되는 帶方·列口·長岑·海冥·昭明·提奚·舍資 7현을 제외한 11현의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溟水縣 : 평북 영변<sup>24)</sup> 혹은 희천<sup>25)</sup>
- 吞列縣 : 평남 영월<sup>26)</sup>
- 增地縣 : 평남 안주<sup>27)</sup>
- 渾彌縣 : 평남 영유·증지<sup>28)</sup> 혹은 맹산<sup>29)</sup>

19) 東潮, 앞의 논문, 1997, 95~97쪽.

20) 東潮, 앞의 논문, 1997, 99~100쪽.

21) 강현숙, 앞의 책, 2021, 190쪽.

22) 『後漢書』郡國志는 後漢 順帝 永和 5년(140)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後漢書』志19, 郡國 1, 司隸河南尹條, “河南尹, [秦三川郡, 高帝更名. 世祖都雒陽, 建武十五年改曰河南尹.] 二十城. 永和五年戶二十萬八千四百八十六, 口百一萬八百二十七. …(下略)…”

23) 『後漢書』志23, 郡國 5, 樂浪郡, “樂浪. 郡武帝置, 雒陽東北五千里, 十八城. 戶六萬一千四百九十二, 口二十五萬七千五十. 朝鮮·誹郿·溟水·舍資·占蟬·遂城·增地·帶方·駟望·海冥·列口·長岑·屯有·昭明·鏤方·提奚·渾彌·樂都”

24) 李丙燾, 『(修訂版)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5, 145쪽.

25) 윤선태, 「한사군의 역사지리적 변천과 ‘낙랑군 초원 4년 현별 호구부」,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251쪽.

26) 李丙燾, 앞의 책, 1985, 1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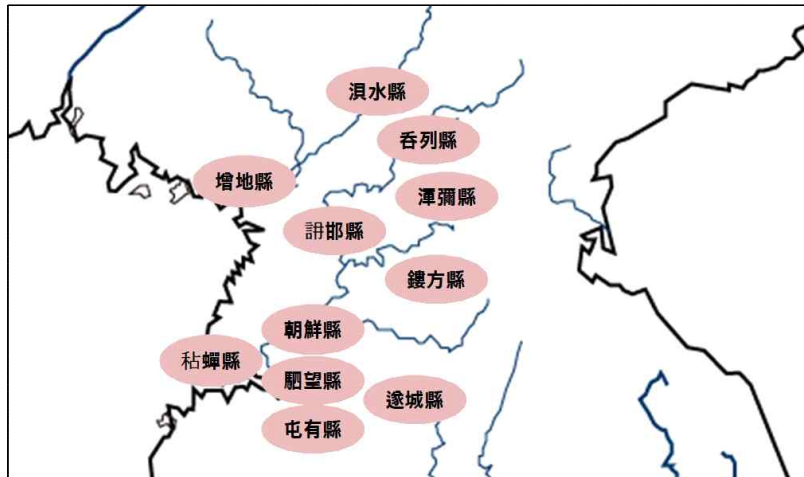
27) 李丙燾, 앞의 책, 1985, 146쪽.

28) 李丙燾, 앞의 책, 1985,

29) 윤선태, 앞의 논문, 2010, 251쪽.

- 訃邯縣 : 평남 순천<sup>30)</sup>
- 朝鮮縣 : 평양
- 駟望縣 : 황해도 중화<sup>34)</sup>
- 屯有縣 : 황해도 황주<sup>36)</sup>
- 鏤方縣 : 평남 성천<sup>31)</sup> 혹은 양덕<sup>32)</sup>
- 粘蟬縣 : 평남 용강<sup>33)</sup>
- 遂城縣 : 황해도 수안<sup>35)</sup>

[지도 1] A.D.140년 무렵 낙랑군 현황



위의 지도를 통해 보듯 140년 무렵 後漢 관할 아래 낙랑군의 속현들은 서쪽으로는 낭림산맥(백두대간)을 경계로 영서 지역에 포진해 있고, 북쪽으로는 청천강 유역을 경계로 涇水縣과 增地縣이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2세기 중반까지도 낙랑군의 영향력은 청천강 유역까지 강하게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로부터 140여년이 지나 西晉 太康(280~289) 초의 상황을 반영하는 『晉書』 지리지의 평州 조를 보면, 3세기 후반 낙랑군의 속현으로 “朝鮮, 屯有, 譚彌, 遂成, 鏤方, 駟望”의 여섯 현이 확인되며, 그 인구는 3,700戶였다고 전한다.<sup>37)</sup> 公孫氏 정권에 의해 帶方郡으로 편제된 7현을 제외하고서라도 3세기 후반 낙랑군의 속현은 140년 무렵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30) 李丙燾, 앞의 책, 1985, 144쪽.

31) 李丙燾, 앞의 책, 1985, 150쪽.

32) 윤선태, 앞의 논문, 2010, 251쪽.

33) 李丙燾, 앞의 책, 1985, 1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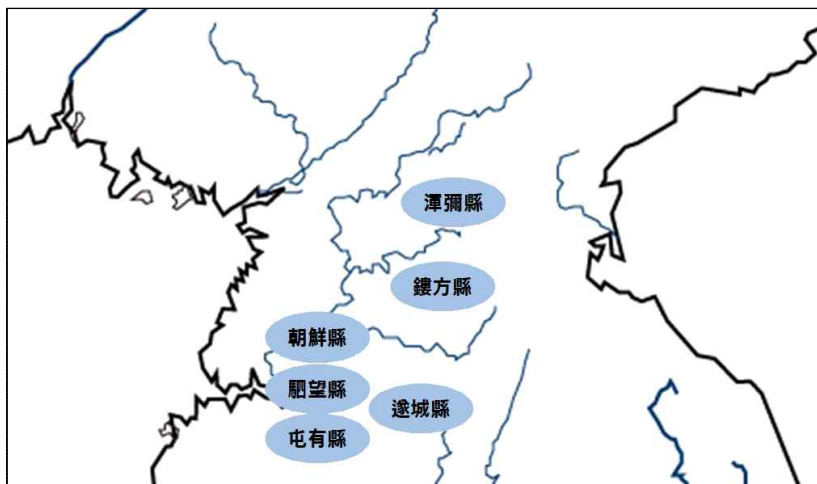
34) 李丙燾, 앞의 책, 1985, 149쪽.

35) 李丙燾, 앞의 책, 1985, 148쪽.

36) 李丙燾, 앞의 책, 1985, 149쪽.

37) 『晉書』 권14, 志 4, 地理 上, 平州 條, “樂浪郡[漢置. 統縣六, 戶三千七百]. 朝鮮[周封箕子地], 屯有, 譚彌, 遂城[秦築長城之所起], 鏤方, 駟望. … 帶方郡[公孫度置. 統縣七, 戶四千九百]. 帶方, 列口, 南新, 長岑, 提奚, 含資, 海冥.”

[지도 2] A.D.280년 무렵 낙랑군 현황



280년 무렵 낙랑군의 상황을 그린 위의 [지도 2]를 [지도 1]과 비교해 보면, 대동강 이북 지역에 존재했던 涇水縣·增地縣·誦邯縣과 대동강 하구의 용강 일대로 비정되는 粘蟬縣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 비정이 어려운 樂都縣<sup>38)</sup> 등이 폐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이 무렵 낙랑군은 청천강 이남으로부터 대동강 이북 지역에 이르는 평야 지대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던 것으로, 이전 시기와 비교해 郡勢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동강 이북 지역의 핵심 군현들이 폐기된 배경에는 역시 고구려 세력의 공세를 상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아래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료 (가) :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韓

①桓帝·靈帝 시기(146~189) 말 韓·濊가 강성하여 郡縣을 통제하지 못하니, 백성이 많이 韓國으로 유입되었다. 建安 연간(196~220)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의 荒地를 떼어 帶方郡으로 삼고, ②公孫模·張敞 등을 보내 遺民을 거두어 군대를 일으켜 韓·濊를 정벌하자, 옛 백성들이 차츰 [韓國에서] 나왔고, 이 뒤로 倭·韓은 마침내 帶方에 속하였다.<sup>39)</sup>

사료 (나) :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高句麗

宮이 죽고 아들 伯固가 즉위하였다. ①順帝·桓帝 연간(125~168) 다시 遼東을 침범하여 新安·居鄕을 노략질하였고, 또 西安平을 공격하여 道上에서 帶方令을 죽이고 樂浪太守의 妻子를 사로잡았다. ②靈帝 建寧 2년(169) 玄菟太守 耿臨이 그들을 토벌하여 참수하고 포로로 잡은 것이 수백 급이었다. 伯固가 항복하고 遼東에 속하였다.

熹平 연간(172~177) 伯固는 玄菟郡에 속하기를 청하였다. 公孫度이 遼東에 웅거하자, 伯固는 大加 優居·主簿 然人 등을 보내 [公孫]度を 도와 富山賊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伯固가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長子는 拔奇, 小子는 伊夷模였다. 拔奇가 不肖하여 國人이 곧 함께 伊夷模를 옹립하여 王으로 삼았다. [伯固] 때부터 자주 遼東을 노략질하였고, 또 亡胡 5백여 家를 받아들였다. 建安 연간

38) 樂都縣은 後漢이 1세기 전반에 낙랑군을 다시 접수하고 청천강을 경계로 군현을 수습하면서 기존의 雋列縣 대신 새로 설치한 縣이라는 점에서 樂浪郡 북단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장병진, 앞의 논문, 2020, 13쪽).

39)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韓 條,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196~219) 公孫康이 군대를 보내 그들을 공격해 그 나라를 깨뜨리고 읍락을 불태웠다. ③拔奇는 뉘이 면서도 왕이 되지 못함을 원망하며 涓奴加와 함께 각각 下戶 3만 명을 이끌고 [公孫康]에게 이르러 항복하고 돌아와 沸流水에서 살았다. 降胡 역시 伊夷模를 배반하니 伊夷模는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금일 있는 곳이 그곳이다. ④拔奇는 마침내 遼東으로 갔고, 아들은 남아 句麗國에 머물렀는데, 지금 古雛加 駁位居가 그 사람이다. 그 후로 다시 玄菟를 공격하므로 玄菟[郡]과 遼東[郡]이 습격하여 그들을 크게 깨뜨렸다.<sup>40)</sup>

위의 사료 (가)-①을 보면 2세기 후반 낙랑군은 韓·濊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郡縣의 백성들이 韓國으로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郡의 지배력 약화와 郡縣民의 이탈은 곧 여러 屬縣을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樂浪郡의 세력이 약화된 원인은 사료 (나)-①에서 찾을 수 있다. 2세기 후반 遼東을 괴롭히던 고구려가 급기야 西安平을 공격해 道上에서 帶方令을 살해하고 樂浪太守의 妻子를 포로로 잡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어지는 (나)-②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수습과 보복을 낙랑군이 아닌 玄菟太守 耿臨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낙랑군이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낙랑군은 고구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玄菟太守 耿臨의 보복전이 建寧 2년(169)에 전개되었음을 볼 때, 이 사건은 대략 160년대 어느 시점에 전개된 것으로 추측된다.<sup>41)</sup> 즉 2세기 후반 무렵부터 낙랑군의 지배력에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涇水縣·增地縣·誦邯縣 등 청천강으로부터 대동강 이북에 이르는 지역의 낙랑군 屬縣이 폐기된 시점은 160년대 이후, 즉 2세기 후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2세기 후반 정세를 고려해 이 무렵 고구려가 청천강을 넘어 낙랑군 영역을 병합해 나갔다고 보고 있다.<sup>42)</sup> 다만 여기서 논의를 확장해 公孫康 시기 이전에 이미 고구려가 대동강 북안에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sup>43)</sup> 이는 동의하기 어렵다. 아래의 사료를 보도록 하자.

사료 (다) : 『三國志』 卷28, 魏書 28 毋丘儉傳

①正始 중(240~248) [毋丘]儉은 高句驪가 자주 侵叛하므로, 諸軍 步騎 만인을 독려하여 玄菟로부터 나아가 諸道를 따라 토벌했다. 句驪王 [位]宮은 步騎 2만인을 거느리고 沸流水 상에 진군하여 梁口에서 크게 싸웠다. 宮이 연이어 격파되어 달아났다. 儉은 마침내 말을 묶고 수레를 매달아 丸都에 올라

40)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高句麗 條, “宮死, 子伯固立. 順·桓之間, 復犯遼東, 寇新安·居鄉, 又攻西安平, 於道上殺帶方令, 略得樂浪太守妻子. 靈帝建寧二年,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 嘉平中, 伯固乞屬玄菟. 公孫度之雄海東也, 伯固遣犬加優居·主簿然人等, 助度擊富山賊, 破之. 伯固死, 有二子, 長子拔奇, 小子伊夷模. 拔奇不肖, 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 自固時, 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建安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降胡亦叛伊夷模, 伊夷模更作新國, 今日所在是也. 拔奇遂往遼東, 有子留句麗國, 今古雛加駁位居是也. 其後復擊玄菟, 玄菟與遼東合擊, 大破之.”

41) 『後漢書』 卷85, 列傳 75, 東夷 高句驪 條에서는 “質·桓之間, 復犯遼東西安平, 殺帶方令, 掠得樂浪太守妻子. 建寧二年,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數百級, 伯固降服, 乞屬玄菟云.”라고 하여 고구려가 帶方令을 살해하고 樂浪太守 妻子를 포획한 사건의 시점을 ‘質·桓之間(145~168)’으로 전한다. 한편,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서는 같은 사건을 태조왕 94년(146)의 일로 전하고 있다(『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 3, 太祖大王 94年, “秋八月, 王遣將, 襲漢 遼東 西安平縣, 殺帶方令, 掠得樂浪太守妻子”). 그러나 이 사건은 『三國志』와 『後漢書』 모두 宮이 아닌 伯固 시대의 일로 전하고 있으므로 이는 160년대에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2) 김미경, 「高句麗 前期의 對外關係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63쪽; 안정준, 『고대 동아시아의 이주와 고구려』, 역사비평사, 2024, 66쪽; 장병진, 앞의 논문, 2000, 14쪽.

43) 김미경, 앞의 논문, 2007, 163쪽; 장병진, 앞의 논문, 2000, 14쪽.

句驪의 도읍을 도살하니 斬하고 獲한 머리와 포로가 수천이었다. … 宮은 홀로 처자를 데리고 달아나 숨었다. 儉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②6년(245), 다시 정벌하니 宮은 마침내 買溝로 달아났다. 儉이 玄菟太守 王頎를 보내 이를 추격하여, 沃沮를 지나 천 여리를 가 肅慎氏 南界에 이르렀다.<sup>44)</sup>

사료 (라) : 『三國志』 권30, 魏書 30 東夷傳 濊

①正始 6년(245) 樂浪太守 劉茂와 帶方太守 弓遵은 嶺東의 濊가 구려에 屬하자, 군대를 일으켜 이를 토벌하니, 不耐侯 등이 고을을 들어 항복하였다. [正始] 8년(247) 關에 이르러 조공하니 詔하여 다시 不耐濊王으로 拜하였다. ②[不耐濊王의] 居處는 民間에 섞여 살았으며 四時로 郡에 이르러 朝謁하였다. 二郡에 軍征과 賦調를 거둘 일이 있으면, [물자를] 供給하게 하고 使役을 시키니 [郡의] 백성과 같이 대우하였다.<sup>45)</sup>

위의 사료 (다)와 (라)는 244~245년 전개된 고구려-曹魏 전쟁 기사로서, 여기서 曹魏의 군대가 嶺東의 옥저와 동예 지역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사료 (라)에서는 낙랑군과 대방군으로부터 출격한 군대가 낭림산맥을 넘어 嶺東 지역으로 진군하였고, 그 결과 郡縣이 안변 일대의 不耐濊를 비롯하여 동예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일시 회복하였음을 전한다. 그런데 이처럼 曹魏의 군대가 嶺東 지역으로 진군하려면 지금의 성천으로부터 맹산·영원 일대를 지나 劍山嶺을 넘거나, 양덕으로 나아가 馬息嶺을 넘어야 했다.<sup>46)</sup> 이는 곧 당시 郡縣이 성천 혹은 양덕으로 비정되는 鏤方縣, 맹산에 비정되는 渾彌縣 일대를 확고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낙랑군의 郡勢가 약화될 대로 약화되었을 280년 무렵에도 鏤方縣과 渾彌縣은 西晉에 의해 낙랑군의 속현으로서 유지되고 있었다([지도 2]). 이와 함께 이 전쟁에 앞서 242년 고구려가 西安平을 노략질하였다는 기록을 보면,<sup>47)</sup> 이 시기 고구려는 압록강 하구 일대도 완벽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고구려가 대동강 이북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즉 적어도 3세기 중엽까지 고구려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고 이해된다.

#### 4. 평양 지역의 적석총 조영 집단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3세기 중반 무렵까지 고구려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모두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낙랑군의 중심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 대동강 북안의 대성산 일대에 2~3세기 무렵 고구려의 주민집단이 거주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다시 평양 지역의 기단적석총 논의로 돌아와서 이들 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의 정체에 대해 탐색을 이어가보도록

44) 『三國志』 卷28, 魏書 28, 毋丘儉傳, “正始中, 儉以高句驪數侵叛, 督諸軍步騎萬人出玄菟, 從諸道討之. 句驪王宮將步騎二萬人, 進軍沸流水上, 大戰梁口, 宮連破走. 儉遂東馬縣車, 以登丸都, 屠句驪所都, 斬獲首虜以千數. … 宮單將妻子逃竄, 儉引軍還. 六年, 復征之, 宮遂奔買溝. 儉遣玄菟太守王頎追之, 過沃沮千有餘里, 至肅慎氏南界.”

45)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濊 條,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以嶺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舉邑降. 其八年, 詣關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46) 이승호, 「고구려의 동해안 방면 교통로와 물류 유통」, 『동국사학』 74, 2022, 38쪽.

47)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傳 高句麗 條, “正始三年, 宮寇西安平, 其五年, 爲幽州刺史毋丘儉所破. 語在儉傳.”

하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溟水縣·增地縣·誚邯縣 등 청천강으로부터 대동강 이북에 이르는 지역의 낙랑군 屬縣은 160년대 이후, 즉 2세기 후반 무렵이 되면 폐기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는 분명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구려가 대동강 하류 북안 일대를 확고히 장악한 것도 아님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동강 하류 이북 지역 郡縣의 폐기는 고구려의 직접적인 침공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郡縣의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2세기 중후반 낙랑군의 지배력이 일시 붕괴한 이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을 피해 郡縣을 강 이남 지역으로 후퇴시키고 대동강 이북 지역을 공동화해 일종의 군사적 완충지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公孫康 시기 帶方郡의 新設도 이와 관련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앞서의 사료 (가)-②를 다시 보면, 당시 樂浪郡은 韓·濊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결국 당시 公孫氏에 의해 帶方郡이 新設된 것도 바로 이러한 樂浪郡의 지배력 상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sup>48)</sup> 그리고 사료 (가)-②에서 보듯이 3세기 초 단행된 帶方郡 설치의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를 통해 公孫氏 정권은 이탈한 郡縣民을 수습하고 韓·濊에 대한 공세를 취하며 한반도 남부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결국 公孫氏에 의해 낙랑군이 접수된 뒤로, 公孫康 시기에 오면 대동강 이북 지역의 郡縣을 폐기하고, 남쪽으로 帶方郡을 新設함으로써 郡勢의 회복을 도모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평양의 대성산 일대를 중심으로 기단적석총이 조영되고 있던 시기에 대동강 하류의 북안 지역은 낙랑군과 고구려 모두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2~3세기의 낙랑-고구려 간 경계로서 대동강 하류 북안 일대를 정치·문화적 완충지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평양 지역의 적석총은 바로 이러한 고구려와 낙랑군 사이의 정치·문화적 접경 공간이자 완충지대에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시점에 해당 지역에 정착한 고구려계 주민집단의 성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다. 바로 앞서의 사료 (나)-③·④ 기사이다.

사료 (나)-③에 따르면 伊夷模와의 왕위 계승 분쟁에서 밀려난 拔奇가 涓[消]奴加와 함께 각각 백성 3만 명을 이끌고 公孫康에게 항복하였다고 한다. 물론 당시 이 많은 인구집단이 곧바로 公孫氏 정권에 내투하지는 않았다. 기록에서 보듯 아마도 이들은 公孫康의 정치적 보호를 받으며 沸流水가, 즉 오늘날 富尙江 유역에 거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적대 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 이들을 集安의 山上王 정권이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곧 이들에 대한 고구려의 공세가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결과 사료 (나)-④에서 보듯 拔奇는 결국 遼東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拔奇가 遼東으로 내투할 당시 그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涓奴加와 이들을 따르는 많은 수의 인구 집단이 동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拔奇와 涓奴加 뿐만 아니라 이때 降胡 역시 伊夷模를 배반하니 伊夷模는 更作新國하였다는 대목에 주목하면, 당시의 분쟁 여파로 상당수의 인구 집단이 고구려로부터 이탈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무렵 평양 지역에 조영되기 시작한 적석총 무덤군은 바로 위와 같은 정세 속에서 고구려로부터 이탈해 公孫氏 정권으로 내투한 집단이 남긴 흔적이 아니었을까 한다. 公孫氏 정권 입장에서는 적대 세력의 지배층과 그를 따르는 유민 집단의 來降이 일면 반가운 일일 수 있었겠으나, 한편으로 그 많은 外夷 인구집단을 郡縣 사회로 수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48) 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2, 122~123쪽.

것이다. 이에 公孫氏 정권은 그동안 군사적 완충지대로 방기해 왔던 대동강 하류 북안 일대, 곧 낙랑군 郡治의 북쪽 지역에 이들을 안치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로 하여금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을 흡수케 하는 한편, 고구려에 대한 견제의 기능도 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양시 승호구역 금옥리 기단적석총에서는 갈색연질토기편[갈색간그릇조각]과 함께 회색경질 토기[회색질그릇] 등의 낙랑 토기가 출토되었다는 보고가 주목된다.<sup>50)</sup> 이는 출토 유물이 거의 없으나 한 평양 지역 적석총 가운데 확인된 부장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적석총 조영 집단과 낙랑군 세력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유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역측해본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유물은 일찍이 학계에 보고되었던 「晉率善貊佰長」印이다. 西晉 시기 ‘貊’의 수장층에게 수여한 인장으로 추정되며, 현재 중국 上海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인장은 출토인이 아닌 傳世印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에 주저되는 부분이 있지만, 西晉 시기 이 인장을 수여 받은 세력으로서 평양 일대 적석총 조영 집단을 주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5. 맺음말

3세기 고구려와 낙랑군의 경계는 단순한 정치·군사적 경계선이 아니라, 문화 교류와 인적 이동이 빈번히 일어났던 완충지대였다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본 발표에서는 평양 지역 적석총 조영 집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公孫氏 정권에 내투한 고구려계 주민집단을 주목해 보았다. 하지만 이밖에도 고구려 계통의 다양한 인구집단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다. 그 안에는 蠶支落 大加 戴升으로 상징되는 일찍부터 낙랑군 사회에 유입된 고구려인의 후예도 있을 수 있으며, 낙랑군과의 교역에 종사하는 고구려계 주민 혹은 244~245년 고구려-曹魏 전쟁에 휩쓸려 낙랑군 사회에 안착한 사람들 등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 결국, 대동강 하류 적석총은 경계지대 사회상의 반영이자 정치적 완충지대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다층적·혼성적 집단이 공존한 접경 사회의 산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9) 羅福頤 主編·故宮博物院研究室 璽印組編, 『秦漢南北朝官印徵存』, 文物出版社, 1987, 353쪽.

50) 리준걸, 앞의 논문, 1995, 23쪽.

## [참고문헌]

### - 한국

- 강현숙, 「고구려 고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강현숙, 「고구려 적석총의 입지와 존재 양태의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66, 2012.
- 강현숙, 「3장. 적석총」, 『고구려 고고-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2021.
- 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2.
- 김남중, 「낙랑국의 실체와 낙랑 조선·낙랑군의 관계」, 『고조선단군학』 47, 2022.
- 김미경, 「2세기 후반~3세기 초 고구려 정치세력의 동향과 대공손씨정책」, 『국사관논총』 108, 2006.
- 김미경, 「高句麗 前期의 對外關係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병준,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변천과 군현지배」, 『한국고대사연구』 78, 2015.
- 김종은,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분포 양상과 축조방식에 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84, 2024.
- 장병진, 「고구려의 대방 지역 진출과 영역화 과정」, 『고구려발해연구』 68, 2020.
- 장효정, 「대동강 하류일대 고구려 적석총의 분포현황과 그 성격」, 『국사관논총』 101, 2003.
- 최종택, 「고구려 적석총 군집묘 축조와 흔계」, 『한국학』 47-3, 2024.
- 양시은, 「최근 북한 고고학계의 고구려 연구 동향」, 『고구려발해연구』 56, 2016.
- 윤선태, 「한사군의 역사지리적 변천과 '낙랑군 초원 4년 현별 호구부」,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 李丙燾, 『(修訂版)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5.
- 이승호, 「고구려의 동해안 방면 교통로와 물류 유통」, 『동국사학』 74, 2022.
- 임기환, 「고구려와 낙랑군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34, 2004.
- 이종록, 「高句麗의 東沃沮 정벌과 樂浪郡」, 『선사와 고대』 49, 2016.
- 정호섭, 「고구려사의 전개와 고분의 변천」, 『韓國史學報』 59, 2015.

### - 북한

- 김사봉·최응선, 「안학동, 로산동 일대의 고구려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88-4.
- 남일룡·김경찬, 「청암동토성에 대하여(2)·(3)」, 『조선고고연구』 2000-1·2001-2.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전서 29(중세편6 고구려의 돌각담무덤)』[복각판], 진인진, 2009(2017).
- 리준걸, 「금옥리 고구려무덤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5-3.
- 리영식, 「고구려돌각담무덤의 내부부장품 매장시설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3-4.
- 박준호·채성림, 「고구려도성에서 무덤의 위치선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7-1.
- 손수호, 「고구려돌각담무덤의 분포상 특징」, 『조선고고연구』 1998-3.
- 손수호, 「고구려돌각담무덤의 등급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2000-3.
- 손수호, 『고구려고분연구』, 사회과학출판사, 2001.
- 손수호, 「유적들을 통해 본 고구려의 평양일대로의 초기진출과정」, 『조선고고연구』 2014-2호.
- 최응선, 「대성산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횡혈식돌각담무덤」, 『조선고고연구』 2008-3.

- 정찬영, 「고구려 적석총에 관하여」, 『문화유산』 1961-5.
- 정찬영, 「기원 4세기까지의 고구려 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5,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정찬영, 「북창군 대평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1974.
- 채희국,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시기의 유적」, 『문화유산』, 1957-5.
- 채희국,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무덤들」, 『문화유산』, 1957-6.
- 채희국·김용간,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 『유적발굴보고 제9집』, 1964.
- 최응선, 「대성산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횡혈식돌각담무덤」, 『조선고고연구』 2008-3.

- 중국

羅福頤 主編·故宮博物院研究室 璽印組編, 『秦漢南北朝官印徵存』, 文物出版社, 1987.

- 일본

- 東潮, 「高句麗積石塚の出現と展開」,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1997.
-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一年度 古蹟調査報告』, 1937.
- 朝鮮總督府,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 1917.

## 「평양 지역 적석총 조영 집단에 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정호섭 | 고려대학교

논문은 평양 대동강 하류 일대에 존재하는 적석총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연구들은 기존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제시된 견해가 다소 무리한 해석이다보니 합리적 해석을 해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논문은 평양 지역 적석총이 낙랑군이 존재하던 시기에 조영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축조집단의 성격에 대해 추정하고 있다. 결론은 공손씨 정권에 내투한 고구려계 주민집단을 비롯한 고구려 계통의 다양한 집단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일대는 대체로 2-3세기경 정치적 완충지대 사람들이 거주한 다층적·혼성적 집단이 공존한 경계지역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평양일대 고구려 적석총은 당연히 고구려계 사람들이 조영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의 정황만을 가지고 추론의 추론을 통해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것은 아마 방증할 만한 관련한 직접적인 사료가 없다 보니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한다.

1. 고구려가 대동강 북안 지역을 차지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서 고구려에서 이탈한 집단으로 상정하는 듯 하다. 그것은 적석총이 고구려 고유의 묘제이기 때문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낙랑군이 존재하던 시기에 조영된 적석총 가운데 낙랑 유물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안학동 1호분(소문봉 4호분)과 금옥리 적석총 정도이다. 이 무덤도 낙랑 멸망이후에 조성되었을 개연성도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연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인데, 그 연대에 대해서는 1세기부터 4세기 이후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 따라서 이들 적석총이 2-3세기에 조영된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논의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이들 적석총의 연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2-3세기 무렵 고구려와 낙랑의 경계와 관련해서 낙랑의 여러 현들은 평북에서 평남, 황해도 일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낙랑군 세력이 위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선현이 위치한 평양은 여전히 낙랑군의 중심지였다고 생각된다. 논문에서는 2세기 중후반 낙랑군의 지배력이 일시 붕괴한 이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낙랑군은 전략적 선택 차원에서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을 피해 郡縣을 강 이남 지역으로 후퇴시키고 대동강 이북 지역을 공동화해 일종의 군사적 완충지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상정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낙랑 중심지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일종의 완충지대를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3. 공손씨 정권이 발기의 반란으로 고구려에서 이탈하였던 배경에서 내투한 고구려 집단을 군사적 완충지대로 방기해왔던 대동강 하류 북안 일대에 안치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어떤 근거에서 상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발기 집단은 관련한 사료에 따르면 결국은 요동으로 피신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다른 곳도 아닌 평양 지역에 집단적으로 재배치하였다는 근거는 전무하다.

4. 이 지역 적석총 축조집단과 관련하여 晉率善貊佰長印을 주목하고 있는데, 西晉 시기 ‘貊’의 수장층에게 수여한 인장으로 추정하면서 西晉 시기 이 인장을 수여 받은 세력으로서 평양 일대 적석총 조영 집단을 주목해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晉高句麗率善任長印, 晉高句麗率善佰長印, 晉高句麗率善邑長印 등은 3세기 말 중국 西晉 시기에 제작된 것이겠지만,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와 서진의 교섭을 전하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고 『晉書』 四夷傳에 고구려전이 누락되어 양국의 관계를 해명할 만한 사료적 기반이 전무하다. 근래 발표자는 서진 동이교위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280년대 중반 무렵 고구려와 서진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유물이 제작되었다고 보면서 고구려왕을 대신해 서진과의 교섭을 담당했던 고구려 관료들이 받았던 인장으로 보기도 하였는데, 기존 견해를 수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평양지역 적석총 조영집단과 이 인장을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과한 억측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인장이 평양의 적석총에서 출토되었다는 근거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들 자료들은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거나 전세품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 일대의 고구려 적석총중소형의 적석총이기 때문에 수장층의 무덤으로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